

인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9. 7. ~ 9. 18. [10일간]

나. 감사인원 : 14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조직·인사· 법인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단·연구비	시설·재산	계
지적	12	12	11	10	7	52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붙임”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직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직원 임용 시행 지침」 제6조 제2항(2019.2.18. 신설)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면접위원 구성 시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전형별로 위원 구성을 달리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대학교는 2019. 4. 15.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당시 A가 응모하였음에도 전형별로 위원 구성을 달리 구성하지 아니한 채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대학 내 보직교수 7명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p>○ 경고(4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 계약직 채용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천대학교 ㉠ 취업규칙」 제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획서에 의거 업무내용,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을 정보통신망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2017. 5. 11. B 지시(기존 2017-03-067-001*, 신규 2017-03-067-002**)에 따라 “대형국책사업 및 재정 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 신설(안)”을 수립(2017.6.1.) 하고, 신설되는 것으로 위 대학교의 1년 이내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2017. 7. 26. 정관(□ 신설) 및 취업규칙(인천대 정년퇴직 1년 이내의 직원을 B 추천을 받아 재고용)을 개정한 다음 2017. 9. 18. 의원면직한 위 대학교 C***를 2017. 9. 19. B 추천을 받아 공고 없이 특별채용한 사실이 있음</p> <p>* △에 대응할 만한 CRD 조직 설립(일반 행정직원 이외에 프로페셔널 직원 채용)</p> <p>- B는 “타 대학에 비하여 연구실적 및 대형국책사업 수주 실적이 현저히 미비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에서 예산·재정·국비 출연금 신청 등 학내 사항에 정통하고 ◡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직원을 추천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p> <p>** CRD는 ㉠에 두고, 1년 이상 운영 후 내부화하는 방안 검토</p> <p>*** 당시 B의 의견에 부합하는 직원과 2017. 8월 말 기준 2급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는 C만 해당</p>	<p>○ 경징계(2명)</p> <p>○ 경고(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p>대학 수익사업체 지도·감독 소홀</p> <p>○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정관」 제23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재무경영 위원회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 주요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인천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인천대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조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 2. ‘대학 교육·연구 및 학사의 지원, 출판문화의 향상 발전’ 명목으로 설립한 수익사업체 {▽, 1인 주주, 현금 출자 53,000천원}가 【붙임1】 “재무상태표 및 주요 재무비율”과 같이 부채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립 초기 1기(2017.2.24.~ 2017.12.31.)와 정정 사업연도인 3기(2019.1.1.~2019.2.28.)를 제외한 연도말 유동자산(2기말 114,744천원, 4기말 384,993천원)과 유동부채 (2기말 104,359천원, 4기말 382,447천원)가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적 가용자금(2기말 10,000천원, 4기말 1,428천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률 수치가 매우 높아 재무구조가 심각(2020년 8월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99.14%로 완전자본잠식 상태)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p>	<p>○ 경고(8명)</p> <p>○ 통보</p> <p>-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가증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각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5기 사업연도(2020.3.1.~2020.8.31.)의 경우 【붙임2】 “손익계산서, 매출 및 영업이익률, 임직원 급여 내역”과 같이 4기(2019.3.1.~2020.2.28.)보다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 되어 매출총이익률(-13.67%) 및 영업이익률(-31.85%)이 악화된 상태임 - 특히, 2020년 8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총이익(13,873천원)은 동기간 내 임직원 급여(31,743천원)보다도 낮은 상태이고, 2020년 8월 말 현재 ▽의 보유현금이 11,903,935원에 불과하여 2020년 중 MRO(위탁) 사업 파트너사인 ㄷ에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63,647천원)이 연체인 상태이며, 이로 인해 위 ▽ 측이 1인 주주인 인천대학교에 부채상환목적으로 73,000천원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한편, 인천대학교 ◁는 2017. 2. 위 대학의 ▽를 법인 형태의 수익사업체(▽)로 설립·운영을 승인한 이후 위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결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재무상태표 및 주요 재무비율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1기	2기	3기 (의제사업연도)	4기
	2017.2.24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2.28	2019.3.1. 2020.2.28
유동자산	60,117,662	114,744,469	320,314,758	384,993,573
비유동자산	-	-	-	1,428,130
자산합계	60,117,662	114,744,469	320,314,758	386,421,703
유동부채	869,580	104,359,360	209,601,999	382,447,453
비유동부채	-	-	-	3,517,914
자본금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자본조정	(777,100)	(777,100)	(777,100)	(777,100)
이익잉여금	7,025,182	(41,837,791)	58,489,859	(51,766,564)
부채+자본합계	60,117,662	114,744,469	320,314,758	386,421,703

【주요 재무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기	3기	4기	비 고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10.0% (114,744/ 104,359)	152.8% (320,314/ 209,601)	100.7% (384,993/ 382,447)	단기간내 상환해야 할 부채 (외상 매입금 등)대비 보유현금 비율
부채비율 (부채/자본)	1004.89% (104,359/ 10,385)	189.32% (209,601/ 110,712)	84,579.21% (385,965/ 456)	기업의 자산 중 타인 자본 (부채) 의존도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 자본금]	80.41% (42,614/ 53,999)	-108.89% (-57,712/ 53,000)	99.14% (52,543/ 53,000)	100%에 가까울수록 자본잠식

【붙임2】

손익계산서, 매출 및 영업 이익률, 임직원 급여 내역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1기	2기	3기 (의제사업연도)	4기	5기 (진행중)
	2017/2/24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2/28	2019/3/1 ~2020/2/28	2020/3/1 ~2020/8/31
매출액	52,888,682	961,051,008	423,266,876	823,675,034	174,436,639
매출원가	43,907,000	922,493,790	278,130,465	739,754,117	160,562,730
매출총손익	8,981,682	38,557,218	145,136,411	83,920,917	13,873,909
판매관리비	1,219,408	86,438,097	34,700,611	196,535,303	69,432,174
영업손익	7,762,274	(47,880,879)	110,435,800	(112,614,386)	(55,558,265)
영업외수익	43,968	61,498	1,000	3,061,923	832,694
영업외비용	-	1,043,592	-	703,960	180,032
세전 당기순손익	7,806,242	(48,862,973)	110,436,800	(110,256,423)	(54,905,603)
법인세	781,060	-	10,109,150	-	-
당기순손익	7,025,182	(48,862,973)	100,327,650	(110,256,423)	(54,905,603)
누적손익	7,025,182	(41,837,791)	58,489,859	(51,766,564)	(106,672,167)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단위 : 원)

구분	4기	5기 (8월말 기준)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손익/매출액)	10.19%	7.95%
영업이익률 (영업손익/매출액)	-13.67%	-31.85%

【임직원 급여내역】

(단위 : 원)

구분 (2020/3/1~8/31)	금 액	비 고
매출총이익	13,873,909	
임원급여	21,600,000	- 급여
직원급여	10,143,485	6월 이후 - 외 전 직원 퇴사
차액 (매출총이익-급여)	(17,869,57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p>정규직 신규채용 면접전형 심사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직원의 임면, 보수, 징계 등)의 규정에 따라 본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인천대학교 직원 임용 시행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시험위원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20. 5. 2020년도 큰 직원 서류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면서,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여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심사에서만 배제하고, 평가 점수는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산정하는 ‘지원자 평가점수 결정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있고,</p> <p>▪ 위의 계획에 따라 2020. 5. 16. 실시한 면접전형에서 대상자 8명 중 이해관계자인 D, E에 대해 기피·제척을 신청한 F에게 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위 2명에 대한 위 F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는 나머지 심사위원(2명)의 점수 평균으로 산정토록 한 결과 최종 순위가 전도(순위 : 1순위 D, 2순위 E, 직무 배제 시 순위 : 1순위 D, 2순위 G)된 사실이 있음</p> <p>※ 제척대상자 평가점수 결정 ⇒ 제척대상이 있는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의 평균</p> <p>- 예시) A,B,C 심사위원 중 A심사원이 제척대상일 경우, B와 C의 평균 점수를 평가점수로 채점</p>	<p>○ 경고(3명)</p> <p>○ 통보(문책 1명)</p>

【참고】

제척대상 시험위원 직무 배제 시 면접시험 결과

지원자	당초 면접전형 결과					제척대상 직무 배제시 면접전형 결과				
	면접위원			평균	순위	면접위원			평균	순위
	-	-	F			-	-	F		
D	21	23	제척	22.0	1	21	23	제척	22	1
E	22	19		20.5	2	22	19		21	3
G	22	21		18	20.3	3	23		21	21.5
-	18	18	21	19.0	4	22	19	20.5	4	
-	23	19	14	18.7	5	20	17	18.5	5	
-	20	17	19	18.7	6	18	18	18	6	
-	18	16	16	16.7	7	18	16	17	7	
-	16	16	17	16.3	8	16	16	16	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p>기간제근로자 복무 및 급여 지급 부당</p> <p>○ 「인천대학교 직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별도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원의 보수는 개별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급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기산하고 익월 5일에 급여를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지급한다. 단, 결근·지각·조퇴·병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은 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누계일수가 5일 이상에 달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H 공식행사 일정 관리 및 비서등 업무’를 수행한 I(계약기간 : 2017.5.8. ~ 2019.5.7.)가 J 임기만료(2019.1.10.) 시점인 2019. 1.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J의 부탁으로 해고 등 징계 조치 없이 2017. 3. 14.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고,</p> <p>- 위의 처리과정에서 위 I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9. 1. 11.부터 2019. 1. 31.까지(총15일)의 합계 1,352,056¹⁾원을 1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2019. 2. 1.부터 2019. 3. 14.(총26일)까지의 급여분(2,421,683원²⁾)은 미사용 유급휴가³⁾로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¹⁾ 월정급 2,794,250원×15일/31일 = 1,352,056원 ²⁾ 월정급 2,794,250원×26일/31일 = 2,421,683원 ³⁾ 「근로기준법」 제60조 2019. 2. 1.~2019. 3. 14.(26일) 미사용 유급휴가 처리</p>	<p>○ 경고(2명)</p> <p>○ 통보(문책 1명)</p> <p>○ 시정(회수)</p> <p>-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합계 1,352,056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수사기관 ‘공소권 없음’ 통보자 등 징계 미요구</p> <p>○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6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본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p> <p>- 인천대학교 ◇는 2017. 1. 11. □□으로부터 위 대학 소속교원의 교통사고처리특별법(치상)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종결 처리하는 등 【붙임】 “수사기관 ‘공소권 없음’ 통보자 징계 사유 미검토 현황”과 같이 인천대학교 ◇ 및 ♡은 2017. 1. 11.부터 2019. 8. 19.까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교직원 3명에 대해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고,</p>	<p>○ 경고(2명)</p> <p>○ 주의(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특히, 위 ♀은 2019. 2. 1. 위 대학 ♀로부터 K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통보받고도, 2020. 9. 감사일 현재 까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수사기관 '공소권 없음' 통보자 징계사유 미검토 현황

연번	대상자			처분 결과	통보일	처분 기관	접수일	담당 부서
	소속	직위	성명					
1	인천대학교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	2017.1.11.	□	2017.1.11.	◇
2	인천대학교	-	○○○	폭행 【공소권 없음】	2017.1.20.	-	2017.1.25.	♣
3	인천대학교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	2019.8.19.	-	2019.8.1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교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미기재</p> <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인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데도,</p> <p>- 인천대학교 L은 2017. 3. 9. (17:00 ~ 19:00) B에서 실시한 외부강의를 신고하면서 그 사례금을 기재·보완하지 않는 등 【붙임】 “교원 외부강의 사례금 미기재 내역”과 같이 위 L 등 60명이 2017. 3.부터 2020. 9.까지 총 182건의 외부강의를 신고하면서 그 사례금을 기재·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 기관주의

【붙임】

교원 외부강의 사례금 미기재 내역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1	-	-	L	2017-03-06	강의,강연	2017-03-09 17:00 ~ 2017-03-09 19:00	ㄴ
2	-	-	-	2017-03-06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07 14:00 ~ 2017-03-07 17:00	-
3	-	-	-	2017-03-06	강의,강연	2017-03-06 18:30 ~ 2017-03-06 19:50	-
4	-	-	-	2017-03-07	강의,강연	2017-02-24 13:00 ~ 2017-02-24 14:00	-
5	-	-	-	2017-03-08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10 02:00 ~ 2017-03-10 04:00	-
6	-	-	-	2017-03-14	방송출연	2017-03-12 01:30 ~ 2017-03-12 02:40	-
7	-	-	-	2017-03-2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25 01:00 ~ 2017-03-25 05:00	-
8	-	-	-	2017-03-2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24 16:00 ~ 2017-03-24 18:00	-
9	-	-	-	2017-03-2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24 14:00 ~ 2017-03-24 16:00	-
10	-	-	-	2017-03-23	강의,강연	2017-03-24 15:00 ~ 2017-03-24 17:00	-
11	-	-	-	2017-03-23	강의,강연	2017-03-24 13:00 ~ 2017-03-24 15:00	-
12	-	-	-	2017-03-23	강의,강연	2017-03-24 08:30 ~ 2017-03-24 10:30	-
13	-	-	-	2017-03-23	방송출연	2017-03-23 01:10 ~ 2017-03-23 02:10	-
14	-	-	-	2017-03-23	방송출연	2017-03-22 02:00 ~ 2017-03-22 03:30	-
15	-	-	-	2017-03-23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3-20 05:00 ~ 2017-03-20 06:30	-
16	-	-	-	2017-03-25	방송출연	2017-03-24 04:40 ~ 2017-03-24 05:40	-
17	-	-	-	2017-03-27	강의,강연	2017-04-07 10:00 ~ 2017-04-07 12:00	-
18	-	-	-	2017-03-27	발표,토론	2017-04-05 14:00 ~ 2017-04-05 15:00	-
19	-	-	-	2017-03-28	방송출연	2017-03-28 10:00 ~ 2017-03-28 11:00	-
20	-	-	-	2017-03-28	방송출연	2017-03-25 04:30 ~ 2017-03-25 05:30	-
21	-	-	-	2017-03-30	방송출연	2017-03-30 01:00 ~ 2017-03-30 02:20	-
22	-	-	-	2017-04-02	방송출연	2017-04-02 02:40 ~ 2017-04-02 03:10	-
23	-	-	-	2017-04-02	방송출연	2017-04-01 02:40 ~ 2017-04-01 03:3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24	-	-	-	2017-04-04	방송출연	2017-04-03 05:00 ~ 2017-04-03 05:50	-
25	-	-	-	2017-04-05	방송출연	2017-04-05 04:00 ~ 2017-04-05 04:30	-
26	-	-	-	2017-04-05	방송출연	2017-04-04 02:00 ~ 2017-04-04 03:00	-
27	-	-	-	2017-04-06	방송출연	2017-04-06 02:00 ~ 2017-04-06 02:30	-
28	-	-	-	2017-04-06	방송인터뷰	2017-04-05 08:10 ~ 2017-04-05 08:30	-
29	-	-	-	2017-04-10	방송출연	2017-04-08 12:00 ~ 2017-04-08 12:30	-
30	-	-	-	2017-04-10	방송출연	2017-04-07 05:10 ~ 2017-04-07 05:50	-
31	-	-	-	2017-04-1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13 10:00 ~ 2017-04-13 12:40	-
32	-	-	-	2017-04-13	발표,토론	2017-04-15 16:00 ~ 2017-04-15 16:30	-
33	-	-	-	2017-04-13	강의,강연	2017-04-13 19:00 ~ 2017-04-13 21:00	-
34	-	-	-	2017-04-14	축사	2017-04-13 16:00 ~ 2017-04-13 16:20	-
35	-	-	-	2017-04-15	방송출연	2017-04-13 05:40 ~ 2017-04-13 06:20	-
36	-	-	-	2017-04-15	방송출연	2017-04-13 04:00 ~ 2017-04-13 04:30	-
37	-	-	-	2017-04-15	방송출연	2017-04-13 02:00 ~ 2017-04-13 02:20	-
38	-	-	-	2017-04-15	기관경영평가	2017-04-12 09:00 ~ 2017-04-12 11:50	-
39	-	-	-	2017-04-15	신문기고	2017-04-12 00:00 ~ 2017-04-12 00:20	-
40	-	-	-	2017-04-15	방송출연	2017-04-08 03:20 ~ 2017-04-08 04:00	-
41	-	-	-	2017-04-18	방송출연	2017-04-18 02:00 ~ 2017-04-18 02:30	-
42	-	-	-	2017-04-18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17 02:00 ~ 2017-04-17 03:00	-
43	-	-	-	2017-04-19	방송인터뷰	2017-04-19 08:00 ~ 2017-04-19 08:20	-
44	-	-	-	2017-04-2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25 11:00 ~ 2017-04-25 13:00	-
45	-	-	-	2017-04-2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22 14:00 ~ 2017-04-22 16:00	-
46	-	-	-	2017-04-20	방송출연	2017-04-20 02:00 ~ 2017-04-20 02:30	-
47	-	-	-	2017-04-2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19 09:00 ~ 2017-04-19 12:00	-
48	-	-	-	2017-04-20	방송출연	2017-04-17 05:10 ~ 2017-04-17 05:5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49	-	-	-	2017-04-20	강의,강연	2017-04-10 15:00 ~ 2017-04-10 17:00	-
50	-	-	-	2017-04-2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2-02 10:30 ~ 2017-02-02 12:30	-
51	-	-	-	2017-04-2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21 02:00 ~ 2017-04-21 03:30	-
52	-	-	-	2017-04-24	기고	2017-04-24 00:00 ~ 2017-04-24 00:00	-
53	-	-	-	2017-04-24	방송출연	2017-04-23 10:00 ~ 2017-04-23 10:50	-
54	-	-	-	2017-04-25	방송출연	2017-04-25 02:00 ~ 2017-04-25 02:30	-
55	-	-	-	2017-04-26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4-26 09:00 ~ 2017-04-26 13:00	-
56	-	-	-	2017-04-30	방송출연	2017-04-28 05:00 ~ 2017-04-28 06:20	-
57	-	-	-	2017-05-01	강의,강연	2017-05-02 13:00 ~ 2017-05-02 15:00	-
58	-	-	-	2017-05-02	방송출연	2017-05-02 05:00 ~ 2017-05-02 06:00	-
59	-	-	-	2017-05-03	방송인터뷰	2017-05-03 01:10 ~ 2017-05-03 01:20	-
60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12 08:30 ~ 2017-05-12 08:50	-
61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10 10:30 ~ 2017-05-10 11:40	-
62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10 07:30 ~ 2017-05-10 07:50	-
63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10 02:00 ~ 2017-05-10 03:30	-
64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10 00:00 ~ 2017-05-10 02:00	-
65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09 12:00 ~ 2017-05-09 14:00	-
66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09 08:00 ~ 2017-05-09 10:00	-
67	-	-	-	2017-05-11	방송출연	2017-05-09 06:00 ~ 2017-05-09 07:00	-
68	-	-	-	2017-05-14	방송출연	2017-05-13 02:40 ~ 2017-05-13 03:30	-
69	-	-	-	2017-05-14	방송출연	2017-05-12 08:30 ~ 2017-05-12 09:50	-
70	-	-	-	2017-05-18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5-17 14:30 ~ 2017-05-18 18:50	-
71	-	-	-	2017-05-18	방송출연	2017-05-16 05:00 ~ 2017-05-16 05:50	-
72	-	-	-	2017-05-18	채집	2017-04-22 09:00 ~ 2017-05-14 09:00	-
73	-	-	-	2017-06-02	기고	2017-06-02 00:00 ~ 2017-06-02 00:0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74	-	-	-	2017-06-09	발표,토론	2017-06-07 10:00 ~ 2017-06-07 12:00	-
75	-	-	-	2017-06-12	방송출연	2017-06-11 02:50 ~ 2017-06-11 03:20	-
76	-	-	-	2017-06-14	발표,토론	2017-06-13 02:30 ~ 2017-06-13 04:30	-
77	-	-	-	2017-06-16	방송출연	2017-06-16 04:00 ~ 2017-06-16 05:00	-
78	-	-	-	2017-06-16	방송출연	2017-06-15 04:00 ~ 2017-06-15 06:00	-
79	-	-	-	2017-06-2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6-05 14:00 ~ 2017-06-05 18:00	-
80	-	-	-	2017-06-21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6-22 01:30 ~ 2017-06-22 05:30	-
81	-	-	-	2017-06-23	발표,토론	2017-06-23 08:40 ~ 2017-06-23 10:20	-
82	-	-	-	2017-06-28	시민감시위원회	2017-06-28 11:00 ~ 2017-06-28 13:30	-
83	-	-	-	2017-06-28	방송인터뷰	2017-06-27 08:10 ~ 2017-06-27 08:30	-
84	-	-	-	2017-06-28	기고	2017-06-27 00:00 ~ 2017-06-27 00:00	-
85	-	-	-	2017-06-28	기고	2017-06-27 00:00 ~ 2017-06-27 00:00	-
86	-	-	-	2017-06-28	발표,토론	2017-06-14 15:00 ~ 2017-06-14 17:00	-
87	-	-	-	2017-06-29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6-28 11:00 ~ 2017-06-28 12:30	-
88	-	-	-	2017-07-08	강의,강연	2017-06-29 10:00 ~ 2017-06-30 13:00	-
89	-	-	-	2017-07-23	방송인터뷰	2017-07-24 08:10 ~ 2017-07-24 08:30	-
90	-	-	-	2017-07-23	방송인터뷰	2017-07-21 18:30 ~ 2017-07-21 18:40	-
91	-	-	-	2017-07-24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7-28 13:30 ~ 2017-07-28 16:30	-
92	-	-	-	2017-07-24	발표,토론	2017-07-25 16:00 ~ 2017-07-26 14:00	-
93	-	-	-	2017-07-24	강의,강연	2017-05-31 18:30 ~ 2017-05-31 20:10	-
94	-	-	-	2017-07-27	방송인터뷰	2017-07-28 08:30 ~ 2017-07-28 08:50	-
95	-	-	-	2017-07-30	컬럼	2017-08-05 00:00 ~ 2017-08-05 00:10	-
96	-	-	-	2017-07-30	컬럼	2017-08-01 00:00 ~ 2017-08-01 00:10	-
97	-	-	-	2017-07-30	기고	2017-07-31 00:00 ~ 2017-07-31 00:10	-
98	-	-	-	2017-08-01	강의,강연	2017-08-01 15:00 ~ 2017-08-01 17:0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99	-	-	-	2017-08-01	강의,강연	2017-08-01 13:00 ~ 2017-08-01 15:00	-
100	-	-	-	2017-08-01	강의,강연	2017-08-01 08:30 ~ 2017-08-01 10:30	-
101	-	-	-	2017-08-02	강의,강연	2017-08-02 10:00 ~ 2017-08-02 17:00	-
102	-	-	-	2017-08-07	컬럼	2017-08-16 00:00 ~ 2017-08-16 00:00	-
103	-	-	-	2017-08-07	컬럼	2017-08-09 00:00 ~ 2017-08-09 00:00	-
104	-	-	-	2017-08-07	방송인터뷰	2017-08-07 11:10 ~ 2017-08-07 11:20	-
105	-	-	-	2017-08-07	발표,토론	2017-08-04 14:00 ~ 2017-08-04 16:00	-
106	-	-	-	2017-08-07	방송인터뷰	2017-08-03 16:20 ~ 2017-08-03 16:30	-
107	-	-	-	2017-08-07	방송인터뷰	2017-08-03 15:10 ~ 2017-08-03 15:20	-
108	-	-	-	2017-08-27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9-08 14:00 ~ 2017-09-08 17:00	-
109	-	-	-	2017-08-27	발표,토론	2017-09-07 14:00 ~ 2017-09-07 18:00	-
110	-	-	-	2017-08-27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8-30 10:00 ~ 2017-08-30 12:00	-
111	-	-	-	2017-08-27	발표,토론	2017-08-28 10:30 ~ 2017-08-28 14:00	-
112	-	-	-	2017-08-28	인터뷰	2017-08-25 00:00 ~ 2017-08-25 00:00	-
113	-	-	-	2017-08-31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9-01 14:00 ~ 2017-09-01 17:00	-
114	-	-	-	2017-08-31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08-28 16:00 ~ 2017-08-28 18:00	-
115	-	-	-	2017-09-08	강의,강연	2017-10-28 10:00 ~ 2017-10-28 11:50	-
116	-	-	-	2017-09-14	발표,토론	2017-09-23 04:00 ~ 2017-09-23 05:00	-
117	-	-	-	2017-09-16	강의,강연	2017-09-20 10:00 ~ 2017-09-20 11:50	-
118	-	-	-	2017-09-16	강의,강연	2017-09-19 14:00 ~ 2017-09-19 16:00	-
119	-	-	-	2017-09-16	강의,강연	2017-09-06 10:00 ~ 2017-09-06 17:00	-
120	-	-	-	2017-09-18	운영위원회	2017-09-27 16:00 ~ 2017-09-27 18:00	-
121	-	-	-	2017-09-18	정기회의	2017-09-22 17:00 ~ 2017-09-22 19:00	-
122	-	-	-	2017-09-20	발표,토론	2017-09-25 14:00 ~ 2017-09-25 16:30	-
123	-	-	-	2017-10-10	강의,강연	2017-10-19 15:00 ~ 2017-10-19 17:0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124	-	-	-	2017-10-3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11-03 15:00 ~ 2017-11-03 17:00	-
125	-	-	-	2017-11-08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11-09 14:00 ~ 2017-11-09 16:00	-
126	-	-	-	2017-11-16	서면심사	2017-11-20 09:00 ~ 2017-11-20 10:00	-
127	-	-	-	2017-11-21	강의,강연	2017-11-24 02:00 ~ 2017-11-24 04:00	-
128	-	-	-	2017-12-04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12-09 14:00 ~ 2017-12-09 19:00	-
129	-	-	-	2017-12-11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7-12-12 14:00 ~ 2017-12-12 17:00	-
130	-	-	-	2018-01-1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8-01-16 08:00 ~ 2018-01-16 16:00	-
131	-	-	-	2018-08-23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8-08-23 10:00 ~ 2018-08-23 13:00	-
132	-	-	-	2018-12-1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8-12-11 15:00 ~ 2018-12-11 17:00	-
133	-	-	-	2019-02-14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02-21 11:00 ~ 2019-02-21 18:00	-
134	-	-	-	2019-02-15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02-18 11:00 ~ 2019-02-18 18:00	-
135	-	-	-	2019-04-06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04-01 12:00 ~ 2019-04-11 13:00	-
136	-	-	-	2019-07-29	강의,강연	2019-07-22 13:20 ~ 2019-07-22 14:50	-
137	-	-	-	2019-08-22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08-27 11:00 ~ 2019-08-27 12:00	-
138	-	-	-	2019-08-28	강의,강연	2019-08-29 10:00 ~ 2019-12-06 12:00	-
139	-	-	-	2019-09-19	강의,강연	2019-08-28 15:00 ~ 2019-12-11 18:00	-
140	-	-	-	2019-10-10	강의,강연	2019-10-11 17:00 ~ 2019-10-11 19:00	-
141	-	-	-	2019-10-14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10-16 12:00 ~ 2019-10-16 15:00	-
142	-	-	-	2019-10-30	심사,평가,자문, 의결	2019-10-31 14:00 ~ 2019-10-31 18:00	-
143	-	-	-	2019-12-04	발표,토론	2019-12-06 14:00 ~ 2019-12-06 17:00	-
144	-	-	-	2019-12-09	발표,토론	2019-12-20 13:00 ~ 2019-12-20 18:00	-
145	-	-	-	2020-05-21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5-22 16:00 ~ 2020-05-22 18:00	-
146	-	-	-	2020-07-03	발표,토론	2020-07-03 14:00 ~ 2020-07-03 17:00	-
147	-	-	-	2020-07-09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7-08 00:00 ~ 2020-07-15 00:00	-
148	-	-	-	2020-07-15	강의,강연	2020-09-02 14:00 ~ 2020-09-02 17:0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149	-	-	-	2020-07-24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7-28 10:00 ~ 2020-07-28 16:00	-
150	-	-	-	2020-08-05	인터뷰	2020-08-06 00:00 ~ 2020-08-06 00:00	-
151	-	-	-	2020-08-10	강의,강연	2020-09-18 16:00 ~ 2020-09-18 16:20	-
152	-	-	-	2020-08-10	강의,강연	2020-08-10 15:00 ~ 2020-08-10 18:00	-
153	-	-	-	2020-08-12	강의,강연	2020-08-31 00:00 ~ 2020-12-13 23:50	-
154	-	-	-	2020-08-14	학술대회 사회	2020-08-12 13:00 ~ 2020-08-12 18:00	-
155	-	-	-	2020-08-18	발표,토론	2020-08-20 15:00 ~ 2020-08-20 18:00	-
156	-	-	-	2020-08-18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8-19 13:50 ~ 2020-08-19 19:00	-
157	-	-	-	2020-08-18	강의,강연	2020-08-18 13:00 ~ 2020-08-18 15:00	-
158	-	-	-	2020-08-19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8-22 11:30 ~ 2020-08-22 14:00	-
159	-	-	-	2020-08-20	강의,강연	2020-09-03 10:00 ~ 2020-09-05 15:00	-
160	-	-	-	2020-08-20	강의,강연	2020-08-21 09:00 ~ 2020-08-21 18:00	-
161	-	-	-	2020-08-25	강의,강연	2020-10-24 14:00 ~ 2020-10-24 17:00	-
162	-	-	-	2020-08-25	강의,강연	2020-09-04 14:00 ~ 2020-12-18 16:50	-
163	-	-	-	2020-08-26	강의,강연	2020-09-02 17:00 ~ 2020-09-02 20:00	-
164	-	-	-	2020-08-26	강의,강연	2020-08-26 14:00 ~ 2020-08-26 16:00	-
165	-	-	-	2020-08-27	강의,강연	2020-11-25 17:00 ~ 2020-11-25 18:30	-
166	-	-	-	2020-08-27	강의,강연	2020-11-18 17:00 ~ 2020-11-18 18:30	-
167	-	-	-	2020-08-27	강의,강연	2020-08-31 00:00 ~ 2020-12-23 23:50	-
168	-	-	-	2020-08-27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8-27 13:00 ~ 2020-08-27 18:00	-
169	-	-	-	2020-08-27	심사,평가,자문, 의결	2020-08-27 10:30 ~ 2020-08-27 13:00	-
170	-	-	-	2020-08-27	강의,강연	2020-08-20 12:00 ~ 2020-08-20 13:00	-
171	-	-	-	2020-08-31	강의,강연	2020-09-01 09:00 ~ 2020-12-08 11:00	-
172	-	-	-	2020-09-02	강의,강연	2020-09-04 10:00 ~ 2020-12-18 10:00	-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신고일자	활동유형	외부강의기간	요청기관
173	-	-	-	2020-09-02	강의,강연	2020-09-03 18:00 ~ 2020-12-03 20:00	-
174	-	-	-	2020-09-02	강의,강연	2020-08-28 10:00 ~ 2020-09-11 12:00	-
175	-	-	-	2020-09-03	강의,강연	2020-10-23 10:00 ~ 2020-10-23 12:00	-
176	-	-	-	2020-09-03	강의,강연	2020-09-03 18:30 ~ 2020-09-03 21:30	-
177	-	-	-	2020-09-04	심사	2020-09-07 10:00 ~ 2020-09-07 12:00	-
178	-	-	-	2020-09-04	자문	2020-08-31 10:00 ~ 2020-12-31 14:00	-
179	-	-	-	2020-09-05	심사	2020-09-08 09:30 ~ 2020-09-08 12:00	-
180	-	-	-	2020-09-08	발표,토론	2020-09-14 09:00 ~ 2020-09-14 12:00	-
181	-	-	-	2020-09-09	심사	2020-09-14 14:00 ~ 2020-09-14 17:00	-
182	-	-	-	2020-09-11	자문	2020-09-09 16:00 ~ 2020-09-09 17: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p>의원면직 신청자 제한사유 미확인</p> <p>○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임면·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2.20. M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면직 처리하는 등 【붙임】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 미확인 현황”과 같이 2017. 2.부터 2020. 9.까지 위 M 등 14명의 교원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p>	○ 주의(5명)

【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 현황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의원면직 신청일	의원 면직일	제한대상 해당 여부 조회 현황			
						감사원	검찰	경찰	교육부
1	-	-	M	2017.02.13	2017.02.20	x	x	x	x
2	-	-	-	2017.02.16	2017.02.28	x	x	x	x
3	-	-	-	2018.02.20	2018.02.28	x	x	x	x
4	-	-	-	2018.04.30	2018.04.30	x	x	x	x
5	-	-	-	2018.08.27	2018.08.31	x	x	x	x
6	-	-	-	2019.02.22	2019.02.28	x	x	x	x
7	-	-	-	2019.08.07	2019.08.12	x	x	x	x
8	-	-	-	2019.12.20	2019.12.31	x	x	x	x
9	-	-	-	2020.01.17	2020.03.01	x	x	x	x
10	-	-	-	2020.01.22	2020.03.01	x	x	x	x
11	-	-	-	2020.01.28	2020.03.01	x	x	x	x
12	-	-	-	2020.01.30	2020.03.01	x	x	x	x
13	-	-	-	2020.07.30	2020.09.01	x	x	x	x
14	-	-	-	2020.08.10	2020.09.01	x	x	x	x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 N은 2017. 3. 1.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한 2017. 10. 24.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붙임 1】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N 등 신규 임용 교직원 57명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이수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위 대학교 O 등 교원 18명은 2017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붙임 2】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직원 2,426명(중복포함)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확인·관리하기 바람

【붙임 1】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비고 (지연일수 등)
1	2017	-	-	N	2017-03-01	2017-10-24	177
2	2017	-	-	-	2017-03-01	2017-10-24	177
3	2017	-	-	-	2017-09-01		미이수
4	2017	-	-	-	2017-09-01		미이수
5	2017	-	-	-	2017-09-01	2017-10-16	
6	2018	-	-	-	2018-03-01	2018-10-29	182
7	2018	-	-	-	2018-03-01	2018-05-15	15
8	2018	-	-	-	2018-03-01	2018-12-04	218
9	2018	-	-	-	2018-09-01		미이수
10	2018	-	-	-	2018-09-01		미이수
11	2018	-	-	-	2018-09-01		미이수
12	2018	-	-	-	2018-03-01	2018-10-29	182
13	2018	-	-	-	2018-03-01	2018-05-15	15
14	2018	-	-	-	2018-03-01	2018-12-04	218
15	2018	-	-	-	2018-09-01		미이수
16	2018	-	-	-	2018-09-01		미이수
17	2018	-	-	-	2018-09-01		미이수
18	2019	-	-	-	2019-03-01	2019-06-11	71
19	2019	-	-	-	2019-03-01	2019-06-04	65
20	2019	-	-	-	2019-09-01		미이수
21	2019	-	-	-	2019-09-01		미이수
22	2019	-	-	-	2019-09-01	2019-11-13	13
23	2019	-	-	-	2019-09-01	2019-11-26	26
24	2019	-	-	-	2019-09-01	2019-11-18	18
25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26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27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28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비고 (지연일수 등)
29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0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1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2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3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4	2017	-	-	-	2017-01-26	2017-10-27	214
35	2017	-	-	-	2017-05-01	2017-10-27	119
36	2017	-	-	-	2017-05-01	2018-09-01	428
37	2017	-	-	-	2017-05-01	2018-12-14	532
38	2017	-	-	-	2017-05-01	2017-10-27	119
39	2018	-	-	-	2018-02-05	2018-12-14	252
40	2018	-	-	-	2018-05-01	2018-12-14	167
41	2018	-	-	-	2018-05-01	2018-12-14	167
42	2018	-	-	-	2018-05-01	2018-12-14	167
43	2018	-	-	-	2018-06-01	2019-06-28	332
44	2018	-	-	-	2018-06-01	2018-12-14	136
45	2018	-	-	-	2018-07-01	2018-12-14	106
46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47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48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49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50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51	2018	-	-	-	2018-09-03	2018-12-14	42
52	2019	-	-	-	2019-02-01	2019-06-28	87
53	2019	-	-	-	2019-02-01	2019-06-28	87
54	2019	-	-	-	2019-05-31	2019-11-29	122
55	2019	-	-	-	2019-07-01	2019-11-29	91
56	2019	-	-	-	2019-08-01	2019-11-29	60
57	2019	-	-	-	2019-09-01		미이수

【붙임 2】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년도	교육 대상 인원	교육이수(오프라인)					교육 미이수 인원				
			횟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계
1	2017	715	2	540	563	563	540	175	152	152	175	654
2	2018	865	2	599	599	637	637	266	266	228	228	988
3	2019	910	2	814	814	614	614	96	96	296	296	784
합계		2,490	6	1,953	1,976	1,814	1,791	537	514	676	699	2,42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p>계약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p> <p>○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2017. 2. D가 신청하여 승인받은 총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 합계 106,362원을 ‘예산 미편성’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붙임】 “계약직 연구원 초과근무 승인 내역”과 같이 2017. 1.월부터 2018. 1.까지 위 D 등 계약직 연구원 5명이 신청한 초과근무 총 129건을 승인하였음에도 ‘예산 미편성’ 사유로 초과근무수당 합계 5,563,4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통보</p> <p>-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합계 5,563,403원을 D 등 계약직 연구원 5명에게 지급하기 바람</p>

【붙임】

계약직 연구원 초과근무 승인 내역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1	2010S115	☆	D	2017-02-23	목	18	0	22	0	3	0			
2	2010S115	☆	D	2017-02-27	월	18	0	22	0	3	0			
소계(D 2월)										6	0	17,727	106,362	
3	2010S115	☆	D	2017-03-02	목	18	0	23	0	4	0			
4	2010S115	☆	D	2017-03-03	금	18	0	22	0	3	0			
5	2010S115	☆	D	2017-03-05	일	10	0	17	0	4	0			
6	2010S115	☆	D	2017-03-06	월	18	0	22	0	3	0			
7	2010S115	☆	D	2017-03-07	화	18	0	23	0	4	0			
8	2010S115	☆	D	2017-03-08	수	18	0	22	0	3	0			
9	2010S115	☆	D	2017-03-09	목	18	0	23	0	4	0			
10	2010S115	☆	D	2017-03-10	금	18	0	23	0	4	0			
11	2010S115	☆	D	2017-03-11	토	9	0	22	0	4	0			
12	2010S115	☆	D	2017-03-13	월	18	0	23	0	4	0			
13	2010S115	☆	D	2017-03-15	수	18	0	22	0	3	0			
14	2010S115	☆	D	2017-03-16	목	18	0	22	0	3	0			
소계(D 3월)										43	0	16,507	709,801	
15	2010S115	☆	D	2017-07-13	목	18	0	19	0	0	0			
소계(D 7월)										0	0	16,507	-	
16	2010S115	☆	D	2018-01-03	수	18	0	21	0	2	0			
17	2010S115	☆	D	2018-01-04	목	18	0	20	0	1	0			
18	2010S115	☆	D	2018-01-08	월	18	0	21	0	2	0			
소계(D '18.1월)										5	0	16,507	82,535	
19	2010S114	☆	-	2017-02-27	월	18	0	21	0	2	0			
소계(- 2월)										2	0	17,727	35,454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20	2010S114	☆	-	2017-03-14	화	18	0	21	0	2	0			
21	2010S114	☆	-	2017-03-17	금	18	0	23	0	4	0			
22	2010S114	☆	-	2017-03-18	토	12	0	18	0	4	0			
23	2010S114	☆	-	2017-03-20	월	18	0	22	0	3	0			
24	2010S114	☆	-	2017-03-21	화	18	0	22	0	3	0			
25	2010S114	☆	-	2017-03-22	수	18	0	23	50	4	0			
26	2010S114	☆	-	2017-03-23	목	18	0	21	0	2	0			
27	2010S114	☆	-	2017-03-24	금	18	0	20	0	1	0			
28	2010S114	☆	-	2017-03-28	화	18	0	21	0	2	0			
소계(- 3월)										25	0	16,507	412,675	
29	2010S114	☆	-	2017-04-03	월	18	0	21	0	2	0			
30	2010S114	☆	-	2017-04-18	화	18	0	21	0	2	0			
소계(- 4월)										4	0	16,507	66,028	
31	2010S114	☆	-	2017-05-10	수	18	0	22	0	3	0			
32	2010S114	☆	-	2017-05-16	화	18	0	20	0	1	0			
33	2010S114	☆	-	2017-05-17	수	18	0	21	0	2	0			
소계(- 5월)										6	0	16,507	99,042	
34	2010S114	☆	-	2017-06-08	목	18	0	21	0	2	0			
35	2010S114	☆	-	2017-06-12	월	18	0	22	0	3	0			
소계(- 6월)										5	0	16,507	82,535	
36	2010S114	☆	-	2017-09-16	토	13	30	20	30	4	0			
37	2010S114	☆	-	2017-09-19	화	18	0	22	0	3	0			
38	2010S114	☆	-	2017-09-21	목	18	0	21	0	2	0			
소계(- 9월)										9	0	16,507	148,563	
39	2010S114	☆	-	2017-10-09	월	12	0	18	30	4	0			
40	2010S114	☆	-	2017-10-13	금	18	0	20	0	1	0			
41	2010S114	☆	-	2017-10-16	월	18	0	21	0	2	0			
42	2010S114	☆	-	2017-10-17	화	18	0	20	0	1	0			
소계(- 10월)										8	0	16,507	132,056	
43	2010S114	☆	-	2017-11-07	화	18	0	20	0	1	0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44	2010S114	☆	-	2017-11-30	목	18	0	21	0	2	0			
소계(- 11월)										3	0	16,507	49,521	
45	2010S114	☆	-	2017-12-05	화	18	0	21	0	2	0			
46	2010S114	☆	-	2017-12-11	월	18	0	22	0	3	0			
47	2010S114	☆	-	2017-12-12	화	18	0	22	0	3	0			
소계(- 12월)										8	0	16,507	132,056	
48	2010S114	☆	-	2018-01-03	수	18	0	21	0	2	0			
49	2010S114	☆	-	2018-01-04	목	18	0	20	0	1	0			
50	2010S114	☆	-	2018-01-16	화	17	0	22	0	4	0			
51	2010S114	☆	-	2018-01-17	수	17	0	20	0	2	0			
52	2010S114	☆	-	2018-01-18	목	17	0	20	30	2	30			
53	2010S114	☆	-	2018-01-22	월	17	0	20	0	2	0			
54	2010S114	☆	-	2018-01-31	수	18	0	20	0	1	0			
소계(- '18.1월)										14	0	16,507	231,098	
55	2016S997	☆	-	2017-01-25	수	18	0	21	0	2	0			
56	2016S997	☆	-	2017-01-31	화	18	0	21	0	2	0			
소계(- 1월)										4	0	16,507	66,028	
57	2016S997	☆	-	2017-02-01	수	18	0	22	0	3	0			
58	2016S997	☆	-	2017-02-02	목	18	0	22	0	3	0			
59	2016S997	☆	-	2017-02-06	월	18	0	21	0	2	0			
60	2016S997	☆	-	2017-02-23	목	18	0	22	0	3	0			
61	2016S997	☆	-	2017-02-28	화	18	0	23	0	4	0			
소계(- 2월)										15	0	16,507	247,605	
62	2016S997	☆	-	2017-03-02	목	18	0	22	0	3	0			
63	2016S997	☆	-	2017-03-08	수	18	0	21	0	2	0			
소계(- 3월)										5	0	16,507	82,535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64	2016S997	☆	-	2017-05-31	수	18	0	20	0	1	0			
소계(- 5월)										1	0	16,507	16,507	
65	2016S997	☆	-	2017-06-07	수	18	0	21	0	2	0			
66	2016S997	☆	-	2017-06-12	월	18	0	19	0	0	0			
소계(- 6월)										2	0	16,507	33,014	
67	2016S997	☆	-	2017-07-13	목	18	0	19	0	0	0			
68	2016S997	☆	-	2017-07-17	월	18	0	20	0	1	0			
소계(- 7월)										1	0	16,507	16,507	
69	2016S997	☆	-	2017-08-31	목	18	0	21	30	2	30			
소계(- 8월)										2	30	16,507	33,014	
70	2016S997	☆	-	2017-10-16	월	18	0	21	0	2	0			
소계(- 10월)										2	0	16,507	33,014	
71	2016S997	☆	-	2018-01-08	월	18	0	21	0	2	0			
72	2016S997	☆	-	2018-01-16	화	18	0	22	0	3	0			
소계(- '18.1월)										5	0	16,507	82,535	
73	2017S021	☆	-	2017-03-14	화	18	0	21	0	2	0			
74	2017S021	☆	-	2017-03-17	금	18	0	23	0	4	0			
75	2017S021	☆	-	2017-03-18	토	12	0	18	0	4	0			
76	2017S021	☆	-	2017-03-21	화	18	0	22	0	3	0			
77	2017S021	☆	-	2017-03-24	금	18	0	20	0	1	0			
78	2017S021	☆	-	2017-03-25	토	12	0	18	20	4	0			
79	2017S021	☆	-	2017-03-28	화	18	0	21	0	2	0			
소계(- 3월)										20	0	15,974	319,480	
80	2017S021	☆	-	2017-04-01	토	13	0	16	30	3	30			
81	2017S021	☆	-	2017-04-03	월	18	0	23	50	4	0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82	2017S021	☆	-	2017-04-04	화	18	0	22	0	3	0			
83	2017S021	☆	-	2017-04-26	수	18	0	20	40	1	40			
소계(- 4월)										12	10	16,507	198,084	
84	2017S021	☆	-	2017-05-12	금	17	0	22	0	4	0			
소계(- 5월)										4	0	16,507	66,028	
85	2017S021	☆	-	2017-06-05	월	18	0	22	0	3	0			
86	2017S021	☆	-	2017-06-06	화	12	0	16	0	4	0			
87	2017S021	☆	-	2017-06-08	목	18	0	22	30	3	30			
88	2017S021	☆	-	2017-06-10	토	13	30	16	30	3	0			
89	2017S021	☆	-	2017-06-16	금	18	0	21	0	2	0			
90	2017S021	☆	-	2017-06-28	수	18	0	20	30	1	30			
소계(- 6월)										17	0	16,507	280,619	
91	2017S021	☆	-	2017-09-19	화	18	0	19	30	0	30			
92	2017S021	☆	-	2017-09-26	화	18	0	21	0	2	0			
소계(- 9월)										2	30	16,507	33,014	
93	2017S021	☆	-	2017-10-08	일	14	0	22	20	4	0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94	2017S021	☆	-	2017-10-11	수	18	0	21	0	2	0			
95	2017S021	☆	-	2017-10-13	금	18	0	20	0	1	0			
96	2017S021	☆	-	2017-10-17	화	18	0	20	0	1	0			
97	2017S021	☆	-	2017-10-26	목	18	0	22	30	3	30			
소계(- 10월)										11	30	16,507	181,577	
98	2017S021	☆	-	2017-11-06	월	18	0	20	20	1	20			
99	2017S021	☆	-	2017-11-23	목	18	0	20	30	1	30			
소계(- 11월)										2	50	16,507	33,014	
100	2017S021	☆	-	2018-01-16	화	17	0	22	0	4	0			
101	2017S021	☆	-	2018-01-17	수	17	0	20	0	2	0			
102	2017S021	☆	-	2018-01-18	목	17	0	20	30	2	30			
소계(- '18.1월)										8	30	16,507	132,056	
103	2016S971	☆	-	2017-01-17	화	18	0	21	0	2	0			
104	2016S971	☆	-	2017-01-18	수	18	0	23	0	4	0			
105	2016S971	☆	-	2017-01-24	화	18	0	21	0	2	0			
106	2016S971	☆	-	2017-01-31	화	18	0	21	0	2	0			
소계(- 1월)										10	0	21,531	215,310	
107	2016S971	☆	-	2017-02-01	수	18	0	22	0	3	0			
108	2016S971	☆	-	2017-02-02	목	18	0	22	0	3	0			
109	2016S971	☆	-	2017-02-06	월	18	0	21	0	2	0			
110	2016S971	☆	-	2017-02-20	월	18	0	21	0	2	0			
111	2016S971	☆	-	2017-02-21	화	18	0	23	0	4	0			
112	2016S971	☆	-	2017-02-23	목	18	0	22	0	3	0			
113	2016S971	☆	-	2017-02-24	금	18	0	21	0	2	0			
114	2016S971	☆	-	2017-02-27	월	18	0	21	0	2	0			

연번	사원 번호	부서	성명	근무일자	근무 요일	시작		종료		근무시간		시간급	금액 (단위:원)	근무내역	
						시	분	시	분	시	분				
소계(- 2월)											21	0	21,531	452,151	
115	2016S971	☆	-	2017-03-08	수	18	0	21	0	2	0				
116	2016S971	☆	-	2017-03-14	화	18	0	21	0	2	0				
117	2016S971	☆	-	2017-03-15	수	18	0	20	30	1	30				
118	2016S971	☆	-	2017-03-17	금	18	0	23	0	4	0				
119	2016S971	☆	-	2017-03-22	수	18	0	21	30	2	30				
120	2016S971	☆	-	2017-03-28	화	18	0	21	0	2	0				
소계(- 3월)											14	0	21,531	301,434	
121	2016S971	☆	-	2017-05-17	수	18	0	21	0	2	0				
122	2016S971	☆	-	2017-05-31	수	18	0	21	30	2	30				
소계(- 5월)											4	30	21,531	86,124	
123	2016S971	☆		2017-06-07	수	18	0	21	0	2	0				
소계(- 6월)											2	0	21,531	43,062	
124	2016S971	☆		2017-07-03	월	17	0	21	0	3	0				
125	2016S971	☆		2017-07-11	화	17	0	21	0	3	0				
126	2016S971	☆		2017-07-17	월	17	0	21	0	3	0				
127	2016S971	☆		2017-07-18	화	17	0	19	30	1	30				
128	2016S971	☆		2017-07-19	수	17	0	20	30	2	30				
소계(- 7월)											13	0	21,531	279,903	
129	2016S971	☆		2017-08-01	화	17	0	20	30	2	30				
소계(- 8월)											2	30	21,531	43,062	
합 계														5,563,40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p>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p> <p>○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부칙(2009. 1. 16.) 제2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9학년도 1학기 ●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할 당시 2009년부터 신규채용된 전임교원 2명이 모두 ㄱ 학사학위 소지자였는데도, ㄴ 학사학위 소지자인 P를 채용함으로써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3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p>■ 초빙교원 채용 부당</p> <p>○ 「인천대학교 초빙교원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초빙교원’ 중 ‘객원교수’라 함은 외국어분야와 과학기술분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초빙교원의 공개채용시 총장은 채용인원, 전공 또는 담당분야, 자격기준, 공고기간 및 방법, 전형기준 등의 공개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019-2학기 및 2020-1학기 강사 및 초빙(겸임)교원 신규채용 계획(19.8.13. ◇)” 및 “초빙교원(객원교수) 신규채용 심사기준(19.8.13. ■)”에 따르면 ■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학 또는 교육학 또는 국제개발협력 박사학위 소지자(석사 지원 가능하나 석사의 경우, 교육학 등 동일·유사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 및 실무 경력 3년 이상자)로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9. 8. 21. ■ 초빙교원(객원교수, 임용기간 : '19.9.1.~'20.8.31.) 1명을 채용하면서 초빙교원 자격요건과 달리 ○ 행정학 석사(○ 정치외교학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Q(단독지원)를 합격*시킨 사실이 있음</p> <p>* 위 Q는 '19.8.30. 임용포기서 제출</p>	○ 경징계(2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p>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제출 서류 미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인천대학교 2017~201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등)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는 제출서류의 공증을 위해 학교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 인천대학교는 201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신입학 특별전형”에서 ▲에 지원한 R이 제출한 10-11학년 동안의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은 증빙이 없고, 별도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신입생 특별전형 제출 서류의 공증 여부 미확인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신입학 특별전형”에서 위 R 등 3명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은 증빙이 없고, ‘아포스티유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7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의 서류 접수 확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붙임】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신입학 특별전형 제출 서류 공중여부 미확인 현황

연번	지원자		지원 사항		제출서류 진위 미확인 (영서 확인 스탬프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			합격 여부	등록 여부
	수험번호	성명	학년도	모집구분	지원자 제출서류	영사 확인 (스탬프) 여부	아포스티유 제출 여부		
1	-	R	2017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	없음	미제출	합격	미등록
2	-	-	2018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	없음	미제출	합격	미등록
3	-	-	2019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	없음	미제출	합격	미등록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p>교직원 자녀 입시 지원 자진 배제 신고서 미제출</p> <p>○ 「인천대학교 회피·제척 업무매뉴얼(2017~2018학년도)」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자와 관련 있는 교직원을 평가 및 운영 참여에 배제하고, 회피를 위한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형제, 자녀 및 친인척(4촌 이내) 등이 인천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정해진 자진신고 기간 내에 회피 신청을 위한 “입시 지원 업무 자진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S는 2017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자녀가 ▶에 지원하여 회피 신청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배제 신고 기간('17.12.19.~'17.12.29.) 및 그 이후에도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 미제출 현황”과 같이 위 S 등 8명(9회)은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자녀가 지원하여 입학 업무 지원 회피 신청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8명)</p>

【붙임】

입시 지원업무 자진배제 신고서 미제출 현황

연번	학년도 (시기)	미제출자(교직원)				지원자(교직원 자녀)				
		소속	직위	성명	입학업무 참여(O,X)	수험번호	성명	관계	지원학부(과)	비고
1	2017 (정시)	-	-	S	X	-	-	자녀	▶	합격
2	2017 (정시)	-	-	-	X	-	-	자녀	-	합격
3	2017 (정시)	-	-	-	X	-	-	자녀	-	합격
4	2018 (수시)	-	-	-	X	-	-	자녀	-	불합격
5	2018 (정시)	-	-	-	X	-	-	자녀	-	합격
6	2018 (수시)	-	-	-	X	-	-	자녀	-	불합격
7	2018 (정시,가)	-	-	-	X	-	-	자녀	-	합격
8	2018 (정시,다)	-	-	-	X	-	-	자녀	-	합격
9	2018 (수시)	-	-	-	X	-	-	자녀	-	불합격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p>외부기관 영어시험의 학점 인정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및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제8조에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일정 수준 이상 취득자에게는 교양 영어 과목에 해당하는 ‘ㄷ’ 과목으로 2학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2018학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츈 등 외부기관의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577명에게 ‘ㄷ’에 해당하는 2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 “미인정 외부 영어시험의 학점 부여 현황” 과 같이 2018학년도 부터 2020학년도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츈, 트 등 6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한 1,523명에게 ‘ㄷ’ 과목에 해당하는 2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 보</p> <p>- 외부기관 영어 시험 관련 학점 인정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여 운영하기 바람</p>

【붙임】

미인정 외부 영어시험의 학점 부여 현황

시험명 (만점점수)	국가공인 민간자격 해당여부	인천대학교 자체 학점 부여 기준	이수 과목	부여학점		2018	2019	2020	인원 합계
				학점	성적 (Pass/Fail)	학년도 인원	학년도 인원	학년도 인원	
ㄷ (-점)	해당하지 않음	-점 이상	ㄱ	2학점	P	525	591	227	1,343
ㄷ (-점)	해당하지 않음	-점 이상	ㄱ	2학점	P	1	0	0	1
-	해당하지 않음	-	ㄱ	2학점	P	0	0	0	0
-	해당하지 않음	-	ㄱ	2학점	P	27	51	23	101
-	해당하지 않음	-	ㄱ	2학점	P	-	-	1	1
-	해당하지 않음	-	ㄱ	2학점	P	24	25	28	77
계						577	667	279	1,52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p> <p>○ 「인천대학교 학칙」 제71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성적, 출석성적, 그 밖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9조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된 성적표는 정정할 수가 없으며, 정해진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T는 2017학년도 1학기 '교' 과목에서 당초 "C"학점을 받은 U의 성적을 성적 정정 기간 (2017.6.30.~2017.7.4.)이 지난 2017.7.5.에 "C+"로 정정하는 등 【붙임】 "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T 등 3명은 위 U 등 6명의 성적을 정정 기간이 지나 정정한 사실이 있음</p>	○주의(3명)

【붙임】

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성적 정정 신청자			당초정정 기간	실제 정정일	과목명	대상학생		성적정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학번	성명	당초 성적	정정 성적
1	2017	1	-	-	T	2017.6.30.~ 2017.7.4.	2017.7.5.	표	-	U	C	C+
2	2017	2	-	-	-	2018.1.3.~ 2018.1.5.	2018.1.9.	-	-	-	B+	C+
									-	-	A+	B+
									-	-	C+	A+
3	2018	2	-	-	-	2019.1.3.~ 2019.1.4.	2019.1.7.	-	-	-	F	C+
									-	-	C	C+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p>졸업 종합시험관리위원회 미구성</p> <p>○ 「인천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논문이 부적당한 학과에 대하여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79조에 따르면 졸업종합시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논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인천대학교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별 종합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실시계획, 시험교과목·출제의 범위와 방법·채점방법, 합격자 사정 등에 대해 심의하여 학과별 전공과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2013.1.18.) 이후 2020.9월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대학교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별 종합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붙임】 “졸업 종합시험관리위원회 미구성 및 시험 실시 현황”과 같이 대학별 시험교과목, 출제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실시계획’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072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2,626명에 대해 합격처리한 사실이 있음</p>	○ 기관경고

【붙임】

졸업 종합시험관리위원회 미구성 및 시험실시 현황

연번	대 학 명	학년도	종합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시험실시계획 심의여부	시험시행 인원(명)	합격처리 인원(명)
1	-	2017	미구성	미실시	14	14
		2018	미구성	미실시	6	6
		2019	미구성	미실시	0	0
		2020	미구성	미실시	0	0
2	-	2017	미구성	미실시	42	41
		2018	미구성	미실시	33	33
		2019	미구성	미실시	46	46
		2020	미구성	미실시	2	2
3	-	2017	미구성	미실시	146	129
		2018	미구성	미실시	126	119
		2019	미구성	미실시	122	111
		2020	미구성	미실시	25	21
4	-	2017	미구성	미실시	67	62
		2018	미구성	미실시	54	51
		2019	미구성	미실시	68	66
		2020	미구성	미실시	14	13
5	-	2017	미구성	미실시	303	266
		2018	미구성	미실시	252	232
		2019	미구성	미실시	276	252
		2020	미구성	미실시	6	6
6	-	2017	미구성	미실시	286	196
		2018	미구성	미실시	321	231
		2019	미구성	미실시	329	252
		2020	미구성	미실시	100	69
7	-	2017	미구성	미실시	40	33
		2018	미구성	미실시	51	45
		2019	미구성	미실시	49	39
		2020	미구성	미실시	33	30
8	-	2017	미구성	미실시	75	75
		2018	미구성	미실시	84	84
		2019	미구성	미실시	84	84
		2020	미구성	미실시	18	18
계					3,072	2,62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p>교직 기본이수과목명 변경 운영 부적정</p> <p>○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5-73호)」 제12조에 따르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고시된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나,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총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6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서 표시과목 ‘ㅎ’의 기본이수 과목인 ‘ㄱ’을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천대학교 ▼에 상정 후, ◇로부터 “과목일치 확인 회신” 절차만으로 ‘ㄷ’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목을 개설하는 등 【붙임】 “교원양성기관 기본이수과목 명칭 변경 절차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까지 위 ‘ㄱ’ 등 총 13개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을 총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로부터 과목일치 확인 회신 절차만으로 변경하여 개설한 사실이 있음</p>	○ 기관경고

【붙임】

교원양성기관 기본이수과목 명칭 변경 절차 미준수 현황

학년도	표시과목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명	인천대학교 기본이수과목명
2016 ~ 2020	중	ㄱ	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0년 근거 고시: 제2015-73호<'15.10.01>), 제2016-104호<'17.03.01.>, 제2017-126호<'18.03.01.>, 제2019-182호<'19.05.2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p>교원 복무 미처리 외부강의</p> <p>○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 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하고, 「국가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도,</p> <p>- V는 W에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5. 26.(토) 부터 2019. 6. 15.(토)까지 인천대학교 ◀에 출강하면서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등 【붙임】 “인천대학교 ◀ 출강 교사의 복무 미처리 현황”과 같이 2018~2019년 동안 ○○ 등 3개 교육청 소속 교사 13명은 겸직허가 또는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를 처리하지 않고 외부 기관인 인천대학교 ◀에 출강 등 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p> <p>○ 주의(13명)</p> <p>○ 통보</p>

【붙임】

인천대학교 ◀ 출강 교사의 복무 미처리 현황

연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강일자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료 (원)	복무 처리 여부
	교육청	학교 (설립구분)						
1	○○	-	-	V	2018.5.2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1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5.2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	-	-	-	-	2018.6.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3	-	-	-	-	2018.5.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4	-	-	-	-	2019.4.1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4.27.(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5.2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9.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1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23.(토) (09:00~11:00)	-	100,000	미처리

연 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강일자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료 (원)	복무 처리 여부
	교육청	학교 (설립구분)						
5	-	-	-	-	2018.4.14.(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2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5.1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6	-	-	-	-	2018.4.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5.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5.2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9.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0.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1.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1.10.(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7	-	-	-	-	2019.4.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8	-	-	-	-	2019.4.1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9	-	-	-	-	2018.4.7.(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2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4.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연 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강일자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료 (원)	복무 처리 여부
	교육청	학교 (설립구분)						
					2019.4.20.(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2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10	-	-	-	-	2018.6.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1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11	-	-	-	-	2018.4.7.(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14.(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5.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3.30.(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4.1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12	-	-	-	-	2018.3.3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7.(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4.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5.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5.2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6.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연 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출강일자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료 (원)	복무 처리 여부
	교육청	학교 (설립구분)						
					2018.9.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9.1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9.2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0.6.(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0.13.(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8.11.17.(토) (09:00~11:00)	-	100,000	미처리
					2019.4.20.(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5.1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6.1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9.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9.(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13	-	-	-	-	2019.9.28.(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5.(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0.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2.(토) (09:00~13:00)	-	200,000	미처리
					2019.11.23.(토) (09:00~11:00)	-	100,000	미처리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p>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목의 이수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X는 2017학년도 1학기 '㉸'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 15시간 중 3시간을 출석(1/5)한 학생 Y의 학점을 'B+'로 부여하는 등 【붙임】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위 X 등 교원 2명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2명의 해당과목 학점을 'B+' 및 'C'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2명)</p> <p>○ 통보</p> <p>- Y 등 2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p>

【붙임】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개 설 학 과	직	교수명	교과목명	학 번	학생명	강의 시수	출석 시수	출석 비율	학점	학적 상태
1	2017	1	-	-	X	ㅁ	-	Y	15	3	20.0	B+	제적
2	2017	1	-	-	-	-	-	-	15	9	60.0	C	제적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p>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등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교육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 공문을 통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설치·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인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7. 1. 12. 2017학년도 1학기 ‘쓰’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 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 까지 위 ‘쓰’ 등 총 27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 경고(12명)</p>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학기	강좌명	강사명	정원 (명)	교육시간 (시간 및 요일)	비고
1	2017-1	쓰	-	16	45(10:00~13:00), 화	제물포캠퍼스
2	2017-1	-	-	16	45(18:30~21:30), 화	제물포캠퍼스
3	2017-2	-	-	16	45(14:00~17:00), 목	강화캠퍼스
4	2017-2	-	-	16	45(10:00~13:00), 목	강화캠퍼스
5	2017-2	-	-	16	45(14:00~17:00), 화	강화캠퍼스
6	2017-2	-	-	20	45(19:00~20:30), 수/토	제물포캠퍼스
7	2017-2	-	-	16	45(17:00~20:00), 목	제물포캠퍼스
8	2017-2	-	-	20	45(19:00~22:00), 금	제물포캠퍼스
9	2018-1	-	-	20	45(19:00~22:00), 화	송도캠퍼스
10	2018-1	-	-	16	45(19:00~22:00), 화	제물포캠퍼스
11	2018-1	-	-	16	45(14:00~17:00), 목	제물포캠퍼스
12	2018-1	-	-	16	45(19:00~22:00), 수	제물포캠퍼스
13	2018-2	-	-	16	45(13:00~16:00), 월	강화캠퍼스
14	2018-2	-	-	16	45(14:00~17:00), 수	강화캠퍼스
15	2019-1	-	-	16	45(10:00~13:00), 화	강화캠퍼스
16	2019-1	-	-	16	45(14:00~17:00), 수	강화캠퍼스
17	2019-1	-	-	16	45(10:00~13:00), 수	강화캠퍼스
18	2019-1	-	-	16	45(10:00~13:00), 월	강화캠퍼스
19	2019-1	-	-	16	45(18:00~21:00), 월	강화캠퍼스
20	2019-1	-	-	13	45(19:00~22:00), 수	송도캠퍼스
21	2019-1	-	-	15	45(19:00~22:00), 수	송도캠퍼스
22	2019-1	-	-	13	45(19:00~22:00), 수	송도캠퍼스
23	2019-1	-	-	13	45(19:00~22:00), 목	송도캠퍼스
24	2019-1	-	-	13	45(10:00~13:00), 수	송도캠퍼스
25	2019-1	-	-	13	45(10:00~13:00), 목	송도캠퍼스
26	2019-1	-	-	13	45(10:00~13:00), 토	제물포캠퍼스
27	2019-2	-	-	13	45(14:00~17:00), 목	제물포캠퍼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p>교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등 미제출</p> <p>○ 「인천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2016.12.16.~)」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주일 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에게 귀국 보고하여야 하며, 공무외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총장은 교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국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Z는 2017. 1. 5.부터 2017. 1. 11.까지 'ㅈ'목적으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고도 귀국 후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출입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교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등 미제출 현황”과 같이 위 Z 등 교원 106명은 2017. 1.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총 313건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귀국 보고 등 출입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인천대학교는 위 교원들에 대해 국외여행 제한, 신분상 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향후 교원들의 국외여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붙임】

교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등 미제출 현황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	-	-	-	공무외	2020-01-26	2020-02-26	-	-	퇴직
2	-	-	-	공무외	2018-04-22	2018-04-26	-	-	
3	-	-	-	공무외	2018-01-18	2018-02-01	-	-	퇴직
4	-	-	-	공무외	2018-08-07	2018-08-17	-	-	
5				공무외	2019-04-25	2019-04-28	-	-	
6				공무외	2019-12-18	2020-01-08	-	-	
7	-	-	-	공무외	2017-03-26	2017-03-28	-	-	
8				공무외	2017-12-13	2017-12-15	-	-	
9	-	-	-	공무외	2018-07-02	2018-07-29	-	-	퇴직
10				공무외	2019-01-02	2019-01-27	-	-	
11	-	-	-	공무외	2018-01-02	2018-01-05	-	-	
12				공무외	2019-07-22	2019-07-26	-	-	
13	-	-	-	공무외	2019-08-11	2019-08-22	-	-	
14				공 무	2019-08-26	2019-08-30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5	-	-	-	공무외	2018-11-02	2018-11-11	-	-	퇴직
16				공무외	2019-04-01	2019-04-07	-	-	
17	-	-	-	공무외	2017-01-22	2017-01-25	-	-	
18				공무외	2017-02-12	2017-02-19	-	-	
19				공무외	2017-10-28	2017-10-31	-	-	
20				공무외	2018-02-22	2018-02-24	-	-	
21				공무외	2018-04-06	2018-04-15	-	-	
22				공무외	2018-04-26	2018-05-06	-	-	
23				공무외	2018-10-26	2018-10-30	-	-	
24				공 무	2019-02-23	2019-02-27	-	-	
25	-	-	-	공무외	2020-01-24	2020-01-27	-	-	
26				공무외	2020-02-12	2020-02-16	-	-	
27	-	-	-	공무외	2017-01-29	2017-02-02	-	-	
28				공무외	2017-07-09	2017-07-12	-	-	
29				공무외	2017-07-17	2017-07-23	-	-	
30	-	-	-	공무외	2017-04-07	2017-04-09	-	-	
31				공무외	2019-07-13	2019-07-19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32	-	-	-	공무외	2019-12-16	2019-12-27	-	-	퇴직
33	-	-	-	공무외	2017-07-10	2017-07-18	-	-	
34	-	-	-	공무외	2019-09-04	2019-09-08	-	-	퇴직
35	-	-	-	공무외	2017-02-23	2017-03-03	-	-	퇴직
36	-	-	-	공무외	2018-07-04	2018-07-07	-	-	
37	-	-	-	공무외	2019-02-20	2019-03-08	-	-	퇴직
38	-	-	-	공무외	2019-07-24	2019-07-25	-	-	
39	-	-	-	공무외	2019-01-23	2019-01-27	-	-	퇴직
40	-	-	-	공무외	2019-02-23	2019-02-26	-	-	
41	-	-	-	공무외	2019-11-29	2019-12-13	-	-	
42	-	-	-	공무외	2017-12-27	2018-02-15	-	-	
43	-	-	-	공무외	2018-06-30	2018-08-26	-	-	
44	-	-	-	공무외	2020-01-17	2020-02-29	-	-	
45	-	-	-	공무외	2017-09-08	2017-09-11	-	-	
46	-	-	-	공무외	2017-11-22	2017-11-24	-	-	퇴직
47	-	-	-	공무외	2018-10-10	2018-10-14	-	-	
48	-	-	-	공무외	2018-11-08	2018-11-10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49	-	-	-	공무외	2018-11-14	2018-11-19	-	-	퇴직
50				공 무	2019-06-11	2019-06-13	-	-	
51	-	-	-	공무외	2017-05-18	2017-05-28	-	-	
52				공무외	2017-07-18	2017-07-25	-	-	
53	-	-	-	공무외	2018-02-18	2018-02-21	-	-	퇴직
54	-	-	-	공무외	2017-08-17	2017-09-03	-	-	퇴직
55	-	-	-	공무외	2017-12-21	2018-01-10	-	-	퇴직
56				공무외	2019-02-15	2019-03-01	-	-	
57	-	-	-	공무외	2019-01-15	2019-01-19	-	-	
58	-	-	-	공무외	2018-06-27	2018-07-01	-	-	
59	-	-	-	공무외	2018-09-22	2018-09-29	-	-	퇴직
60				공무외	2019-01-16	2019-01-31	-	-	
61				공무외	2019-02-11	2019-02-15	-	-	
62				공무외	2019-09-11	2019-09-14	-	-	
63				공무외	2020-01-31	2020-02-04	-	-	
64	-	-	-	공무외	2017-10-27	2017-10-28	-	-	퇴직
65				공무외	2018-01-23	2018-01-26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66	-	-	-	공 무	2018-09-10	2018-09-12	-	-	
67				공 무	2018-10-20	2018-10-26	-	-	
68				공무외	2019-01-11	2019-01-14	-	-	퇴직
69				공무외	2019-03-19	2019-03-21	-	-	
70				공무외	2019-04-21	2019-04-23	-	-	
71				공무외	2020-01-05	2020-02-23	-	-	
72	-	-	-	공무외	2017-06-25	2017-07-06	-	-	
73				공무외	2018-06-17	2018-07-10	-	-	퇴직
74				공무외	2018-10-19	2018-10-22	-	-	
75				공무외	2019-02-18	2019-02-22	-	-	
76	-	-	-	공무외	2018-06-29	2018-07-08	-	-	
77	-	-	-	공무외	2017-01-11	2017-01-15	-	-	
78				공무외	2017-03-07	2017-03-10	-	-	
79				공무외	2017-07-23	2017-07-29	-	-	퇴직
80				공무외	2018-04-01	2018-04-04	-	-	
81				공무외	2018-08-15	2018-08-18	-	-	
82	-	-	-	공무외	2017-04-05	2017-04-09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83	-	-	-	공무외	2020-05-19	2020-05-25	-	-	
84	-	-	-	공무외	2018-07-15	2018-08-14	-	-	퇴직
85	-	-	-	공무외	2019-01-21	2019-02-21	-	-	
86	-	-	-	공무외	2018-11-23	2018-11-25	-	-	
87	-	-	-	공무외	2017-07-16	2017-07-20	-	-	
88	-	-	-	공무외	2018-01-30	2018-02-02	-	-	
89	-	-	-	공무외	2018-08-27	2018-08-30	-	-	
90	-	-	-	공무외	2019-08-19	2019-08-23	-	-	
91	-	-	-	공무외	2017-07-19	2017-08-01	-	-	
92	-	-	-	공무외	2017-10-06	2017-10-08	-	-	
93	-	-	-	공무외	2018-02-04	2018-02-07	-	-	
94	-	-	-	공무외	2019-12-19	2019-12-31	-	-	퇴직
95	-	-	-	공무외	2017-04-26	2017-04-29	-	-	
96	-	-	-	공무외	2017-06-04	2017-06-06	-	-	
97	-	-	-	공무외	2017-11-05	2017-11-07	-	-	
98	-	-	-	공무외	2018-05-10	2018-05-12	-	-	
99	-	-	-	공무외	2018-12-14	2018-12-16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00	-	-	-	공무외	2017-07-05	2017-07-08	-	-	
101				공무외	2018-01-06	2018-01-23	-	-	
102				공무외	2018-07-03	2018-07-31	-	-	
103				공무외	2020-02-01	2020-02-08	-	-	
104	-	-	-	공 무	2017-04-12	2017-04-13	-	-	
105				공 무	2017-07-17	2017-07-19	-	-	
106	-	-	-	공무외	2018-01-17	2018-01-20	-	-	퇴직
107				공무외	2018-06-30	2018-07-07	-	-	
108	-	-	-	공무외	2017-01-11	2017-01-20	-	-	퇴직
109				공무외	2017-08-07	2017-08-12	-	-	
110				공무외	2018-02-02	2018-02-12	-	-	
111	-	-	-	공무외	2017-02-22	2017-03-01	-	-	
112				공무외	2017-04-20	2017-04-26	-	-	
113				공무외	2017-06-21	2017-07-09	-	-	
114				공무외	2017-10-02	2017-10-06	-	-	
115				공무외	2017-10-19	2017-10-25	-	-	
116				공무외	2017-11-29	2017-12-05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17	-	-	-	공무외	2018-03-22	2018-03-27	-	-	
118	-	-	-	공무외	2018-06-15	2018-06-21	-	-	
119	-	-	-	공무외	2017-10-26	2017-10-29	-	-	
120				공무외	2018-02-07	2018-02-10	-	-	
121				공무외	2018-07-19	2018-07-22	-	-	
122				공무외	2019-02-07	2019-02-12	-	-	
123	-	-	-	공무외	2018-01-16	2018-01-24	-	-	
124				공무외	2018-07-31	2018-08-09	-	-	
125	-	-	-	공무외	2017-07-15	2017-07-23	-	-	퇴직
126				공무외	2017-08-16	2017-08-19	-	-	
127	-	-	-	공무외	2017-04-08	2017-04-10	-	-	퇴직
128				공무외	2018-06-16	2018-06-24	-	-	
129				공무외	2018-06-29	2018-07-03	-	-	
130	-	-	-	공무외	2017-12-20	2018-02-18	-	-	
131				공무외	2018-05-25	2018-05-28	-	-	
132	-	-	-	공무외	2019-07-20	2019-08-07	-	-	
133	-	-	-	공무외	2017-02-03	2017-02-06	-	-	퇴직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34	-	-	-	공무외	2017-08-25	2017-08-29	-	-	퇴직
135	-	-	-	공무외	2019-06-29	2019-07-09	-	-	
136	-	-	-	공무외	2020-07-07	2020-08-31	-	-	
137	-	-	-	공무외	2017-05-27	2017-06-01	-	-	
138				공무외	2017-06-19	2017-06-24	-	-	
139				공무외	2017-06-27	2017-06-30	-	-	
140				공 무	2017-08-28	2017-08-31	-	-	
141				공무외	2017-11-06	2017-11-10	-	-	
142				공무외	2017-11-29	2017-12-03	-	-	
143				공무외	2017-12-12	2017-12-17	-	-	퇴직
144				공무외	2018-02-22	2018-02-24	-	-	
145				공무외	2018-04-06	2018-04-09	-	-	
146				공무외	2018-04-30	2018-05-06	-	-	
147				공무외	2018-06-05	2018-06-10	-	-	
148				공무외	2018-07-03	2018-07-07	-	-	
149				공무외	2018-08-07	2018-08-10	-	-	
150				공무외	2018-11-05	2018-11-07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51	-	-	-	공무외	2018-11-16	2018-11-23	-	-	퇴직
152				공무외	2018-12-11	2018-12-16	-	-	
153				공무외	2019-02-11	2019-02-16	-	-	
154				공무외	2019-03-09	2019-03-14	-	-	
155				공무외	2019-05-17	2019-05-20	-	-	
156				공무외	2019-06-15	2019-07-01	-	-	
157				공무외	2019-08-22	2019-08-26	-	-	
158				공무외	2019-09-15	2019-09-23	-	-	
159				공무외	2019-10-03	2019-10-08	-	-	
160				공무외	2019-10-12	2019-10-18	-	-	
161				공무외	2019-11-11	2019-11-15	-	-	
162				공무외	2019-11-27	2019-11-30	-	-	
163				공무외	2019-12-04	2019-12-09	-	-	
164				공무외	2019-12-16	2019-12-22	-	-	
165				공무외	2020-02-03	2020-02-05	-	-	
166	-	-	-	공무외	2017-10-25	2017-10-29	-	-	
167				공무외	2018-06-20	2018-07-11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68	-	-	-	공 무	2019-10-15	2019-10-16	-	-	
169				공무외	2019-11-15	2019-11-18	-	-	
170	-	-	-	공무외	2017-02-16	2017-02-20	-	-	
171				공무외	2018-02-22	2018-02-24	-	-	
172				공무외	2018-05-04	2018-05-07	-	-	
173				공무외	2018-06-06	2018-06-09	-	-	
174				공무외	2018-07-16	2018-07-18	-	-	
175				공무외	2018-11-25	2018-11-26	-	-	
176	-	-	-	공무외	2017-08-15	2017-08-19	-	-	
177	-	-	-	공무외	2019-10-10	2019-10-12	-	-	퇴직
178				공무외	2020-02-16	2020-02-19	-	-	
179	-	-	-	공무외	2018-01-15	2018-01-18	-	-	
180				공무외	2018-08-20	2018-08-30	-	-	
181				공무외	2018-09-27	2018-09-30	-	-	퇴직
182				공무외	2019-01-17	2019-01-30	-	-	
183				공무외	2019-07-12	2019-07-20	-	-	
184				공무외	2020-01-06	2020-01-15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185	-	-	-	공무외	2017-07-17	2017-08-01	-	-	
186				공무외	2017-10-22	2017-10-28	-	-	
187				공무외	2019-07-25	2019-07-30	-	-	
188	-	-	-	공무외	2018-02-05	2018-02-09	-	-	
189				공무외	2018-04-07	2018-04-14	-	-	
190				공무외	2019-02-10	2019-02-16	-	-	
191				공무외	2019-08-26	2019-08-30	-	-	
192	-	-	-	공무외	2017-01-12	2017-01-17	-	-	퇴직
193				공무외	2017-02-09	2017-02-13	-	-	
194				공무외	2017-05-24	2017-05-27	-	-	
195				공무외	2017-07-13	2017-07-25	-	-	
196	-	-	-	공무외	2019-12-19	2019-12-21	-	-	
197	-	-	-	공무외	2018-07-11	2018-07-28	-	-	
198	-	-	-	공무외	2017-02-10	2017-02-20	-	-	퇴직
199				공 무	2018-04-11	2018-04-14	-	-	퇴직
200	-	-	-	공 무	2018-01-16	2018-01-24	-	-	
201				공무외	2018-01-24	2018-01-28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02	-	-	-	공무외	2018-08-29	2018-09-09	-	-	
203	-	-	-	공 무	2017-06-27	2017-06-30	-	-	퇴직
204	-	-	-	공 무	2017-06-27	2017-06-30	-	-	퇴직
205	-	-	-	공무외	2018-06-01	2018-06-03	-	-	퇴직
206				공 무	2018-08-22	2018-08-25	-	-	
207				공 무	2018-09-06	2018-09-08	-	-	
208				공 무	2018-10-12	2018-10-15	-	-	
209				공무외	2018-11-30	2018-12-02	-	-	
210	-	-	-	공무외	2018-07-04	2018-08-31	-	-	
211	-	-	-	공무외	2017-07-18	2017-07-23	-	-	
212				공 무	2018-09-27	2018-09-30	-	-	
213				공 무	2018-11-28	2018-12-01	-	-	
214				공 무	2018-12-12	2018-12-15	-	-	
215				공 무	2019-01-08	2019-01-13	-	-	
216				공 무	2019-01-20	2019-01-25	-	-	
217				공 무	2019-03-20	2019-03-23	-	-	
218	-	-	-	공무외	2018-01-31	2018-02-07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19	-	-	-	공무외	2017-08-16	2017-09-02	-	-	퇴직
220				공무외	2018-01-16	2018-01-24	-	-	
221	-	-	-	공무외	2018-03-01	2018-03-03	-	-	퇴직
222	-	-	-	공무외	2018-02-06	2018-02-12	-	-	
223				공무외	2018-08-21	2018-08-26	-	-	
224	-	-	-	공무외	2017-04-12	2017-04-15	-	-	
225				공무외	2017-06-19	2017-06-27	-	-	
226				공무외	2018-06-24	2018-07-11	-	-	
227				공무외	2019-01-20	2019-01-25	-	-	
228				공무외	2019-02-18	2019-02-22	-	-	
229				공 무	2019-02-23	2019-02-27	-	-	
230	-	-	-	공무외	2017-02-06	2017-02-08	-	-	
231	-	-	-	공무외	2017-07-21	2017-07-31	-	-	
232				공무외	2017-10-02	2017-10-05	-	-	
233				공무외	2018-02-18	2018-02-28	-	-	
234				공무외	2018-07-01	2018-07-15	-	-	
235	-	-	-	공 무	2017-10-25	2017-10-29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36	-	-	-	공무외	2017-11-09	2017-11-12	-	-	퇴직
237				공무외	2018-02-22	2018-02-25	-	-	
238	-	-	-	공무외	2017-08-17	2017-08-23	-	-	
239	-	-	-	공무외	2018-08-08	2018-08-10	-	-	
240	-	-	-	공무외	2019-06-19	2019-07-05	-	-	
241	-	-	-	공무외	2018-09-25	2018-09-29	-	-	퇴직
242	-	-	-	공무외	2017-10-29	2017-10-31	-	-	
243				공 무	2019-07-25	2019-07-27	-	-	
244				공 무	2019-10-19	2019-10-25	-	-	
245	-	-	-	공무외	2017-06-16	2017-06-20	-	-	
246				공 무	2017-11-05	2017-11-06	-	-	
247				공 무	2017-12-11	2017-12-14	-	-	
248				공무외	2018-03-29	2018-04-02	-	-	
249				공무외	2019-05-18	2019-05-21	-	-	
250	-	-	-	공무외	2017-12-29	2018-01-27	-	-	퇴직
251	-	-	-	공무외	2017-02-12	2017-02-19	-	-	퇴직
252				공무외	2017-03-06	2017-03-11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53	-	-	-	공 무	2017-04-22	2017-04-27	-	-	퇴직
254				공무외	2017-05-22	2017-05-23	-	-	
255				공 무	2017-05-24	2017-05-28	-	-	
256				공무외	2017-06-19	2017-06-20	-	-	
257				공무외	2017-08-05	2017-08-09	-	-	
258				공무외	2017-08-26	2017-09-03	-	-	
259				공무외	2018-02-22	2018-02-24	-	-	
260				공무외	2018-03-05	2018-03-09	-	-	
261				공무외	2018-04-09	2018-04-13	-	-	
262				공무외	2018-08-03	2018-08-11	-	-	
263				공무외	2018-08-25	2018-09-01	-	-	
264				공무외	2018-10-01	2018-10-04	-	-	
265				공무외	2018-12-01	2018-12-06	-	-	
266				공무외	2018-12-16	2018-12-19	-	-	
267				공무외	2019-02-16	2019-02-23	-	-	
268				공무외	2019-03-04	2019-03-08	-	-	
269				공무외	2019-04-04	2019-04-07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70	-	-	-	공무외	2019-05-01	2019-05-04	-	-	퇴직
271				공무외	2019-06-23	2019-06-27	-	-	
272				공무외	2019-07-26	2019-07-31	-	-	
273	-	-	-	공무외	2017-01-16	2017-01-18	-	-	퇴직
274				공무외	2017-07-12	2017-07-14	-	-	
275				공무외	2017-11-07	2017-11-14	-	-	
276				공무외	2017-12-24	2018-01-09	-	-	
277	-	-	-	공무외	2018-02-22	2018-02-24	-	-	
278				공무외	2018-06-22	2018-06-24	-	-	
279				공무외	2018-12-23	2018-12-27	-	-	
280				공 무	2019-02-23	2019-02-27	-	-	
281	-	-	-	공무외	2018-07-05	2018-07-13	-	-	
282				공무외	2018-07-18	2018-07-20	-	-	
283	-	-	-	공무외	2017-08-08	2017-08-12	-	-	
284	-	-	-	공무외	2017-06-29	2017-08-20	-	-	퇴직
285	-	-	Z	공무외	2017-01-05	2017-01-11	^^	-	
286				공무외	2017-06-25	2017-06-29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287	-	-	-	공무외	2017-12-29	2018-01-01	-	-	
288	-	-	-	공무외	2017-06-18	2017-06-21	-	-	
289				공무외	2017-08-08	2017-08-13	-	-	
290				공무외	2017-12-09	2017-12-15	-	-	퇴직
291				공무외	2018-01-17	2018-01-20	-	-	
292				공무외	2018-04-09	2018-04-14	-	-	
293				공무외	2018-04-22	2018-04-25	-	-	
294	-	-	-	공 무	2018-09-07	2018-09-09	-	-	퇴직
295				공무외	2019-04-26	2019-05-04	-	-	
296	-	-	-	공무외	2018-02-05	2018-02-13	-	-	
297	-	-	-	공무외	2020-01-07	2020-01-15	-	-	
298	-	-	-	공무외	2020-02-10	2020-02-29	-	-	
299	-	-	-	공무외	2017-11-21	2017-11-27	-	-	
300				공무외	2018-02-21	2018-03-03	-	-	
301				공무외	2019-02-15	2019-02-18	-	-	
302				공무외	2019-08-26	2019-08-30	-	-	
303	-	-	-	공무외	2017-06-22	2017-06-26	-	-	

연번	학 과	직급	성 명	구 분	출발일	도착일	출장목적	출장지	비고
304	-	-	-	공무외	2017-07-09	2017-07-17	-	-	
305	-	-	-	공무외	2017-07-23	2017-07-28	-	-	
306				공무외	2017-12-17	2017-12-22	-	-	
307				공무외	2018-01-14	2018-01-18	-	-	
308				공무외	2018-01-21	2018-01-23	-	-	
309				공무외	2018-07-18	2018-07-20	-	-	
310				공무외	2019-01-25	2019-01-30	-	-	
311	-	-	-	공무외	2019-07-16	2019-07-25	-	-	
312	-	-	-	공무외	2018-11-30	2018-12-02	-	-	
313				공무외	2018-12-24	2019-01-10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p>◆ 교직원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3조,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총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장은 ◆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있으며,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I.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6. 11. AA가 2017학년도 1학기 특별 전형 신입생 입시를 관리(2016. 11. 2, 1일) 한다는 사유로 입시관리위원 수당 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 교직원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6. 11.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AA 등 소관사무를 수행한 ◆ 교직원 73명에게 관리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34,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주의</p> <p>○ 개선</p> <p>- 향후 소관사무 수당 지급을 중단 하고 경상적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적정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운영 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기재부·교육부 예산 집행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재부)」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지출할 수 없음 	

【붙임】

◆ 교직원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

(금액 : 원)

연번	지급부서	건 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 속	직	성 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1	◆	-	-	-	AA	입시관리위원	2016-11-02	2016-11-02	100,000
2	-	-	-	-	-	-	2016-11-02	2016-11-02	100,000
3	-	-	-	-	-	-	2016-11-02	2016-11-02	100,000
4	-	-	-	-	-	-	2016-11-02	2016-11-02	100,000
5	-	-	-	-	-	-	2016-12-07	2016-12-07	100,000
6	-	-	-	-	-	-	2016-12-07	2016-12-07	100,000
7	-	-	-	-	-	-	2016-12-07	2016-12-07	100,000
8	-	-	-	-	-	-	2016-12-07	2016-12-07	100,000
9	-	-	-	-	-	-	2017-02-01	2017-02-01	100,000
10	-	-	-	-	-	-	2017-02-01	2017-02-01	100,000
11	-	-	-	-	-	-	2017-02-01	2017-02-01	100,000
12	-	-	-	-	-	-	2017-02-08	2017-02-08	100,000
13	-	-	-	-	-	-	2017-02-08	2017-02-08	100,000
14	-	-	-	-	-	-	2017-02-08	2017-02-08	100,000
15	-	-	-	-	-	-	2017-02-08	2017-02-08	100,000
16	-	-	-	-	-	-	2017-04-26	2017-04-26	100,000
17	-	-	-	-	-	-	2017-04-26	2017-04-26	100,000
18	-	-	-	-	-	-	2017-04-26	2017-04-26	100,000
19	-	-	-	-	-	-	2017-06-07	2017-06-07	100,000
20	-	-	-	-	-	-	2017-06-07	2017-06-07	100,000
21	-	-	-	-	-	-	2017-06-07	2017-06-07	100,000
22	-	-	-	-	-	-	2017-06-07	2017-06-07	100,000
23	-	-	-	-	-	-	2017-06-17	2017-06-17	210,000
24	-	-	-	-	-	-	2017-06-17	2017-06-17	250,000
25	-	-	-	-	-	-	2017-06-17	2017-06-17	110,000
26	-	-	-	-	-	-	2017-06-17	2017-06-17	70,000
27	-	-	-	-	-	-	2017-06-17	2017-06-17	110,000
28	-	-	-	-	-	-	2017-06-17	2017-06-17	100,000
29	-	-	-	-	-	-	2017-06-17	2017-06-17	100,000
30	-	-	-	-	-	-	2017-06-17	2017-06-17	70,000
31	-	-	-	-	-	-	2017-06-17	2017-06-17	20,000
32	-	-	-	-	-	-	2017-06-17	2017-06-17	50,000
33	-	-	-	-	-	-	2017-04-01	2017-05-23	100,000
34	-	-	-	-	-	-	2017-04-01	2017-05-23	100,000
35	-	-	-	-	-	-	2017-04-01	2017-05-23	100,000
36	-	-	-	-	-	-	2017-04-01	2017-05-23	100,000
37	-	-	-	-	-	-	2017-04-01	2017-05-23	100,000
38	-	-	-	-	-	-	2017-05-18	2017-05-18	70,000
39	-	-	-	-	-	-	2017-05-18	2017-05-18	7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시작일	종료일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40	-	-	-	-	-	-	2017-06-22	2017-06-22	70,000	
41	-	-	-	-	-	-	2017-06-22	2017-06-22	70,000	
42	-	-	-	-	-	-	2017-05-16	2017-06-20	100,000	
43	-	-	-	-	-	-	2017-05-16	2017-06-20	100,000	
44	-	-	-	-	-	-	2017-05-16	2017-06-20	100,000	
45	-	-	-	-	-	-	2017-05-16	2017-06-20	100,000	
46	-	-	-	-	-	-	2017-05-16	2017-06-20	100,000	
47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48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49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50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51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52	-	-	-	-	-	-	2017-10-20	2017-11-21	100,000	
53	-	-	-	-	-	-	2017-11-17	2017-11-17	70,000	
54	-	-	-	-	-	-	2017-11-17	2017-11-17	70,000	
55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56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57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58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59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60	-	-	-	-	-	-	2017-11-24	2017-12-22	100,000	
61	-	-	-	-	-	-	2017-12-20	2017-12-20	70,000	
62	-	-	-	-	-	-	2017-12-20	2017-12-20	70,000	
63	-	-	-	-	-	-	2017-06-07	2017-06-07	40,000	
64	-	-	-	-	-	-	2017-06-07	2017-06-07	40,000	
65	-	-	-	-	-	-	2017-06-07	2017-06-07	40,000	
66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67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68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69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70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71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72	-	-	-	-	-	-	2017-06-07	2017-06-07	70,000	
73	-	-	-	-	-	-	2017-12-13	2017-12-13	20,000	
74	-	-	-	-	-	-	2017-11-27	2017-12-20	100,000	

연번	지급부서	건 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 속	직	성 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75	-	-	-	-	-	-	2017-11-27	2017-12-20	100,000
76	-	-	-	-	-	-	2017-11-01	2017-11-01	100,000
77	-	-	-	-	-	-	2017-11-01	2017-11-01	100,000
78	-	-	-	-	-	-	2017-11-01	2017-11-01	100,000
79	-	-	-	-	-	-	2017-11-01	2017-11-01	100,000
80	-	-	-	-	-	-	2017-12-06	2017-12-06	100,000
81	-	-	-	-	-	-	2017-12-06	2017-12-06	100,000
82	-	-	-	-	-	-	2017-12-06	2017-12-06	100,000
83	-	-	-	-	-	-	2017-12-06	2017-12-06	100,000
84	-	-	-	-	-	-	2018-02-01	2018-02-01	100,000
85	-	-	-	-	-	-	2018-02-01	2018-02-01	100,000
86	-	-	-	-	-	-	2018-02-01	2018-02-01	100,000
87	-	-	-	-	-	-	2018-02-01	2018-02-01	100,000
88	-	-	-	-	-	-	2018-04-26	2018-04-26	100,000
89	-	-	-	-	-	-	2018-04-26	2018-04-26	100,000
90	-	-	-	-	-	-	2018-04-26	2018-04-26	100,000
91	-	-	-	-	-	-	2018-04-26	2018-04-26	100,000
92	-	-	-	-	-	-	2018-06-07	2018-06-07	100,000
93	-	-	-	-	-	-	2018-06-07	2018-06-07	100,000
94	-	-	-	-	-	-	2018-06-07	2018-06-07	100,000
95	-	-	-	-	-	-	2018-06-07	2018-06-07	100,000
96	-	-	-	-	-	-	2018-12-08	2018-12-08	210,000
97	-	-	-	-	-	-	2018-12-08	2018-12-08	210,000
98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99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100	-	-	-	-	-	-	2018-12-08	2018-12-08	150,000
101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102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103	-	-	-	-	-	-	2018-12-08	2018-12-08	100,000
104	-	-	-	-	-	-	2018-12-08	2018-12-08	120,000
105	-	-	-	-	-	-	2019-01-16	2019-01-16	210,000
106	-	-	-	-	-	-	2019-01-16	2019-01-16	110,000
107	-	-	-	-	-	-	2019-01-16	2019-01-16	20,000
108	-	-	-	-	-	-	2019-06-15	2019-06-15	210,000
109	-	-	-	-	-	-	2019-06-15	2019-06-15	21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110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111	-	-	-	-	-	-	2019-06-15	2019-06-15	110,000
112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113	-	-	-	-	-	-	2019-06-15	2019-06-15	150,000
114	-	-	-	-	-	-	2019-06-15	2019-06-15	150,000
115	-	-	-	-	-	-	2019-06-15	2019-06-15	100,000
116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117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118	-	-	-	-	-	-	2017-12-09	2017-12-09	170,000
119	-	-	-	-	-	-	2017-12-09	2017-12-09	250,000
120	-	-	-	-	-	-	2017-12-09	2017-12-09	110,000
121	-	-	-	-	-	-	2017-12-09	2017-12-09	110,000
122	-	-	-	-	-	-	2017-12-09	2017-12-09	150,000
123	-	-	-	-	-	-	2017-12-09	2017-12-09	150,000
124	-	-	-	-	-	-	2017-12-09	2017-12-09	100,000
125	-	-	-	-	-	-	2017-12-09	2017-12-09	100,000
126	-	-	-	-	-	-	2017-12-09	2017-12-09	70,000
127	-	-	-	-	-	-	2017-12-09	2017-12-09	20,000
128	-	-	-	-	-	-	2017-12-09	2017-12-09	70,000
129	-	-	-	-	-	-	2017-12-09	2017-12-09	20,000
130	-	-	-	-	-	-	2018-06-16	2018-06-16	170,000
131	-	-	-	-	-	-	2018-06-16	2018-06-16	250,000
132	-	-	-	-	-	-	2018-06-16	2018-06-16	70,000
133	-	-	-	-	-	-	2018-06-16	2018-06-16	70,000
134	-	-	-	-	-	-	2018-06-16	2018-06-16	150,000
135	-	-	-	-	-	-	2018-06-16	2018-06-16	110,000
136	-	-	-	-	-	-	2018-06-16	2018-06-16	110,000
137	-	-	-	-	-	-	2018-06-16	2018-06-16	100,000
138	-	-	-	-	-	-	2018-06-16	2018-06-16	100,000
139	-	-	-	-	-	-	2018-06-16	2018-06-16	120,000
140	-	-	-	-	-	-	2018-06-16	2018-06-16	20,000
141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142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143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144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145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146	-	-	-	-	-	-	2018-04-23	2018-05-24	100,000
147	-	-	-	-	-	-	2018-05-18	2018-05-18	70,000
148	-	-	-	-	-	-	2018-05-18	2018-05-18	70,000
149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0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1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2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3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4	-	-	-	-	-	-	2018-05-28	2018-06-28	100,000
155	-	-	-	-	-	-	2018-06-22	2018-06-22	70,000
156	-	-	-	-	-	-	2018-06-22	2018-06-22	70,000
157	-	-	-	-	-	-	2018-11-14	2018-11-14	70,000
158	-	-	-	-	-	-	2018-11-14	2018-11-14	70,000
159	-	-	-	-	-	-	2018-12-21	2018-12-21	70,000
160	-	-	-	-	-	-	2018-12-21	2018-12-21	70,000
161	-	-	-	-	-	-	2018-12-21	2018-12-21	70,000
162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3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4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5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6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7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8	-	-	-	-	-	-	2018-11-26	2018-12-24	100,000
169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0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1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2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3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4	-	-	-	-	-	-	2018-10-29	2018-11-19	100,000
175	-	-	-	-	-	-	2018-01-30	2018-01-30	160,000
176	-	-	-	-	-	-	2018-01-30	2018-01-30	160,000
177	-	-	-	-	-	-	2018-01-30	2018-01-30	160,000
178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79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180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1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2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3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4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5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6	-	-	-	-	-	-	2018-01-30	2018-01-30	70,000
187	-	-	-	-	-	-	2018-11-26	2018-12-20	70,000
188	-	-	-	-	-	-	2018-11-26	2018-12-20	70,000
189	-	-	-	-	-	-	2018-10-31	2018-10-31	100,000
190	-	-	-	-	-	-	2018-10-31	2018-10-31	100,000
191	-	-	-	-	-	-	2018-10-31	2018-10-31	100,000
192	-	-	-	-	-	-	2018-10-31	2018-10-31	100,000
193	-	-	-	-	-	-	2018-12-05	2018-12-05	100,000
194	-	-	-	-	-	-	2018-12-05	2018-12-05	100,000
195	-	-	-	-	-	-	2018-12-05	2018-12-05	100,000
196	-	-	-	-	-	-	2018-12-05	2018-12-05	100,000
197	-	-	-	-	-	-	2019-01-30	2019-01-30	100,000
198	-	-	-	-	-	-	2019-01-30	2019-01-30	100,000
199	-	-	-	-	-	-	2019-01-30	2019-01-30	100,000
200	-	-	-	-	-	-	2019-01-30	2019-01-30	100,000
201	-	-	-	-	-	-	2019-04-24	2019-04-24	100,000
202	-	-	-	-	-	-	2019-04-24	2019-04-24	100,000
203	-	-	-	-	-	-	2019-04-24	2019-04-24	100,000
204	-	-	-	-	-	-	2019-04-24	2019-04-24	100,000
205	-	-	-	-	-	-	2019-06-05	2019-06-05	100,000
206	-	-	-	-	-	-	2019-06-05	2019-06-05	100,000
207	-	-	-	-	-	-	2019-06-05	2019-06-05	100,000
208	-	-	-	-	-	-	2019-06-05	2019-06-05	100,000
209	-	-	-	-	-	-	2018-12-08	2018-12-08	210,000
210	-	-	-	-	-	-	2018-12-08	2018-12-08	210,000
211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212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213	-	-	-	-	-	-	2018-12-08	2018-12-08	150,000
214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시작일	종료일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215	-	-	-	-	-	-	2018-12-08	2018-12-08	110,000	
216	-	-	-	-	-	-	2018-12-08	2018-12-08	100,000	
217	-	-	-	-	-	-	2018-12-08	2018-12-08	120,000	
218	-	-	-	-	-	-	2019-01-16	2019-01-16	210,000	
219	-	-	-	-	-	-	2019-01-16	2019-01-16	110,000	
220	-	-	-	-	-	-	2019-01-16	2019-01-16	20,000	
221	-	-	-	-	-	-	2019-06-15	2019-06-15	210,000	
222	-	-	-	-	-	-	2019-06-15	2019-06-15	210,000	
223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224	-	-	-	-	-	-	2019-06-15	2019-06-15	110,000	
225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226	-	-	-	-	-	-	2019-06-15	2019-06-15	150,000	
227	-	-	-	-	-	-	2019-06-15	2019-06-15	150,000	
228	-	-	-	-	-	-	2019-06-15	2019-06-15	100,000	
229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230	-	-	-	-	-	-	2019-06-15	2019-06-15	70,000	
231	-	-	-	-	-	-	2019-11-12	2019-11-12	70,000	
232	-	-	-	-	-	-	2019-11-12	2019-11-12	70,000	
233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4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5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6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7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8	-	-	-	-	-	-	2019-04-22	2019-05-23	100,000	
239	-	-	-	-	-	-	2019-06-20	2019-06-20	70,000	
240	-	-	-	-	-	-	2019-06-20	2019-06-20	70,000	
241	-	-	-	-	-	-	2019-06-20	2019-06-20	70,000	
242	-	-	-	-	-	-	2019-12-17	2019-12-17	70,000	
243	-	-	-	-	-	-	2019-12-17	2019-12-17	70,000	
244	-	-	-	-	-	-	2019-05-27	2019-06-27	100,000	
245	-	-	-	-	-	-	2019-05-27	2019-06-27	100,000	
246	-	-	-	-	-	-	2019-05-27	2019-06-27	100,000	
247	-	-	-	-	-	-	2019-05-27	2019-06-27	100,000	
248	-	-	-	-	-	-	2019-05-27	2019-06-27	100,000	
249	-	-	-	-	-	-	2019-10-21	2019-11-18	10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250	-	-	-	-	-	-	2019-10-21	2019-11-18	100,000
251	-	-	-	-	-	-	2019-10-21	2019-11-18	100,000
252	-	-	-	-	-	-	2019-10-21	2019-11-18	100,000
253	-	-	-	-	-	-	2019-10-21	2019-11-18	100,000
254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55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56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57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58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59	-	-	-	-	-	-	2019-11-25	2019-12-23	100,000
260	-	-	-	-	-	-	2018-11-29	2018-11-29	220,000
261	-	-	-	-	-	-	2018-11-29	2018-11-29	220,000
262	-	-	-	-	-	-	2018-11-29	2018-11-29	180,000
263	-	-	-	-	-	-	2018-11-29	2018-11-29	60,000
264	-	-	-	-	-	-	2018-11-29	2018-11-29	120,000
265	-	-	-	-	-	-	2018-11-29	2018-11-29	140,000
266	-	-	-	-	-	-	2018-11-29	2018-11-29	140,000
267	-	-	-	-	-	-	2018-11-29	2018-11-29	140,000
268	-	-	-	-	-	-	2018-11-29	2018-11-29	140,000
269	-	-	-	-	-	-	2018-11-29	2018-11-29	140,000
270	-	-	-	-	-	-	2019-06-17	2019-06-17	110,000
271	-	-	-	-	-	-	2019-06-17	2019-06-17	110,000
272	-	-	-	-	-	-	2019-06-17	2019-06-17	110,000
273	-	-	-	-	-	-	2019-06-17	2019-06-17	60,000
274	-	-	-	-	-	-	2019-06-17	2019-06-17	70,000
275	-	-	-	-	-	-	2019-06-17	2019-06-17	70,000
276	-	-	-	-	-	-	2019-06-17	2019-06-17	70,000
277	-	-	-	-	-	-	2019-11-30	2019-12-20	100,000
278	-	-	-	-	-	-	2019-11-30	2019-12-20	100,000
279	-	-	-	-	-	-	2019-10-30	2019-10-30	100,000
280	-	-	-	-	-	-	2019-10-30	2019-10-30	100,000
281	-	-	-	-	-	-	2019-10-30	2019-10-30	100,000
282	-	-	-	-	-	-	2019-10-30	2019-10-30	100,000
283	-	-	-	-	-	-	2019-12-04	2019-12-04	100,000
284	-	-	-	-	-	-	2019-12-04	2019-12-04	100,000

연번	지급부서	건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285	-	-	-	-	-	-	2019-12-04	2019-12-04	100,000
286	-	-	-	-	-	-	2019-12-04	2019-12-04	100,000
287	-	-	-	-	-	-	2020-01-29	2020-01-29	100,000
288	-	-	-	-	-	-	2020-01-29	2020-01-29	100,000
289	-	-	-	-	-	-	2020-01-29	2020-01-29	100,000
290	-	-	-	-	-	-	2020-04-22	2020-04-22	100,000
291	-	-	-	-	-	-	2020-04-22	2020-04-22	100,000
292	-	-	-	-	-	-	2020-04-22	2020-04-22	100,000
293	-	-	-	-	-	-	2020-04-22	2020-04-22	100,000
294	-	-	-	-	-	-	2020-06-03	2020-06-03	100,000
295	-	-	-	-	-	-	2020-06-03	2020-06-03	100,000
296	-	-	-	-	-	-	2020-06-03	2020-06-03	100,000
297	-	-	-	-	-	-	2020-06-03	2020-06-03	100,000
298	-	-	-	-	-	-	2019-12-07	2019-12-07	210,000
299	-	-	-	-	-	-	2019-12-07	2019-12-07	210,000
300	-	-	-	-	-	-	2019-12-07	2019-12-07	110,000
301	-	-	-	-	-	-	2019-12-07	2019-12-07	70,000
302	-	-	-	-	-	-	2019-12-07	2019-12-07	150,000
303	-	-	-	-	-	-	2019-12-07	2019-12-07	110,000
304	-	-	-	-	-	-	2019-12-07	2019-12-07	150,000
305	-	-	-	-	-	-	2019-12-07	2019-12-07	150,000
306	-	-	-	-	-	-	2019-12-07	2019-12-07	100,000
307	-	-	-	-	-	-	2019-12-07	2019-12-07	120,000
308	-	-	-	-	-	-	2019-12-07	2019-12-07	120,000
309	-	-	-	-	-	-	2020-06-27	2020-06-27	110,000
310	-	-	-	-	-	-	2020-06-27	2020-06-27	110,000
311	-	-	-	-	-	-	2020-06-27	2020-06-27	110,000
312	-	-	-	-	-	-	2020-06-27	2020-06-27	110,000
313	-	-	-	-	-	-	2020-06-27	2020-06-27	100,000
314	-	-	-	-	-	-	2020-06-27	2020-06-27	120,000
315	-	-	-	-	-	-	2020-05-29	2020-05-29	70,000
316	-	-	-	-	-	-	2020-05-04	2020-06-04	100,000
317	-	-	-	-	-	-	2020-05-04	2020-06-04	100,000
318	-	-	-	-	-	-	2020-05-04	2020-06-04	100,000
319	-	-	-	-	-	-	2020-05-04	2020-06-04	100,000

연번	지급부서	권명	지급 대상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지급 사유	시작일	종료일	
320	-	-	-	-	-	-	2020-06-08	2020-07-16	100,000
321	-	-	-	-	-	-	2020-06-08	2020-07-16	100,000
322	-	-	-	-	-	-	2020-06-08	2020-07-16	100,000
323	-	-	-	-	-	-	2019-12-05	2019-12-05	210,000
324	-	-	-	-	-	-	2019-12-05	2019-12-05	210,000
325	-	-	-	-	-	-	2019-12-05	2019-12-05	210,000
326	-	-	-	-	-	-	2019-12-05	2019-12-05	120,000
327	-	-	-	-	-	-	2019-12-05	2019-12-05	120,000
328	-	-	-	-	-	-	2019-12-05	2019-12-05	70,000
329	-	-	-	-	-	-	2019-12-05	2019-12-05	70,000
330	-	-	-	-	-	-	2019-12-05	2019-12-05	70,000
331	-	-	-	-	-	-	2019-12-05	2019-12-05	70,000
332	-	-	-	-	-	-	2019-12-05	2019-12-05	70,000
계					73명				34,45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p>제적학생 등록금 미반환</p> <p>○ 「인천대학교 학칙」 제84조 및 제89조에 따르면 학생은 등록시에 정해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반환사유 발생일</th> <th style="width: 50%;">반환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td> <td>등록금 전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td> <td>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 <td>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td> <td>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td> <td>반환하지 않음</td> </tr> </tbody> </table> <p>- 인천대학교는 2017. 4. 27. AB가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되었음에도 기 납부한 등록금 중 1,745,000원(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붙임】 “제적 학생 등록금 미반환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7명이 미복학 등 사유로 제적되었음에도 기 납부한 등록금 합계 12,241,25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같은 기간 내 반환 대상자 25명(42,487천원) 중 18명(30,246천원)에게는 학생의 반환 청구에 따라 기 반환</p>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p>○ 시정</p> <p>- 제적된 학생들이 기 납부한 등록금 합계 12,241,250원을 AB 등 7명에게 반환하기 바람</p> <p>○ 통보</p> <p>- 제적된 학생들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p>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붙임】

제적 학생 등록금 미반환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 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 사유 및 미반환 금액				비고
	학과	학 번	성 명	납부일	납부금액	학적변동	제적일	사유	금 액	산정근거	
1	-	-	AB	2015.02.26.	2,094,000	2015.03.31.	2017.04.27.	미복학	1,745,000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	-	-	2011.02.09.	2,844,000	2011.03.21.	2017.04.27.	미복학	2,370,000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	-	-	2015.02.24.	2,094,000	2015.02.26.	2019.10.08.	미복학	2,094,000	등록금 전액	
4	-	-	-	2015.08.25.	2,094,000	2015.08.25.	2019.10.08.	미복학	2,094,000	등록금 전액	
5	-	-	-	2019.02.22.	1,613,000	2019.02.27.	2020.04.24.	미복학	1,613,000	등록금 전액	
6	-	-	-	2018.03.23.	2,058,000	2018.03.29.	2020.04.24.	미복학	1,715,000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7	-	-	-	2018.02.19.	1,220,500	2018.05.08.	2020.04.24.	미복학	610,250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합 계					14,017,500				12,241,25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p>교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정관」 제32조 제3항 및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교(직)원의 임용·정년·보수·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같은 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조교의 임용, 정원,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18.8.23. 제정)」 제3조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상여수당(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교육 및 연구지원 수당(학사 지도수당, 연구지원수당), 보직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 규정(18.6.11. 제정)」 제9조에 따르면 직원에게는 봉급 외 수당(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년 기준 부채가 155,092백만원(2019년 기준 69,455백만원)에 달해 경상비 20% 절감 등 긴축</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13년 폐지된 (구)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 규정 및 '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15.3.9. 총장 결재)을 근거로 2017년 교원 및 조교 총 597명에게 정액연구비 합계 5,319,939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교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 결산까지 부채가 155,092백만원에서 69,455백만원에 달해 경상비 20% 절감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없이 '13년 폐지된 (구)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교직원(조교 포함) 총 5,809명(2017~2020년 누계)에게 위 정액연구비 등 6개 수당 합계 22,066,04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교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년도	지급대상 수(명)				지 급 액				지 급 근 거
		교원	조교	직원	계	교원	조교	직원	계	
정액 연구비	2017	497	100		597	5,063,083	256,856		5,319,939	· <교원,조교,직원> (구)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13 페이지) · '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15.3.9. 총장 결재) · <조교> '16년 단체협약, '20년 단체협약
	2018	506	103		609	3,452,118	256,470		3,708,588	
	2019		103		103		250,911		250,911	
	2020		101		101		163,898		163,898	
	소계	1,003	407	0	1,410	8,515,201	928,135	0	9,443,336	
교재 연구비	2017	497	100		597	3,876,974	90,997		3,967,971	· <교원,조교,직원> (구)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13 페이지) · '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15.3.9. 총장 결재) · <조교> '16년 단체협약, '20년 단체협약
	2018	506	103		609	2,647,349	90,861		2,738,210	
	2019		103		103		88,902		88,902	
	2020		100		100		58,065		58,065	
	소계	1,003	406	0	1,409	6,524,323	328,825	0	6,853,148	
학사 지도비	2017	497	100	263	860	531,173	62,319	180,452	4,119,745	· (구)인천대학교 기성회 회계 관리규정(13 페이지) · '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15.3.9. 총장 결재) · <조교> '16년 단체협약, '20년 단체협약 · <직원> '16년 단체협약
	2018		103	257	866		62,226	81,179	686,015	
	2019		103	12	631		60,884	7,910	568,574	
	2020		100	1	616		39,765	140	373,421	
	소계	497	406	533	2,973	531,173	225,194	269,681	5,747,755	
관리수당	2020			1	1			1,000	1,000	· '19년 시설분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자격증 수당	2019			7	7			7,400	7,400	
	2020			7	7			7,241	7,241	
	소계	0	0	14	14	0	0	14,641	14,641	
기타 수당	2019			1	1			3,424	3,424	
	2020			1	1			2,740	2,740	
	소계	0	0	2	2	0	0	6,164	6,164	
합 계		2,503	1,219	550	5,809	15,570,697	1,482,154	291,486	22,066,044	

【참고】

2013~2019년 세입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금 수입(%)	79,738(48%)	72,188(38%)	69,179(34%)	67,288(36%)	65,017(33%)	67,203(30%)	73,885(26%)
교육부 출연금(%)	34,100(21%)	43,800(23%)	45,370(22%)	40,200(22%)	40,200(20%)	86,200(38%)	88,000(30%)
보조금 수입(%)	19,713(12%)	26,634(14%)	28,478(14%)	34,659(19%)	33,611(17%)	49,601(22%)	96,800(34%)
전입 및 기부금(%)	434(0%)	1,277(1%)	1,198(1%)	240(0%)	315(0%)	1,260(1%)	9,124(3%)
기타(%)	31,487(19%)	46,320(24%)	60,192(29%)	43,481(23%)	59,644(30%)	21,063(9%)	21,024(7%)
합계	165,471(100%)	190,219(100%)	204,417(100%)	185,869(100%)	198,787(100%)	225,328(100%)	288,833(100%)

2013~2019년 세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건비(%)	63,474(42%)	66,352(37%)	69,392(35%)	73,135(40%)	75,182(40%)	78,657(36%)	83,070(31%)
관리운영비(%)	7,064(5%)	7,465(4%)	8,576(4%)	7,436(4%)	8,336(4%)	9,286(4%)	8,956(3%)
학사 및 교육운영(%)	17,973(12%)	23,509(13%)	27,464(14%)	33,374(18%)	32,635(17%)	32,967(15%)	35,883(13%)
우수인재 양성(%)	37,862(25%)	37,555(21%)	38,090(19%)	39,433(21%)	39,574(21%)	39,985(18%)	40,774(15%)
재무활동(%)	2,675(2%)	1,540(1%)	2,179(1%)	3,233(2%)	3,795(2%)	29,797(13%)	64,016(24%)
기타(%)	21,119(14%)	43,708(24%)	53,269(27%)	27,223(15%)	29,085(15%)	30,184(14%)	39,121(14%)
합계	150,167(100%)	180,129(100%)	198,971(100%)	183,833(100%)	188,607(100%)	220,876(100%)	271,821(100%)

2013~2019년 순세계잉여금 및 부채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세계잉여금	8,672	4,312	2,654	665	7,483	1,905	8,866
부채 금액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69,455

2013~2019년 부채 상환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채 총 금액(A)	20,000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부채 상환 금액(B)	0	△ 25,000	△ 30,092	△ 26,000	△ 54,000	25,092	60,545
부채 잔액(A-B)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69,45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p>장기근속(퇴직) 교직원 해외연수비 등 집행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6~‘18)”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17.12.29.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9~‘20)”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과 법인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본 기준에 의하되 동 규정·지침·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장기근속직원, 정년(명예) 퇴직 교직원 대상인 해외연수비 등의 집행을 중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인천대학교는 2017년 기준 부채가 155,092백만원 (2019년 기준 69,455백만원)에 달해 경상비 20% 절감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2017. 6. 5. 3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6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연수비로 1인당 4,800천원씩 합계 28,800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 “장기근속(퇴직) 교직원 해외연수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 2. 부터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채가 155,092백만원에서 69,455백만원에 달해 경상비 20% 절감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근속직원, 정년(명예) 퇴직 교직원 총 87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 및 행운의 열쇠 지급비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합계 261,535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장기근속(퇴직) 교직원 해외연수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대상자	집행 대상자 수	1인당 집행금액 (현금으로 환산시)	전체 집행금액 (현금으로 환산시)	집행근거
1	2017.6.5	해외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6명	4,800,000	28,800,000	단체협약서 제84조 내부결제 (해외연수계획)
2	2017.2.27.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2명	998,200	1,996,4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3	2017.8.31.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5명	996,000	4,980,0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4	2018.2.27.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3명	995,000	2,985,0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5	2018.4.16	해외연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명	4,800,000	48,000,000	단체협약서 제84조 내부결제 (해외연수계획)
6	2018.8.28.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6명	994,000	5,964,0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명예퇴직자	1명	994,000	994,000	단체협약서 제41조
7	2019.2.27.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4명	993,000	3,972,0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명예퇴직자	3명	993,000	2,979,000	단체협약서 제41조
8	2019.5.23	해외연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15명	4,800,000	72,000,000	단체협약서 제84조 내부결제 (해외연수계획)
9	2019.8.28.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4명	996,200	3,984,8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명예퇴직자	1명	996,200	996,200	단체협약서 제41조
10	2020.2.26.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2명	988,000	1,976,0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명예퇴직자	4명	988,000	3,952,000	단체협약서 제41조
11	2020.07.10	해외연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15명	4,800,000	72,000,000	단체협약서 제84조 내부결제 (해외연수계획)
12	2020.8.26.	행운의 열쇠	정년퇴직자	3명	992,600	2,977,800	인천대학교 직원 포상 지침
			명예퇴직자	3명	992,600	2,977,800	단체협약서 제41조
합계				87명		261,535,000	

【참고】

2013~2019년 세입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금 수입(%)	79,738(48%)	72,188(38%)	69,179(34%)	67,288(36%)	65,017(33%)	67,203(30%)	73,885(26%)
교육부 출연금(%)	34,100(21%)	43,800(23%)	45,370(22%)	40,200(22%)	40,200(20%)	86,200(38%)	88,000(30%)
보조금 수입(%)	19,713(12%)	26,634(14%)	28,478(14%)	34,659(19%)	33,611(17%)	49,601(22%)	96,800(34%)
전입 및 기부금(%)	434(0%)	1,277(1%)	1,198(1%)	240(0%)	315(0%)	1,260(1%)	9,124(3%)
기타(%)	31,487(19%)	46,320(24%)	60,192(29%)	43,481(23%)	59,644(30%)	21,063(9%)	21,024(7%)
합계	165,471(100%)	190,219(100%)	204,417(100%)	185,869(100%)	198,787(100%)	225,328(100%)	288,833(100%)

2013~2019년 세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건비(%)	63,474(42%)	66,352(37%)	69,392(35%)	73,135(40%)	75,182(40%)	78,657(36%)	83,070(31%)
관리운영비(%)	7,064(5%)	7,465(4%)	8,576(4%)	7,436(4%)	8,336(4%)	9,286(4%)	8,956(3%)
학사 및 교육운영(%)	17,973(12%)	23,509(13%)	27,464(14%)	33,374(18%)	32,635(17%)	32,967(15%)	35,883(13%)
우수인재 양성(%)	37,862(25%)	37,555(21%)	38,090(19%)	39,433(21%)	39,574(21%)	39,985(18%)	40,774(15%)
재무활동(%)	2,675(2%)	1,540(1%)	2,179(1%)	3,233(2%)	3,795(2%)	29,797(13%)	64,016(24%)
기타(%)	21,119(14%)	43,708(24%)	53,269(27%)	27,223(15%)	29,085(15%)	30,184(14%)	39,121(14%)
합계	150,167(100%)	180,129(100%)	198,971(100%)	183,833(100%)	188,607(100%)	220,876(100%)	271,821(100%)

2013~2019년 순세계잉여금 및 부채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세계잉여금	8,672	4,312	2,654	665	7,483	1,905	8,866
부채 금액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69,455

2013~2019년 부채 상환 현황(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채 총 금액(A)	20,000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부채 상환 금액(B)	0	△ 25,000	△ 30,092	△ 26,000	△ 54,000	25,092	60,545
부채 잔액(A-B)	20,000	45,000	75,092	101,092	155,092	130,000	69,45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p>회계 처리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천대학교 법인 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6~’20)”에 따르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원’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재무 회계팀 지출담당자로만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 &는 2016.12.5. 보조금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2019.5.30. 최종 거래 이후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휴면계좌(잔액 0원)로 보유하는 등 【붙임 1】 “대학 명의 휴면계좌 현황”과 같이 2019. 5. 30.부터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는 보조금사업비 관리계좌 등 대학 명의 총 3개 계좌 (잔액 합계 0원)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휴면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인천대학교 ★은 ★ 정규강좌 수강료 및 기 시험응시료 수입 합계 5,822천원을 자체 계좌로 관리 하면서 2020.9.9. ‘지출원’ 회계관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 AC에게 3학기 강좌 수강료 환불금액 합계 133천원을 지출처리하게 하는 등 【붙임 2】 “부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명의 3개 휴면 계좌는 해지(잔고 합계 0원)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관직을 지정 받지 아니한 부서에서 권한없이 수입·지출행위를 하지 않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지출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총 2개 부속기관에서는 정규강좌 수강료 등 합계 697,284천원을 자체 계좌로 관리*하면서 ‘지출원’ 회계관직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 AC 등 3명에게 3학기 강좌 수강료 환불금액 등 총 4건 합계 6,322천원을 지출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음</p> <p>* 수강료 등 환불금액 지출처리 후, ⊙ 계좌로 세입 조치</p>	

【붙임1】

대학 명의 휴면계좌 현황

(단위 : 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최종 거래일	잔액	예금주	용도	편입회계
1	-	-	'16.12.05	'19.05.30	0	인천대학교	국비사업	법인회계
2	-	-	'18.05.09	'19.05.30	0	인천대학교	국비사업	
3	-	-	'18.11.09	'19.05.30	0	인천대학교	국비사업	
합계					0			

【붙임2】

부속기관 지출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예금주 : 인천대학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자채 세입			자채 지출			계좌잔액	용도	관리부서 (지출 처리 담당자)
			세입일	세입내역	세입금액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금액			
1	-	-	'20.09.14	3학기 강좌수강료 및 기 시험응시료	5,822,000	'20.09.09	3학기 강좌 수강료 환불	133,000	0	★ 정규강좌 수강료 및 기 시험응시료 수입관리	★ (AC)
2	-	-	'20.09.11	-	687,850,000	'20.09.02	가을학기 수강료반환	6,000,000	3	-	-
3	-	-	'20.09.01	-	2,548,000	'20.03.18	외국어 강좌 수강료 환불	189,000	441,000	-	-
4	-	-	'20.09.14	-	1,064,000				447,241	-	-
합계					697,284,000		합계	6,322,000	888,24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p>물품 구매 부적정 및 직무관련자 미신고</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7~’20)”에 따르면 물품은 일괄하여 구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되며, PC 구입 등은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각 부서(부속기관)에서 2017년 1년간 합계 346,955천원 상당의 노트북, 복합기 토너 등 전산용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하지 않고 기내과 개별 계약하는 등 【붙임】 “기내 관련 전산용품 구매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각 부서(부속기관)에서 합계 1,295,732천원</p>	<p>○ 기관경고</p> <p>○ 경고(1명)</p> <p>○ 통보</p> <p>- 전산용품 등 물품 구매시 관련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구매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상당의 노트북, 복합기 토너 등 전산용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하지 않고 7년과 개별 계약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AD는 인천대학교와 전산용품 납품(렌탈) 계약 중인 위 7년 배우자가 대표이사이고 친동생이 사내이사로 구성된 가족회사(2명)임에도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기타 관련 전산용품 구매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구분	구매내역					합계
	기자재·비품	임차료	수리비	소모품	기타	
2017	133,131,853	11,200,000	49,447,408	134,838,341	18,337,604	346,955,206
2018	138,944,227	23,909,081	37,238,772	107,040,715	14,525,848	321,658,643
2019	162,116,271	32,944,541	39,523,672	80,707,860	14,559,711	329,852,055
2020	140,651,944	27,109,083	45,050,117	69,235,729	15,219,701	297,266,574
합계	574,844,295	95,162,705	171,259,969	391,822,645	62,642,864	1,295,732,478

<구분조건 : 예산과목>

기자재·비품 : 교육용기자재구입, 비품구입, 연구관리비, 연구활동비(자산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차료 : 리스임차료,임차료

수리비 : 장비관리비

소모품 : 소모품비, 실험실습비, 연구활동비, 일반수용비, 임시경비

기타 : 기타운영비,기타학생경비,업무추진비,인쇄출판비,학생지원비,행사비,홍보비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p>법인회계 결산(부속명세서) 처리 부당</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30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고,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20.5.26.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기타예수금이 0원임에도 결산 장부상 불일치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기타예수금을 325,901,049원으로 기재하는 등 【붙임】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기재 불일치 현황”과 같이 위 기타예수금과 기타유형자산이 합계 110,800,001원임에도 결산 장부상 불일치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맞추기</p>	<p>○ 경고(1명)</p> <p>○ 통보(문책 2명)</p> <p>○ 통보</p> <p>- 결산 불일치가 발생한 부속명세서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위해 1,022,128,651원(불일치 금액 911,328,650원)으로 기재 하고 결산(안)을 보고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그대로 확정받은 사실이 있음</p>	

【붙임】

법인회계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기재 불일치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계정명	결산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기재 금액	정상 기재 금액	불일치 금액
2019	기타예수금	325,901,049	-	325,901,049
2019	기타유형자산	696,227,602	110,800,001	585,427,601
합 계		1,022,128,651	110,800,001	911,328,65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p>가족수당 수령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부칙 제9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규정」 제9조,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규정」 제22조,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제11조,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 신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 AE은 2012. 6. 20.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시부와 시모에 대한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 7월부터 '20. 8월까지 가족수당 3,680,000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현황”과 같이 '12. 7월부터 '20. 8월까지 위 AE 등 교직원 26명은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합계 16,453,32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4명) ○ 주의(1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16,453,32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붙임】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수당지급 대상자	관계	부적정 수령내역		비고
						기간	금액	
1	-	-	AE	-	시부	'12.7.~'17.2. (56개월)	3,680,000	'12.6.20. 세대분리 ('17.3.~'17.8. 육아휴직으로 미수령)
				-	시모	'17.9.~'20.8. (36개월)		
2	-	-	-	-	-	'17.2.~'20.8. (43개월)	1,720,000	'17.1.18. 세대분리
				-	-			
3	-	-	-	-	-	'17.8.~'20.8. (37개월)	1,480,000	'17.7.31. 세대분리
				-	-			
4	-	-	-	-	-	'17.9.~'20.8. (36개월)	720,000	'17.8.21. 세대분리
				-	-			
5	-	-	-	-	-	'17.12.~'20.8. (33개월)	1,320,000	'17.11.9. 세대분리
				-	-			
6	-	-	-	-	-	'18.2.~'20.8. (31개월)	1,240,000	'18.1.24. 세대분리
				-	-			
7	-	-	-	-	-	'18.2.~'20.8. (31개월)	620,000	'18.1.29. 세대분리
				-	-			
8	-	-	-	-	-	'18.3.~'20.8. (30개월)	1,200,000	'18.2.14. 세대분리
				-	-			
9	-	-	-	-	-	'18.8.~'20.8. (25개월)	1,000,000	'18.7.10. 세대분리
				-	-			
10	-	-	-	-	-	'19.3.~'20.8. (18개월)	360,000	'19.2.18. 사망
				-	-			
11	-	-	-	-	-	'19.3.~'20.8. (18개월)	360,000	'19.2.12. 세대분리
				-	-			
12	-	-	-	-	-	'19.5.~'20.8. (16개월)	320,000	'19.4.29. 세대분리
				-	-			
13	-	-	-	-	-	'19.7.~'20.8. (14개월)	280,000	'19.6.17. 세대분리
				-	-			
14	-	-	-	-	-	'19.7.~'20.8. (14개월)	280,000	'19.6.24. 사망
				-	-			
15	-	-	-	-	-	'19.10.~'20.8. (11개월)	220,000	'19.9.16. 세대분리
				-	-			
16	-	-	-	-	-	'19.10.~'20.8. (11개월)	220,000	'19.9.16. 세대분리
				-	-			
17	-	-	-	-	-	'19.11.~'20.8. (10개월)	200,000	'19.10.22. 사망
				-	-			
18	-	-	-	-	-	'19.12.~'20.8. (9개월)	360,000	'19.11.20. 사유 상실
				-	-			
19	-	-	-	-	-	'20.2.~'20.8. (8개월)	280,000	'20.1.14. 사유 상실
				-	-			
20	-	-	-	-	-	'20.4.6.~'20.8. (5개월)	193,320	'19.10.15. 세대분리 ('19.7.~'20.4. 육아휴직으로 미수령)
				-	-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수당지급 대상자	관계	부적정 수령내역		비고
						기간	금액	
21	-	-	-	-	-	'20.4. (1개월) '20.6~'20.8. (3개월)	80,000	'20.4.1.~'20.5.11. 세대분리 '20.5.29 이후 세대분리
22	-	-	-	-	-	'20.5.~'20.8. (4개월)	80,000	'20.4.9. 세대분리
23	-	-	-	-	-	'20.5.~'20.8. (4개월)	80,000	'20.4.13. 세대분리
24	-	-	-	-	-	'20.7.~'20.8. (2개월)	40,000	'20.6.17. 사망
25	-	-	-	-	-	'20.7.~'20.8. (2개월)	40,000	'20.6.6. 사망
26	-	-	-	-	-	'20.7.~'20.8 (2개월)	80,000	'20.6.1 세대분리
계							16,453,32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p>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직장에서부터 받은 학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 AF는 2017년도에 인천대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인천대학교 기금 학자금 2,655,680원을 2017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 받아 소득세 438,190원을 과소 납부하는 등 【붙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AF 등 교직원 45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인천대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학자금 합계 331,965,980원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 받아 소득세 합계 47,115,190원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7명) ○ 주의(38명) ○ 시정(회수) - 연말정산 시 부적정하게 교육비를 공제받은 관련자로부터 합계 47,115,190원을 회수하고, 소득세 재신고 등 관련 조치를 취하기 바람

【붙임】

연말정산 교육비 부적정 공제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공제 연도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금액	교육비 지원금액 (부적정 공제금액)	기 결정세액	정상 결정세액	과소 납부액 (환수 대상금액)	비고
1	AF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950,760	2,655,680	-1,936,950	-1,498,760	438,190	ㄱ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202,000	4,681,800	-2,366,790	-1,594,290	772,500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601,000	2,340,900	-2,648,440	-2,262,180	386,260	
소계						10,753,760	9,678,380	-6,952,180	-5,355,230	1,596,950	
2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7,169,000	6,015,600	-1,506,390	-513,810	992,580	-
소계						7,169,000	6,015,600	-1,506,390	-513,810	992,580	
3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365,000	5,200,000	-3,729,280	-2,871,280	858,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3,267,160	-2,408,830	858,330	
소계						12,145,000	10,402,000	-6,996,440	-5,280,110	1,716,330	
4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2,538,820	-1,680,490	858,330	-
소계						6,265,000	5,202,000	-2,538,820	-1,680,490	858,330	
5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2,185,130	-1,326,800	858,33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6,525,740	-5,667,410	858,330	
소계						12,045,000	10,404,000	-8,710,870	-6,994,210	1,716,660	
6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1,000	-8,857,540	-8,428,370	429,170	-
소계						3,375,000	2,601,000	-8,857,540	-8,428,370	429,170	
7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1,262,590	-404,260	858,330	-
소계						6,265,000	5,202,000	-1,262,590	-404,260	858,330	
8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4,820,000	3,757,000	-247,610	372,280	619,890	-
소계						4,820,000	3,757,000	-247,610	372,280	619,890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공제 연도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금액	교육비 지원금액 (부적정 공제금액)	기 결정세액	정상 결정세액	과소 납부액 (환수 대상금액)	비 고
9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2,115,940	2,974,270	858,330	-
소계						6,265,000	5,202,000	2,115,940	2,974,270	858,330	
10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668,272	2,600,000	-1,676,820	-1,314,650	362,170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80,000	5,652,000	-2,392,160	-1,875,210	516,950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4,544,183	2,826,000	-3,061,830	-2,647,760	414,070	
소계						14,492,455	11,078,000	-7,130,810	-5,837,620	1,293,190	
11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634,000	2,600,000	-1,060,580	-631,580	429,000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140,000	2,826,000	-313,520	152,770	466,290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140,000	2,826,000	-790,660	-324,370	466,290	
소계						9,914,000	8,252,000	-2,164,760	-803,180	1,361,580	
12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765,000	2,600,000	-1,168,320	-751,880	416,440	-
소계						3,765,000	2,600,000	-1,168,320	-751,880	416,440	
13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365,000	5,200,000	-2,200,880	-1,342,880	858,000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2,210,450	-1,352,120	858,330	
소계						12,145,000	10,402,000	-4,411,330	-2,695,000	1,716,330	
14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407,940	450,380	858,320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782,760	75,560	858,320	
소계						12,045,000	10,404,000	-1,190,700	525,940	1,716,640	
15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10,652,409	6,939,000	-1,238,350	-567,170	671,180	-
소계						10,652,409	6,939,000	-1,238,350	-567,170	671,180	
16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86,248	5,202,000	-399,720	-399,720	0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843,570	5,202,000	-498,840	-487,280	11,560	
소계						12,129,818	10,404,000	-898,560	-887,000	11,560	
17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591,090	267,220	858,310	-
소계						6,265,000	5,202,000	-591,090	267,220	858,310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공제 연도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금액	교육비 지원금액 (부적정 공제금액)	기 결정세액	정상 결정세액	과소 납부액 (환수 대상금액)	비고
18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0,000	-428,380	429,600	857,98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362,490	495,820	858,310	
소계						12,045,000	10,402,000	-790,870	925,420	1,716,290	
19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458,000	2,600,000	1,153,050	1,582,050	429,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918,000	5,326,200	96,930	975,750	878,820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959,000	2,663,100	617,700	1,057,100	439,400	
소계						12,335,000	10,589,300	1,867,680	3,614,900	1,747,220	
2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8,879,609	4,511,700	-734,890	-734,890	0	-
소계						8,879,609	4,511,700	-734,890	-734,890	0	
21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7,999,858	5,202,000	-915,710	-147,030	768,68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4,361,370	1,300,500	-1,084,120	-1,084,120	0	
소계						12,361,228	6,502,500	-1,999,830	-1,231,150	768,680	
22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1,000	122,700	551,870	429,170	-
소계						3,375,000	2,601,000	122,700	551,870	429,170	
23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33,900	2,601,000	-300,950	-300,950	0	-
소계						5,733,900	2,601,000	-300,950	-300,950	0	
24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1,930,000	1,300,500	-747,490	-532,910	214,58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1,146,240	-442,140	704,100	
소계						7,710,000	6,502,500	-1,893,730	-975,050	918,680	
25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1,000	-2,205,790	-1,776,630	429,16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1,978,850	-1,120,520	858,330	
소계						9,155,000	7,803,000	-4,184,640	-2,897,150	1,287,490	
26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765,000	5,652,000	-438,360	259,170	697,530	-
소계						6,765,000	5,652,000	-438,360	259,170	697,530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공제 연도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금액	교육비 지원금액 (부적정 공제금액)	기 결정세액	정상 결정세액	과소 납부액 (환수 대상금액)	비고
27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634,000	2,600,000	661,470	1,090,470	429,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202,000	4,941,900	-587,640	344,920	932,560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611,000	2,826,000	1,902,850	2,369,140	466,290	
소계						12,447,000	10,367,900	1,976,680	3,804,530	1,827,850	
28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950,760	2,600,000	-782,940	-353,940	429,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80,000	5,652,000	-1,002,460	-187,050	815,410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601,000	2,601,000	-137,690	291,460	429,150	
소계						11,831,760	10,853,000	-1,923,090	-249,530	1,673,560	
29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7,799,000	3,291,300	-296,740	-296,740	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7,314,000	6,582,600	-397,930	398,660	796,590	
소계						15,113,000	9,873,900	-694,670	101,920	796,590	
30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0,000	-1,132,250	-703,250	429,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6,723,610	-5,865,280	858,330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890,000	2,601,000	1,152,370	1,581,540	429,170	
소계						12,045,000	10,403,000	-6,703,490	-4,986,990	1,716,500	
31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7,169,000	6,015,600	-2,864,900	-1,872,330	992,570	-
소계						7,169,000	6,015,600	-2,864,900	-1,872,330	992,570	
32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1,440,110	-644,040	796,07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306,230	1,164,560	858,330	
소계						12,045,000	10,404,000	-1,133,880	520,520	1,654,400	
33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765,000	5,652,000	-466,330	466,240	932,570	-
소계						6,765,000	5,652,000	-466,330	466,240	932,570	
34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765,000	5,652,000	-1,059,830	-252,150	807,680	-
소계						6,765,000	5,652,000	-1,059,830	-252,150	807,680	
35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365,000	5,200,000	-891,540	-33,540	858,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1,456,120	-597,790	858,330	
소계						12,145,000	10,402,000	-2,347,660	-631,330	1,716,330	

연번	성명	소속	직급	공제 연도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금액	교육비 지원금액 (부적정 공제금액)	기 결정세액	정상 결정세액	과소 납부액 (환수 대상금액)	비고
36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0,000	-2,849,200	-1,991,200	858,00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3,526,290	-2,667,960	858,330	
소계						12,045,000	10,402,000	-6,375,490	-4,659,160	1,716,330	
37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8,891,000	7,565,400	-1,426,780	-178,490	1,248,290	-
소계						8,891,000	7,565,400	-1,426,780	-178,490	1,248,290	
38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8,310,952	6,939,000	-841,340	-597,510	243,83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12,265,183	6,939,000	-1,014,420	-1,014,420	0	
소계						20,576,135	13,878,000	-1,855,760	-1,611,930	243,830	
39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4,312,600	2,826,000	-1,589,540	-1,123,250	466,29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80,000	5,652,000	-2,512,210	-1,579,630	932,580	
소계						10,592,600	8,478,000	-4,101,750	-2,702,880	1,398,870	
4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265,000	5,202,000	-5,486,530	-4,628,200	858,330	-
소계						6,265,000	5,202,000	-5,486,530	-4,628,200	858,330	
41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6,417,000	5,326,200	-1,178,940	-300,120	878,820	-
소계						6,417,000	5,326,200	-1,178,940	-300,120	878,820	
42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0,000	-221,780	207,210	428,990	-
소계						3,375,000	2,600,000	-221,780	207,210	428,990	
43	-	-	-	2017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2,391,388	2,375,000	-335,490	56,370	391,860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850,362	5,202,000	-2,137,730	-1,279,400	858,330	
소계						8,241,750	7,577,000	-2,473,220	-1,223,030	1,250,190	
44	-	-	-	2018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375,000	2,601,000	-2,177,120	-1,747,960	429,160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5,780,000	5,202,000	-419,090	439,220	858,310	
소계						9,155,000	7,803,000	-2,596,210	-1,308,740	1,287,470	
45	-	-	-	2019년 귀속분	본인교육비	3,546,900	2,601,000	-5,296,540	-4,867,380	429,160	-
소계						3,546,900	2,601,000	-5,296,540	-4,867,380	429,160	
합계						414,302,324	331,965,980	-108,333,480	-61,218,290	47,115,19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p>예산변경 절차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 사이에 직무범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 ■는 2019. 4. 2.(화) “그르”의 행사안내 자료 인쇄비 327천원을 집행하면서 ◆로부터 예산을 이체받지 아니한 채 직접 예산을 집행 하는 등 【붙임】 “예산변경 절차 미준수 집행 현황”과 같이 위 인쇄비 등 9건 합계 37,471천원을 집행하면서 ◆ 등 2개 부서로부터 예산을 이체받지 아니한 채 직접 예산을 집행 하고,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주의(6명)</p>

【붙임】

예산 변경 절차 미준수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산집행 내역					예산편성 내역			예산 이체 여부	
	집행 부서	집행 내역	세부내역	집행액	지출일	소관 부서	과목	예산액		
1	■	그리	행사안내자료 인쇄비	327	'19. 4. 2.(화)	◆	-	28,000	X	
2			-	847	'19. 4. 5.(금)		-			
3			-	3,200	'19. 4. 8.(월)		-			
4			-	1,800	'19. 4. 8.(월)		-	11,200	X	
5			-	997	'19. 4. 8.(월)		-			
6			-	1,300	'19. 4. 8.(월) '19. 4. 10.(수)		-			
7			-	600	'19. 4. 8.(월)		-			
8			-	14,000	'19. 4. 12.(금)		-	-	100,000	X
9			-	14,400	'19. 4. 19.(금)		-			
합 계				37,471			139,2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p>징계처분 직원 정근수당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부칙 제9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인천대학교는 2017. 7. 17.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AG에게 2017. 7월 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 : 2017. 1. 1. ~ 2017. 6. 30.) 1,945,8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한 정근수당 합계 1,945,850원을 관련 자료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p>ㄱㄴ 전용차량 배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대상은 이사장·총장·부총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학교 ○는 2016. 3. 24. ●으로부터 2016년 제4차 이사회 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ㄱㄴ에 대한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공문(2016년 제4차 이사회 회의 주요사항 후속 조치 이행(협조))을 받았음에도 2020. 9월 감사일 현재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이에 따라, 2017. 1. 1. 전용차량 배정대상이 아닌 AG에게 전용차량(기사 포함)을 배정하는 등 【붙임】 “ㄱㄴ 전용차량 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월부터 2020.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AG 등 전용차량 배정대상자가 아닌 ㄱㄴ 2명에게 전용차량(기사 포함)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4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정하기 바람

【붙임】

기口 전용차량 배정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자	배정기간	사용일	운행거리	배정차량
1	AG	2017.1.1. ~ 2019.2.4	441일	89,049km	-
2	-	2019.4.16. ~ 2020. 9. 9.	324일	74,452km	-
계			765일	163,501km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p>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6~‘18)”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16.12.27.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9~‘20)”에 따르면 학교 카드(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은 평일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법정공휴일 또는 토·일요일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사전 품의를 하고 일시(휴무일), 장소(원거리) 기재 등 직무관련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되거나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로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을 일상 경비원인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명확히 기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재단법인 인천</p>	<p>○ 경고(3명)</p> <p>○ 주의(1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8,588,1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재단 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H는 2017.6.30.(금) 관할 근무지가 아닌 ㄱㅇ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발전기금 관련 협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51,000원을 집행하면서 출장처리 및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붙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6. 30.부터 2020. 8. 31.까지 위 AH 등 4명은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및 본업 근무지 인근 등에서 업무추진비 총 146건 합계 8,588,100원을 집행하면서 출장처리 및 사전품의를 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에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	-	발전기금 관련 협의	재단법인 인천대 발전기금	-	AH	2017.06.30	금요일	20:07	-	한식	ㄱ로	151,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2	-	-	-	-	-	2017.07.07	금요일	12:14	-	한식	-	30,000	
3	-	-	-	-	-	2017.07.26	수요일	20:43	-	한식	-	89,000	
4	-	-	-	-	-	2017.07.31	월요일	21:37	-	한식	-	54,500	
5	-	-	-	-	-	2017.08.02	수요일	18:50	-	한식	-	40,000	
6	-	-	-	-	-	2017.08.03	목요일	13:09	-	한식	-	79,000	
7	-	-	-	-	-	2017.08.07	월요일	18:55	-	한식	-	60,000	
8	-	-	-	-	-	2017.08.22	화요일	20:31	-	일식/생선 회집	-	70,000	
9	-	-	-	-	-	2017.09.06	수요일	19:31	-	한식	-	55,000	
10	-	-	-	-	-	2017.09.12	화요일	18:23	-	한식	-	162,000	
11	-	-	-	-	-	2017.09.21	목요일	20:55	-	한식	-	90,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2	-	-	-	-	-	2017.09.25	월요일	17:54	-	한식	-	54,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13	-	-	-	-	-	2017.09.28	목요일	20:30	-	한식	-	44,000	
14	-	-	-	-	-	2017.10.11	수요일	18:12	-	한식	-	60,000	
15	-	-	-	-	-	2017.10.13	금요일	20:51	-	한식	-	58,000	
16	-	-	-	-	-	2017.10.16	월요일	20:04	-	한식	-	50,000	
17	-	-	-	-	-	2017.10.27	금요일	20:19	-	일식/생선 회집	-	190,000	
18	-	-	-	-	-	2017.11.01	수요일	20:11	-	한식	-	42,000	
19	-	-	-	-	-	2017.11.02	목요일	20:11	-	한식	-	60,000	
20	-	-	-	-	-	2017.11.03	금요일	20:32	-	한식	-	40,600	
21	-	-	-	-	-	2017.11.13	월요일	20:11	-	한식	-	47,000	
22	-	-	-	-	-	2017.11.13	월요일	20:16	-	한식	-	47,000	
23	-	-	-	-	-	2017.11.17	금요일	19:53	-	한식	-	59,000	
24	-	-	-	-	-	2017.12.06	수요일	20:40	-	일반음식점 기타	-	52,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5	-	-	-	-	-	2017.12.13	수요일	21:49	-	한식	-	68,000	
26	-	-	-	-	-	2017.12.29	금요일	13:13	-	한식	-	92,000	
소계(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H)													
1	-	-	-	-	-	2018.12.31	월요일	19:26	-	한식	-	24,000	
2	-	-	-	-	-	2019.01.03	목요일	13:08	-	한식	-	20,000	
3	-	-	-	-	-	2019.01.04	금요일	12:30	-	백화점	-	33,800	
4	-	-	-	-	-	2019.02.01	금요일	20:12	-	한식	-	133,000	
5	-	-	-	-	-	2019.02.14	목요일	18:25	-	백화점	-	90,000	
6	-	-	-	-	-	2019.02.21	목요일	13:47	-	한식	-	88,000	
7	-	-	-	-	-	2019.03.06	수요일	20:35	-	한식	-	66,000	
8	-	-	-	-	-	2019.03.20	수요일	19:41	-	한식	-	35,000	
9	-	-	-	-	-	2019.03.25	월요일	20:34	-	일식	-	45,000	
10	-	-	-	-	-	2019.03.27	수요일	19:35	-	한식	-	22,000	
11	-	-	-	-	-	2019.04.03	수요일	20:17	-	일식	-	41,000	
12	-	-	-	-	-	2019.04.04	목요일	19:57	-	한식	-	20,000	
13	-	-	-	-	-	2019.04.17	수요일	19:13	-	한식	-	18,000	
14	-	-	-	-	-	2019.04.24	수요일	16:23	-	한식	-	27,000	
15	-	-	-	-	-	2019.05.10	금요일	13:13	-	일식	-	10,000	
16	-	-	-	-	-	2019.06.03	월요일	19:42	-	한식	-	39,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7	-	-	-	-	-	2019.06.03	월요일	20:36	-	한식	-	10,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18	-	-	-	-	-	2019.06.26	수요일	13:53	-	한식	-	43,000	
19	-	-	-	-	-	2019.06.26	수요일	21:05	-	한식	-	10,000	
20	-	-	-	-	-	2019.07.02	화요일	19:18	-	일반대중 음식	-	15,500	
21	-	-	-	-	-	2019.07.04	목요일	18:32	-	한식	-	33,000	
22	-	-	-	-	-	2019.07.04	목요일	20:21	-	한식	-	10,000	
23	-	-	-	-	-	2019.07.09	화요일	13:28	-	한식	-	36,000	
24	-	-	-	-	-	2019.07.09	화요일	18:47	-	부패	-	12,000	
25	-	-	-	-	-	2019.07.24	수요일	19:06	-	한식	-	54,000	
26	-	-	-	-	-	2019.07.24	수요일	19:58	-	한식	-	10,000	
27	-	-	-	-	-	2019.08.02	금요일	19:08	-	부패	-	12,000	
28	-	-	-	-	-	2019.08.07	수요일	18:09	-	부패	-	12,000	
29	-	-	-	-	-	2019.08.07	수요일	21:37	-	한식	-	10,000	
30	-	-	-	-	-	2019.08.14	수요일	17:42	-	부패	-	12,000	
31	-	-	-	-	-	2019.08.21	수요일	12:14	-	한식	-	43,500	
32	-	-	-	-	-	2019.08.21	수요일	18:59	-	부패	-	12,000	
33	-	-	-	-	-	2019.08.23	금요일	14:36	-	일반대중 음식	-	7,000	
34	-	-	-	-	-	2019.08.23	금요일	18:44	-	한식	-	22,000	
35	-	-	-	-	-	2019.08.23	금요일	20:35	-	한식	-	10,000	
36	-	-	-	-	-	2019.09.04	수요일	13:19	-	한식	-	55,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임소명	임종	사용임소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37	-	-	-	-	-	2019.09.06	금요일	19:44	-	한식	-	40,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38	-	-	-	-	-	2019.09.19	목요일	21:34	-	한식	-	10,000	
39	-	-	-	-	-	2019.09.23	월요일	18:54	-	부페	-	12,000	
40	-	-	-	-	-	2019.10.10	목요일	18:49	-	부페	-	12,000	
41	-	-	-	-	-	2019.10.10	목요일	21:12	-	한식	-	10,000	
42	-	-	-	-	-	2019.10.22	화요일	18:42	-	부페	-	12,000	
43	-	-	-	-	-	2019.10.22	화요일	20:54	-	한식	-	10,000	
44	-	-	-	-	-	2019.10.24	목요일	12:44	-	종합병원	-	8,500	
45	-	-	-	-	-	2019.10.28	월요일	12:56	-	한식	-	57,000	
46	-	-	-	-	-	2019.10.30	수요일	11:40	-	한식	-	30,000	
47	-	-	-	-	-	2019.11.06	수요일	18:52	-	한식	-	24,000	
48	-	-	-	-	-	2019.11.06	수요일	21:20	-	한식	-	10,000	
49	-	-	-	-	-	2019.11.12	화요일	17:23	-	부페	-	12,000	
50	-	-	-	-	-	2019.11.12	화요일	20:28	-	커피전문점	-	11,000	
소계(-)												1,399,300	
1	-	-	-	-	-	2018.12.19	수요일	09:00	-	특급호텔	-	75,000	
2	-	-	-	-	-	2018.12.19	수요일	09:32	-	커피전문점	-	6,000	
3	-	-	-	-	-	2019.07.02	화요일	19:26	-	페스트푸드	-	146,500	
4	-	-	-	-	-	2019.07.05	금요일	20:30	-	한식	-	491,000	
5	-	-	-	-	-	2019.12.04	수요일	21:43	-	한식	-	207,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6	-	-	-	-	-	2020.01.20	월요일	14:54	-	특급호텔	-	22,000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7	-	-	-	-	-	2020.02.21	금요일	12:17	-	한식	-	133,000		
8	-	-	-	-	-	2020.03.05	목요일	18:28	-	식품잡화	-	24,800		
9	-	-	-	-	-	2020.03.05	목요일	18:30	-	식품잡화	-	7,200		
10	-	-	-	-	-	2020.03.09	월요일	21:38	-	일반대중음식	-	14,800		
11	-	-	-	-	-	2020.03.18	수요일	18:05	-	일식	-	136,000		
12	-	-	-	-	-	2020.06.25	목요일	19:41	-	한식	-	39,000		
13	-	-	-	-	-	2020.06.26	금요일	20:04	-	중식	-	188,000		
14	-	-	-	-	-	2020.07.04	토요일	16:16	-	용역서비스	-	9,000		
15	-	-	-	-	-	2020.07.22	수요일	13:07	-	일식	-	67,000		
16	-	-	-	-	-	2020.07.22	수요일	14:33	-	할인점/ 슈퍼마켓	-	9,900		
소계(-)												1,576,200		
1	-	-	-	-	-	2018.10.24.	수요일	12:22	-	일반음식점 기타	-	45,000		본업 근무지 인근, 사용-용도 불명확
2	-	-	-	-	-	2018.11.8.	목요일	12:48	-	양식	-	93,600		
3	-	-	-	-	-	2018.11.30.	금요일	13:40	-	한식	-	28,800		
4	-	-	-	-	-	2018.12.6.	목요일	13:25	-	한식	-	24,000		
소계(-)												191,400		
1	-	-	-	-	-	2019.02.18.	월요일	17:58	-	일반대중음식	-	250,000	본업 근무지 인근, 사용-용도 불명확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	-	-	-	-	-	2019.02.20.	수요일	20:13	-	특급호텔	-	249,000	본업 근무지 인근, 사용용도 불명확
3	-	-	-	-	-	2019.03.07.	목요일	12:57	-	일반대중음식	-	11,900	
4	-	-	-	-	-	2019.03.07.	목요일	12:57	-	일반대중음식	-	10,000	
5	-	-	-	-	-	2019.03.13.	수요일	13:05	-	일반대중음식	-	33,100	
6	-	-	-	-	-	2019.03.15.	금요일	12:44	-	일반대중음식	-	155,000	
7	-	-	-	-	-	2019.04.11.	목요일	13:15	-	일반대중음식	-	150,000	
8	-	-	-	-	-	2019.04.18.	목요일	13:07	-	일반대중음식	-	26,000	
9	-	-	-	-	-	2019.04.19.	금요일	12:37	-	일반대중음식	-	10,500	
10	-	-	-	-	-	2019.04.22.	월요일	12:05	-	한식	-	24,000	
11	-	-	-	-	-	2019.04.26.	금요일	13:46	-	일반대중음식	-	11,000	
12	-	-	-	-	-	2019.05.01.	수요일	11:58	-	일반대중음식	-	140,000	
13	-	-	-	-	-	2019.05.15.	수요일	12:36	-	한식	-	30,000	
14	-	-	-	-	-	2019.05.16.	목요일	12:23	-	일반대중음식	-	120,000	
15	-	-	-	-	-	2019.06.26.	수요일	09:22	-	한식	-	21,000	
16	-	-	-	-	-	2019.07.02.	화요일	13:40	-	일반대중음식	-	19,000	
17	-	-	-	-	-	2019.07.03.	수요일	13:06	-	양식	-	14,500	
18	-	-	-	-	-	2019.07.04.	목요일	12:01	-	일반대중음식	-	154,000	
19	-	-	-	-	-	2019.07.25.	목요일	13:55	-	일식	-	61,000	
20	-	-	-	-	-	2019.07.26.	금요일	13:31	-	한식	-	24,000	
21	-	-	-	-	-	2019.09.18.	수요일	12:59	-	한식	-	24,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2	-	-	-	-	-	2019.10.17.	목요일	13:33	-	한식	-	80,000	본업 근무지 인근, 사용용도 불명확
23	-	-	-	-	-	2019.11.01.	금요일	15:06	-	한식	-	150,000	
24	-	-	-	-	-	2019.11.19.	화요일	08:45	-	한식	-	24,000	
25	-	-	-	-	-	2019.11.21.	목요일	12:21	-	한식	-	85,000	
26	-	-	-	-	-	2019.12.18.	수요일	13:20	-	일반대중음식	-	23,000	
27	-	-	-	-	-	2019.12.30.	월요일	12:56	-	일반대중음식	-	16,000	
28	-	-	-	-	-	2020.01.30.	목요일	13:26	-	일반대중음식	-	150,000	
29	-	-	-	-	-	2020.03.11.	수요일	12:34	-	일반대중음식	-	200,000	
30	-	-	-	-	-	2020.04.06.	월요일	12:37	-	일반대중음식	-	14,000	
31	-	-	-	-	-	2020.04.09.	목요일	11:58	-	일반대중음식	-	150,000	
32	-	-	-	-	-	2020.04.09.	목요일	12:43	-	일반대중음식	-	22,400	
33	-	-	-	-	-	2020.04.17.	금요일	12:26	-	일반대중음식	-	61,000	
34	-	-	-	-	-	2020.04.17.	금요일	12:32	-	일반대중음식	-	25,300	
35	-	-	-	-	-	2020.04.27.	월요일	12:22	-	일반대중음식	-	150,000	
36	-	-	-	-	-	2020.04.27.	월요일	12:32	-	일반대중음식	-	14,000	
37	-	-	-	-	-	2020.05.14.	목요일	12:48	-	일반대중음식	-	51,000	
38	-	-	-	-	-	2020.05.19.	화요일	08:58	-	한식	-	12,000	
39	-	-	-	-	-	2020.05.27.	수요일	13:08	-	한식	-	110,000	
40	-	-	-	-	-	2020.05.29.	금요일	08:48	-	한식	-	9,000	

연번	카드번호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날짜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업소명	업종	사용업소 주소	결제금액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41	-	-	-	-	-	2020.06.03.	수요일	12:19	-	일반대중음식	-	150,000	본업 근무지 인근, 사용용도 불명확
42	-	-	-	-	-	2020.06.03.	수요일	12:22	-	일반대중음식	-	15,400	
43	-	-	-	-	-	2020.06.15.	월요일	12:40	-	일반대중음식	-	43,000	
44	-	-	-	-	-	2020.06.17.	수요일	12:09	-	한식	-	12,000	
45	-	-	-	-	-	2020.07.10.	금요일	12:10	-	일반대중음식	-	150,000	
46	-	-	-	-	-	2020.08.10.	월요일	12:58	-	한식	-	56,000	
47	-	-	-	-	-	2020.08.18.	화요일	12:26	-	일반대중음식	-	150,000	
48	-	-	-	-	-	2020.08.20.	목요일	12:18	-	한식	-	20,000	
49	-	-	-	-	-	2020.08.26.	수요일	12:44	-	한식	-	75,000	
50	-	-	-	-	-	2020.08.31.	월요일	12:22	-	일반대중음식	-	21,000	
소계(-)												3,577,100	
합 계												8,588,1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p>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p> <p>○ 「인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4. 11. 1.)」 제5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AI는 2017. 3. 1. ‘ㄱ비’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19,885천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붙임】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7. 3. 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AI 등 교원 5명은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 총 8건에 대하여 배우자 등 연구책임자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82,403천원을 연구비에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5명)</p>

【붙임】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지원기관	특수관계자					
								연구책임자와의관계	소속	직급	성명	인건비수령액	지급년월
1	-	-	AI	그 밖	2017.03.01 ~ 2019.02.28	95,880	-	배우자	-	-	-	19,885	2017.5 ~ 2019.1
2	-	-	-	-	2017.05.01 ~ 2021.04.30	26,000	-	-	-	-	-	7,500	2017.11 ~ 2019.12
3	-	-	-	-	2018.10.10 ~ 2020.10.09	171,000	-	-	-	-	-	40,261	2019.5 ~ 2020.5
				-	2019.09.01 ~ 2020.02.29	15,000	-	-	-	-	9,157	2019.11 ~ 2020.2	
4	-	-	-	-	2019.05.01 ~ 2020.04.30	10,000	-	-	-	-	-	2,000	2019.5 ~ 2019.11
5	-	-	-	-	2019.06.10 ~ 2020.01.10	50,000 (현물72,450) 총122,450	-	-	-	-	-	3,600	2019.11 ~ 2019.12
합 계						440,330						82,40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7	<p>자기 업무 보고서 연구비 지급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예산편성 지침(‘16~’20)” 및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6~’20)”에 따르면 연구·학생경비 중 연구활동비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과제 자체연구비, 지속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대학 정책사업 및 특성화 사업을 위한 전략연구비로 되어 있으며, 인천대학교 직원은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 분장에 관한 규정」 및 TF조직 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이 담당직무 외에 연구과제를 위탁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5. 12. 9. AJ에게 해당 업무가 사무 분장에 따라 본인의 담당직무에 속하는 특성화 사업 관련하여 대학특성화(CK-2)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면서 ‘대학특성화(CK-2)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연구비’ 명목으로 3,76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자기 업무 관련 보고서 작성 연구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15. 12.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AJ 등 31명에게 해당 업무가 사무분장에 따라 본인의 담당직무에 속하는 위 중간평가보고서 등 사업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로 합계 59,24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6명)</p> <p>○ 시정(회수)</p> <p>- 자기 직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지급된 연구비 59,24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붙임】

자기 업무 관련 보고서 작성 연구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수행연도	보고서작성기간	TF팀명	연구활동명 (수행부서)	소속	소속학과	직책	직급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	TF팀발령일
1	2015	2015.12.09 ~ 2016.02.22		-	-	-	-	-	AJ	3,760	2016.02.29	2014.2.17.
							-	-	-	3,760		
2	2015	2015.12.09 ~ 2016.02.19		-	-	-	-	-	-	1,974	2016.02.29	2014.2.17.
							-	-	-	1,974		
3	2018	2017.12.28 ~ 2018.06.30		-	-	-	-	-	-	2,481	2018.08.31	2018.1.15.
							-	-	-	2,481		
							-	-	-	2,481		
							-	-	-	2,481		
							-	-	-	2,429		
							-	-	-	1,063		
							-	-	-	2,481		
							-	-	-	2,481		
							-	-	-	1,329		
							-	-	-	1,063		
							-	-	-	532		
							-	-	-	532		
							-	-	-	532		
							-	-	-	2,481		
-	-	-	2,481									
-	-	-	736									
-	-	-	797									
-	-	-	1,063									
4	2019	2019.03.26 ~ 2019.06.26		-	-	-	-	-	-	2,323	2019.07.04	2019.3.25.
							-	-	-	1,742		
							-	-	-	1,742		
							-	-	-	2,323		
							-	-	-	1,588		
							-	-	-	2,323		
							-	-	-	1,742		
							-	-	-	2,323		
-	-	-	1,742									
총 31 명										59,24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p>자기 업무 보고서 보상금 지급 부적정</p> <p>○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이 담당직무 외에 연구과제를 위탁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2019. 4. 1. LINC+ 사업 관련 업무가 사무분장에 따라 본인의 업무에 속하는 AK에게 LINC+ 사업 수주를 위한 보고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LINC+ 사업 수주를 위한 연구 포상금' 명목으로 3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자기 소관 업무 관련 보상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9. 4. 1. 위 AK 등 8명에게 사무분장에 따라 본인의 담당직무에 속하는 사업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LINC+ 사업 제안 준비 연구 포상금' 명목으로 ㉠ 간접비-사업비-기타 지원비로 합계 2,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2명)</p> <p>○ 시정(회수)</p> <p>- 자기 직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금 2,4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붙임】

자기소관 업무 관련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수행 연도	보고서 작성기간	TF 팀명	연구활동명 (예산과목)	소속	직 급	성 명	지급 금액	지급일	TF팀 발령일
1	2018	2018. 12.01 ~ 2019. 03.15	-	-	-	-	AK	300	2019. 04.01	2018. 11.23.
					-	-	-	300		
					-	-	-	300		
					-	-	-	300		
					-	-	-	300		
					-	-	-	300		
					-	-	-	300		
					-	-	-	300		
8건								2,4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p>대학연구활동 지원 사업 관리 미흡</p> <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11. 전부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사용하고 인력지원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이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3.10. 4.)」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은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17.~’20.)」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17.~’20.)”에 따르면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회의비 부당집행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2013년부터 2020년 9월 감사일 현재 까지 간접비 15%이상 징수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대학연구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면서 【붙임1】</p>	<p>○개선</p> <p>- 인천대학교 대학 연구활동지원비 지원 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 등에 맞게 수립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지원 계획 부적정 현황”과 같이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지원 계획에서 별표에 실험실운영비를 사용할 때 내부 참여인력만으로도 회의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 ○은 AL이 2017. 5.부터 2020. 9. 현재까지 대학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연구비 10,001천원 중 전체인 10,001천원을 내부 직원 참여인력만으로 회의비를 집행하게 하는 등 【붙임2】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회의비 집행 현황”과 같이 위 AL 등 212명이 2017. 5.부터 2020. 9. 현재까지 대학연구활동 지원사업연구비 (212건, 1,751,483천원) 중 내부 직원 참여인력만으로도 회의비(163건 전체의77%, 680,407천원 전체의39%)를 집행하게 하는 등 대학연구활동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1】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지원 계획 부적정 현황

관련 규정	현 행	정비 필요사항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사용하고 인력지원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이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에게 사용</p> <p>「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은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원</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를 회의비 부당집행 사례로 함</p>	<p>「2017~2020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계획」</p> <p>【별표 1】 사용 용도별 집행 세부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595 696 1256 972"> <thead> <tr> <th>사용용도</th> <th>사용방법</th> <th>집행기준 및 구비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실험실 운영지원비</td> <td>연구책임자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비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 유의사항 (중략) · <u>내부 참여인력만으로도 회의비 사용 가능함</u> </td> </tr> </tbody> </table>	사용용도	사용방법	집행기준 및 구비서류	실험실 운영지원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비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 유의사항 (중략) · <u>내부 참여인력만으로도 회의비 사용 가능함</u> 	<p>연구비 관련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맞도록 대학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 계획 등을 정비할 것</p> <p>-회의비 사용 시 외부기관 참석 조항 삽입 등 연구활동 지원비 사용용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조항 정비</p>
사용용도	사용방법	집행기준 및 구비서류						
실험실 운영지원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비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 유의사항 (중략) · <u>내부 참여인력만으로도 회의비 사용 가능함</u> 						

【붙임2】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회의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제 책임자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AL	3,593	3,593	100	4,018	4,018	100	2,059	2,059	100	330	330	100	10,001	10,001	100
-	1,442	1,442	100	2,517	2,517	100	4,246	4,246	100	541	541	100	8,746	8,746	100
-	1,702	1,702	100	1,606	1,606	100	872	872	100	239	239	100	4,419	4,419	100
-				3,354	3,354	100	715	715	100				4,069	4,069	100
-	1,186	1,186	100	765	765	100	1,494	1,494	100				3,445	3,445	100
-	357	357	100	1,083	1,083	100							1,440	1,440	100
-	1,145	1,145	100				292	292	100				1,437	1,437	100
-										1,330	1,330	100	1,330	1,330	100
-	1,157	1,157	100										1,157	1,157	100
-							1,154	1,154	100				1,154	1,154	100
-							75	75	100	549	549	100	624	624	100
-	240	240	100	194	194	100							433	433	100
-							266	266	100	99	99	100	365	365	100
-	310	310	100										310	310	100
-							2,366	2,310	98				2,366	2,310	98
-				65	65	100	424	424	100	743	705	95	1,231	1,193	97
-	3,397	3,257	96	308	308	100							3,705	3,565	96
-	630	630	100	7,320	6,829	93	3,425	3,296	96	1,447	1,447	100	12,822	12,202	95
-	2,966	2,916	98	4,964	4,531	91	4,570	4,226	92	1,575	1,575	100	14,075	13,247	94
-	801	728	91	254	254	100							1,055	982	93
-	4,451	4,451	100	5,186	5,186	100	6,089	6,089	100	3,016	1,600	53	18,741	17,325	92
-	162	162	100				19						181	162	90
-	4,221	4,111	97	4,584	3,981	87	2,920	2,199	75	1,389	1,389	100	13,114	11,680	89
-	4,098	4,098	100	3,165	2,763	87	2,539	2,042	80	168			9,971	8,903	89
-	2,283	2,283	100	3,269	3,089	94	2,959	2,183	74	438	438	100	8,948	7,992	89
-							1,136	872	77	1,004	1,004	100	2,140	1,876	88
-	2,214	1,536	69	2,648	2,553	96	1,754	1,594	91	786	726	92	7,401	6,409	87
-							1,516	1,516	100	496	211	42	2,011	1,726	86
-							912	612	67	5,169	4,571	88	6,081	5,183	85
-				1,631	1,304	80	736	680	92				2,367	1,984	84
-	1,660	521	31	2,003	2,003	100	6,586	6,155	93	8,688	6,787	78	18,936	15,466	82
-	1,796	1,796	100	1,490	975	65	839	540	64	375	375	100	4,501	3,687	82
-	522	454	87	595	540	91	102						1,219	994	82
-	6,318	4,750	75	5,691	4,421	78	3,544	3,199	90	310	310	100	15,862	12,680	80
-	1,795	1,795	100	2,636	1,287	49	7,837	6,532	83	1,323	1,323	100	13,591	10,936	80
-		0	0	1,925	1,925	100	3,521	3,139	89	3,445	2,058	60	8,891	7,123	80
-	1,591	941	59	1,364	1,364	100	132	132	100				3,086	2,436	79
-							1,367	936	68	488	488	100	1,856	1,424	77
-										1,570	1,215	77	1,570	1,215	77
-	4,131	3,124	76	2,553	1,876	73	2,206	1,854	84	809	524	65	9,700	7,377	76
-	1,300	1,180	91	921	438	48	265	265	100				2,485	1,883	76

과제 책임자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	18,502	13,450	73	12,428	11,951	96	10,478	10,385	99	13,424	5,249	39	54,832	41,036	75
-	2,053	1,101	54	2,197	1,696	77	1,239	1,119	90	827	827	100	6,316	4,743	75
-	3,551	2,108	59	3,045	2,669	88	3,457	2,482	72	1,359	924	68	11,413	8,183	72
-	1,991	1,037	52	3,039	1,704	56	2,143	2,143	100	666	645	97	7,839	5,529	71
-	1,681	1,043	62	4,449	3,334	75	6,047	3,901	65	1,804	1,346	75	13,980	9,625	69
-	1,146	1,010	88	785	227	29	292	292	100				2,223	1,529	69
-	2,746	1,585	58	4,760	3,729	78	5,127	3,532	69	1,752	998	57	14,385	9,844	68
-	564	198	35	568	568	100							1,131	765	68
-							2,560	1,606	63	332	332	100	2,892	1,938	67
-	1,476	1,030	70	1,514	723	48	2,277	1,809	79	827	434	52	6,095	3,996	66
-	1,019	900	88	1,580	619	39	1,057	1,012	96	1,879	1,053	56	5,535	3,584	65
-				3,457	3,274	95	8,528	4,351	51	182	182	100	12,168	7,807	64
-	2,692	630	23	6,627	3,288	50	6,063	4,991	82	3,659	2,860	78	19,041	11,769	62
-	5,562	4,675	84	2,602	1,626	62	9,102	4,475	49				17,266	10,777	62
-	1,386	716	52	1,980	1,095	55	3,792	2,615	69	2,036	1,321	65	9,195	5,746	62
-	301	301	100	398	398	100	635	221	35	444	158	36	1,777	1,077	61
-	9,271	3,004	32	4,547	2,869	63	7,833	6,142	78	3,399	2,925	86	25,050	14,940	60
-	4,071	2,360	58	2,788	1,340	48	1,161	1,111	96	92	92	100	8,112	4,903	60
-	5,630	1,751	31	8,417	5,170	61	4,419	3,725	84	1,475	1,031	70	19,941	11,678	59
-				2,533	612	24	2,763	2,536	92				5,296	3,147	59
-	1,685	547	32	542	80	15	1,116	1,116	100	561	561	100	3,904	2,304	59
-	1,558	656	42	2,197	1,566	71	4,730	3,618	76	3,192	920	29	11,677	6,760	58
-	1,853	1,853	100	4,151	1,849	45	2,105	937	45	520	353	68	8,628	4,992	58
-	1,979	1,812	92	2,757	907	33	42	42	100				4,778	2,760	58
-				418	418	100	3,407	1,717	50	169	169	100	3,994	2,304	58
-				290			5,354	2,323	43	2,137	2,076	97	7,782	4,399	57
-							1,162	636	55	517	323	63	1,679	959	57
-	1,659	103	6				2,308	1,851	80	2,380	1,577	66	6,347	3,531	56
-							486	486	100	1,225	465	38	1,711	951	56
-	3,274	2,788	85	2,878	864	30	756	401	53	974	318	33	7,883	4,370	55
-				575	215	37	611	420	69				1,186	635	54
-							857	464	54				857	464	54
-	3,992	2,112	53	2,963	1,601	54	3,052	1,501	49	563	373	66	10,570	5,587	53
-	2,714	2,325	86	1,115	767	69	6,400	2,321	36	1,816	879	48	12,045	6,293	52
-				3,564	660	19	1,457	1,409	97	1,035	1,035	100	6,056	3,104	51
-				136	68	50							136	68	50
-	3,018	613	20	2,302	1,476	64	2,148	1,541	72	1,653	879	53	9,121	4,509	49
-	4,630	2,487	54	732	472	64	1,932	566	29	1,323	584	44	8,617	4,109	48
-	2,939	2,617	89	1,861	527	28	3,562	840	24				8,362	3,984	48
-				1,315	425	32	933	933	100	2,301	835	36	4,549	2,194	48
-	14,260	5,573	39	7,809	4,816	62	17,475	7,986	46	9,272	4,509	49	48,817	22,884	47
-	7,571	4,988	66	10,090	6,405	63	12,330	5,297	43	7,247	993	14	37,239	17,683	47
-	10,235	4,453	44	8,092	1,898	23	2,622	2,492	95	2,416	2,091	87	23,365	10,934	47
-	2,203	612	28	3,854	1,966	51	2,630	1,473	56				8,687	4,051	47
-	2,237	2,194	98	1,614	1,307	81	4,398	377	9	346	172	50	8,595	4,049	47
-	390	0	0	2,624	2,607	99	3,144	619	20	1,886	541	29	8,045	3,766	47
-	28	28	98	3,400	1,339	39	1,670	1,503	90	3,946	1,173	30	9,043	4,042	45

과제 책임자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	2,548	2,296	90	658	294	45	4,976	923	19	304	237	78	8,487	3,749	44
-				235	235	100	2,800	1,182	42	160			3,196	1,417	44
-	7,259	1,918	26	4,827	1,873	39	3,243	2,544	78	1,817	1,071	59	17,146	7,406	43
-	6,772	3,133	46	2,820	1,257	45	13,977	3,314	24	9,409	6,001	64	32,978	13,704	42
-	984	77	8	4,254	1,624	38	659	559	85	727	456	63	6,625	2,715	41
-				311	311	100	1,102	256	23				1,413	567	40
-							4,929	1,933	39				4,929	1,933	39
-							1,022	398	39				1,022	398	39
-	4,677	1,692	36	587	296	50							5,264	1,988	38
-	8,332	4,597	55	9,040	1,377	15	1,644	1,031	63	26	26	100	19,042	7,031	37
-	300			2,642	986	37	4,279	2,929	68	5,057	661	13	12,278	4,575	37
-	2,051	76	4	7,317	1,913	26	5,190	2,662	51	1,595	1,023	64	16,152	5,674	35
-	5,088	721	14	4,951	1,243	25	6,719	2,942	44	3,553	1,946	55	20,310	6,852	34
-	1,404	1,304	93	2,922	905	31	3,972	1,303	33	3,581	528	15	11,879	4,039	34
-	6,931	2,762	40	4,832	3,254	67	12,205	2,706	22	7,294	1,737	24	31,262	10,460	33
-	1,342	294	22	2,889	1,511	52	3,985	1,369	34	1,983	159	8	10,199	3,333	33
-	471	363	77	226						708	99	14	1,404	462	33
-	6,519	3,940	60	7,925	2,637	33	21,913	4,398	20	13,072	4,599	35	49,429	15,574	32
-	5,258	894	17	7,349	2,604	35	5,887	2,652	45	2,408	464	19	20,902	6,613	32
-	3,588	887	25	2,335	642	27	2,452	1,409	57	3,052	757	25	11,427	3,694	32
-	6,663	2,117	32	4,555	1,467	32	6,530	2,194	34	4,999	1,312	26	22,747	7,090	31
-										621	194	31	621	194	31
-	6,925	2,281	33	1,904	736	39	5,394	1,651	31	3,528	397	11	17,751	5,064	29
-	7,121	1,403	20	3,931	2,099	53	4,652	1,432	31	4,083	407	10	19,786	5,341	27
-	3,023	830	27	5,138	687	13	2,194	856	39	1,133	749	66	11,488	3,122	27
-	2,721	769	28	1,623	1,039	64	3,379	761	23	4,743	655	14	12,467	3,224	26
-	50	50	99	2,780	657	24							2,829	707	25
-							632	172	27	838	198	24	1,469	370	25
-	2,308			5,772	980	17	7,810	1,911	24	1,273	1,273	100	17,162	4,164	24
-	3,657	524	14	8,858	2,056	23	2,519	1,489	59	2,028			17,063	4,070	24
-							184	184	100	577			760	184	24
-				224	54	24							224	54	24
-	1,015	94	9	1,140	0	0	2,610	714	27	395	395	100	5,160	1,203	23
-	7,381	1,508	20	8,968	3,594	40	13,439	711	5	761	643	85	30,549	6,456	21
-	4,541	411	9	4,163	1,720	41	12,423	1,870	15	4,796	1,569	33	25,923	5,570	21
-				4,663	216	5	435	435	100	532	532	100	5,629	1,182	21
-				-	0	0	2,190	68	3	1,089	613	56	3,279	681	21
-	987			5,504	1,601	29	7,910	2,067	26	7,427	583	8	21,828	4,251	19
-				77			2,054	407	20				2,131	407	19
-	1,134	331	29				600						1,734	331	19
-							1,575	182	12	152	152	100	1,727	334	19
-	335	77	23	4,188	739	18	1,091	198	18	776	137	18	6,390	1,151	18
-	1,535	191	12	1,686	382	23							3,221	573	18
-	1,705			437	240	55	302	199	66				2,444	439	18
-	4,277	474	11	1,579	703	45	2,691	254	9	933	151	16	9,480	1,582	17
-	1,693	374	22	3,104	278	9	3,191	695	22				7,989	1,347	17
-	566	100	18	4,403	746	17	18						4,988	846	17

과제 책임자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				119	38	32	841	158	19	200			1,161	196	17
-							1,189	189	16				1,189	189	16
-	6,563	541	8	3,823	1,331	35	8,918	593	7	274	274	100	19,578	2,738	14
-	917	432	47	3,882	60	2	2,121	210	10	372	336	90	7,292	1,037	14
-	1,230			251			1,383	386	28	179			3,043	386	13
-	2,048	724	35	2,197	719	33	14,544	987	7	2,969	152	5	21,759	2,582	12
-				6,048	749	12	8,509	1,110	13	2,082	36	2	16,639	1,895	11
-	2,433			444			2,271	321	14	856	313	37	6,005	634	11
-				114						203	36	18	317	36	11
-	15,749	1,922	12	14,161	1,305	9	14,059	960	7	897	220	24	44,867	4,406	10
-	1,220			1,708	163	10	7,261	668	9	1,075	254	24	11,264	1,085	10
-				4,596	546	12	3,795	325	9				8,390	871	10
-				11,559	989	9	1,904	12	1	1,422	168	12	14,885	1,169	8
-	10,073	1,366	14	20,007	1,435	7	10,700	24					40,780	2,825	7
-	2,639			2,644			1,560			1,533	571	37	8,376	571	7
-							1,190	114	10	2,919	174	6	4,109	288	7
-				238	238	100	3,000						3,238	238	7
-	1,519			2,189	76	3	222	222	100	8,000	329	4	11,931	627	5
-				2,204	63	3	2,980	210	7	4,346	237	5	9,530	510	5
-				2,643			260	0	0	186	90	48	3,088	90	3
-	571			5,144			2,812	175	6	1,454			9,980	175	2
-	6,430	109	2	1,297			280			735	76	10	8,742	184	2
-				192	72	38	3,845						4,038	72	2
-	11,653			2,486	88	4							14,139	88	1
-	1,339			2,943			1,872	70	4				6,154	70	1
-	449	49	11	4,822						138			5,408	49	1
-	5,539			9,614			3,718			8,476			27,346	0	
-	3,875			7,427			1,588			5,503	83	2	18,393	83	
-	12,966						4,000						16,966		
-	2,728			3,652			4,266			1,581			12,227		
-	911			7,264			1,175			97			9,447		
-				4,600			4,228			388			9,216		
-	8,916			21									8,937		
-	850			1,922			1,903			3,410			8,085		
-	317			3,333			1,282			1,664			6,596		
-	2,352			173			298			3,437			6,259		
-	377			393			4,336			329			5,435		
-	2,293			2,306									4,598		
-							4,280						4,280		
-				865			3,173						4,038		
-	1,205			1,539			1,107						3,851		
-				1,004			1,312			921			3,237		
-				174			2,800						2,974		
-				174			2,465			148			2,786		
-	2,606												2,606		
-				1,162			1,108			86			2,356		
-				1,957						143			2,100		

과제 책임자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총사업비	회의비	%
-							30			1,989			2,019		
-	1,200						770						1,970		
-							722			1,222			1,944		
-				1,200			533						1,733		
-							960			771			1,731		
-							1,722						1,722		
-				1,717									1,717		
-	800			850			26						1,676		
-										1,596			1,596		
-										1,200			1,200		
-	596			394			206						1,195		
-										1,186			1,186		
-				1,134									1,134		
-							924						924		
-							842						842		
-				597									597		
-	72			506									578		
-										414			414		
-										409			409		
-										390			390		
-	59			236			68						363		
-										344			344		
-							204						204		
-							192						192		
-							185						185		
-							133						133		
-							112						112		
-				102	102	100							102		
-							48						48		
-							9						9		
건 수	130	101	78%	160	122	76%	177	134	76%	139	109	78%	212	163	77%
합 계	418,991	164,156	39%	489,946	189,284	39%	565,615	222,979	39%	276,937	104,110	38%	1,751,483	680,407	3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p>자체연구비 관리 규정 미비</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천대학교 ●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16.~20.)」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지출증빙서를 비치하고 성실, 정확하게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기관경고</p> <p>○ 개선</p> <p>-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인천대학교 자체 연구비 관리 지침을 정비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인천대학교는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 지침” [별표1] ‘자체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에 연구활동비(연구수당)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p> <p>【붙임1】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미정비 등 현황”과 같이 2020. 9. 감사일 현재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지 아니하여 【붙임2】 “자체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연구비 11,115,500천원(1,360건) 중 62%인 6,795,947천원(1,360건, 100%)을 영수증 첨부없이 사업 계획서만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미정비 등 현황

관련 규정	현 행	정비 필요사항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대 자체연구비 관리지침(‘16.~’20.)」</p> <p>【별표 1】 자체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 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609 689 1254 929"> <thead> <tr> <th>항목</th> <th>사용내용 및 정산기준</th> <th>계상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연구활동비 (연구수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과세 후 개별 계좌이체 (관련세법 준수) - 영수증 첨부 안함 </td> <td>-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도별 자체연구비 운영계획에 따름</td> </tr> </tbody> </table>	항목	사용내용 및 정산기준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과세 후 개별 계좌이체 (관련세법 준수) - 영수증 첨부 안함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도별 자체연구비 운영계획에 따름	<p>연구활동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용용도로 사용 정산할 수 있도록 정비</p> <p>※위 규정상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퍼센트 범위에서 계상</p>
항목	사용내용 및 정산기준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과세 후 개별 계좌이체 (관련세법 준수) - 영수증 첨부 안함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도별 자체연구비 운영계획에 따름						

【붙임2】

자체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자체연구비		연구활동비		인건비		재료비		기술정보활동비		기자재구입비		여비등기타	
	총액	건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3,987,500	478	2,974,680	75%	208,840	5%	172,740	4%	231,121	6%	142,927	4%	257,192	6%
2019	3,571,500	434	1,876,307	53%	298,775	8%	285,297	8%	420,713	12%	250,610	7%	439,798	12%
2019까지	3,556,500	448	1,944,960	56%	294,070	8%	299,520	8%	499,666	14%	206,556	6%	311,729	8%
총합계	11,115,500	1,360	6,795,947	62%	801,685	7%	757,557	7%	1,151,500	10%	600,093	5%	1,008,718	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1	<p>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p> <p>○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29조 및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법」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르면 개인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2018. 2. 7. AM에게 2018년도 창업지원단 직원성과상여금 3,123천원을 지급하면서 성과금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 해당분 신고를 누락하는 등</p> <p>【붙임】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누락 현황”과 같이 위 AM 등 17명의 직원성과상여금 등 총 85,164,86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856,632원 및 주민세 385,662원 합계 4,242,294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주의(9명)</p> <p>○시정</p> <p>- 원천징수하지 않은 수당 85,164,86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4,242,294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기 바람</p>

【붙임】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누락 현황

(단위 : 원)

순	수당 지급 년도	구분	성명	수당 지급액	원천징수대상액 (추가납부세액)			지급일
					소득세	주민세	합계	
1	2018	성과상여금	AM	3,122,970	71,672	7,167	78,839	2018.02.12.
2	2018	성과상여금	-	4,062,080	578,846	57,884	636,730	2018.02.12.
3	2018	성과상여금,사업참여 인력수당	-	3,725,070	518,348	51,835	570,183	2018.02.09. 2018.12.03.
4	2018	성과상여금,겸직수당	-	3,655,570	515,892	51,589	567,481	2018.02.12. 2018.12.11.
5	2018	성과상여금,겸직수당	-	2,918,560	390,019	39,002	429,021	2018.02.09. 2018.12.11.
6	2018	성과상여금,원고료,강 사비,전문가활용비	-	13,980,000	244,675	24,467	269,142	2018.02.14. 2018.06.26. 2018.06.26. 2018.10.16.
7	2018	성과상여금	-	14,000,000	366,116	36,611	402,727	2018.02.14.
8	2018	성과상여금	-	2,186,940	279,956	27,995	307,951	2018.02.12.
9	2018	성과상여금,겸직수당	-	3,027,880	275,221	27,523	302,744	2018.02.12. 2018.12.11.
10	2018	성과상여금,겸직수당	-	3,147,990	161,741	16,174	177,915	2018.02.12. 2018.12.11.
11	2018	성과상여,사업참여 인력수당	-	2,627,670	-	-	-	2018.02.09. 2018.12.03.
12	2018	성과상여금	-	13,000,000	256,389	25,638	282,027	2018.02.14.
13	2018	사업참여인력수당	-	300,000	7,493	750	8,243	2018.12.03.
14	2018	사업참여인력수당	-	300,000	6,885	689	7,574	2018.12.03.
15	2018	2018년도성과급	-	2,926,150	-	-	-	2018.12.27.
16	2018	2018년도성과급	-	3,196,150	183,379	18,338	201,717	2018.12.27.
17	2018	2018년도성과급	-	8,987,830	-	-	-	2018.12.27.
총 계				85,164,860	3,856,632	385,662	4,242,29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p>연구노트 작성·관리 부적정</p> <p>○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 연구노트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노트를 수령하여야 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AN은 △△에서 발주한 ‘ㄱㄱ’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신청하지도 않고, 연구노트 및 관련자료를 ㉠에 제출하지도 않는 등 【붙임】 “연구책임자 연구노트 미신청 및 미제출 현황”과 같이 위 AN 등 연구책임자 312명(1,166개 연구과제)은 2016. 3.부터 2020. 6.까지 책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를 신청하지 않거나, 교부받고도 연구노트를 ㉠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미제출된 연구노트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연구노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p>

【붙임】

연구책임자 연구노트 미신청 및 미제출 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	그스	△△	20160601	20170531	-	-	AN
2	-	-	20160301	20170228	-	-	-
3	-	-	20160301	20170228	-	-	-
4	-	-	20160501	20170430	-	-	-
5	-	-	20160501	20170430	-	-	-
6	-	-	20160501	20170430	-	-	-
7	-	-	20160501	20170430	-	-	-
8	-	-	20160501	20170430	-	-	-
9	-	-	20160501	20170430	-	-	-
10	-	-	20160501	20170430	-	-	-
11	-	-	20160501	20170430	-	-	-
12	-	-	20160901	20170831	-	-	-
13	-	-	20170901	20180831	-	-	-
14	-	-	20180901	20190831	-	-	-
15	-	-	20160701	20170630	-	-	-
16	-	-	20160701	20170630	-	-	-
17	-	-	20160601	20170531	-	-	-
18	-	-	20160601	20170531	-	-	-
19	-	-	20180401	20181231	-	-	-
20	-	-	20190101	20190531	-	-	-
21	-	-	20160701	20170630	-	-	-
22	-	-	20160701	201706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23	-	-	20160718	20170717	-	-	-
24	-	-	20160301	20170228	-	-	-
25	-	-	20160701	20170630	-	-	-
26	-	-	20160501	20170430	-	-	-
27	-	-	20160901	20170831	-	-	-
28	-	-	20160501	20170430	-	-	-
29	-	-	20160501	20170430	-	-	-
30	-	-	20160501	20170430	-	-	-
31	-	-	20160501	20170430	-	-	-
32	-	-	20160501	20170430	-	-	-
33	-	-	20160501	20170430	-	-	-
34	-	-	20160501	20170430	-	-	-
35	-	-	20160501	20170430	-	-	-
36	-	-	20161101	20171031	-	-	-
37	-	-	20161201	20171130	-	-	-
38	-	-	20160501	20170228	-	-	-
39	-	-	20170301	20171231	-	-	-
40	-	-	20180101	20181231	-	-	-
41	-	-	20190101	20200430	-	-	-
42	-	-	20170101	20171231	-	-	-
43	-	-	20161001	20170930	-	-	-
44	-	-	20170101	20171231	-	-	-
45	-	-	20180101	20181231	-	-	-
46	-	-	20190101	20191231	-	-	-
47	-	-	20170101	20171231	-	-	-
48	-	-	20160501	201704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49	-	-	20170501	20180430	-	-	-
50	-	-	20160501	20170430	-	-	-
51	-	-	20170501	20180430	-	-	-
52	-	-	20160501	20170430	-	-	-
53	-	-	20160501	20170430	-	-	-
54	-	-	20160701	20170630	-	-	-
55	-	-	20160601	20170531	-	-	-
56	-	-	20170601	20180531	-	-	-
57	-	-	20160601	20170531	-	-	-
58	-	-	20170601	20180331	-	-	-
59	-	-	20180401	20190131	-	-	-
60	-	-	20190201	20191231	-	-	-
61	-	-	20200101	20200531	-	-	-
62	-	-	20160616	20170615	-	-	-
63	-	-	20160701	20170630	-	-	-
64	-	-	20170701	20180630	-	-	-
65	-	-	20160701	20170630	-	-	-
66	-	-	20170701	20180630	-	-	-
67	-	-	20160701	20170630	-	-	-
68	-	-	20170701	20180630	-	-	-
69	-	-	20160701	20170630	-	-	-
70	-	-	20170701	201806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71	-	-	20160501	20170330	-	-	-
72	-	-	20170331	20171231	-	-	-
73	-	-	20180101	20181231	-	-	-
74	-	-	20190101	20191231	-	-	-
75	-	-	20160901	20170831	-	-	-
76	-	-	20170901	20180831	-	-	-
77	-	-	20160901	20170831	-	-	-
78	-	-	20161101	20171031	-	-	-
79	-	-	20171101	20181031	-	-	-
80	-	-	20171101	20181031	-	-	-
81	-	-	20161101	20171031	-	-	-
82	-	-	20171101	20181031	-	-	-
83	-	-	20161101	20171031	-	-	-
84	-	-	20171101	20181031	-	-	-
85	-	-	20161101	20171031	-	-	-
86	-	-	20171101	20181031	-	-	-
87	-	-	20161101	20171031	-	-	-
88	-	-	20171101	20181031	-	-	-
89	-	-	20171101	20181031	-	-	-
90	-	-	20161101	20171031	-	-	-
91	-	-	20171101	20181031	-	-	-
92	-	-	20161101	20171031	-	-	-
93	-	-	20171101	201810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94	-	-	20161101	20171031	-	-	-
95	-	-	20171101	20181031	-	-	-
96	-	-	20161101	20171031	-	-	-
97	-	-	20171101	20181031	-	-	-
98	-	-	20160505	20170304	-	-	-
99	-	-	20170305	20171231	-	-	-
100	-	-	20180101	20181231	-	-	-
101	-	-	20161001	20170930	-	-	-
102	-	-	20161101	20171031	-	-	-
103	-	-	20161101	20171031	-	-	-
104	-	-	20171101	20181031	-	-	-
105	-	-	20161101	20171031	-	-	-
106	-	-	20171101	20181031	-	-	-
107	-	-	20161101	20171031	-	-	-
108	-	-	20171101	20181031	-	-	-
109	-	-	20160501	20170228	-	-	-
110	-	-	20170301	20171231	-	-	-
111	-	-	20180101	20181231	-	-	-
112	-	-	20190101	20200229	-	-	-
113	-	-	20161201	20171130	-	-	-
114	-	-	20161201	20171130	-	-	-
115	-	-	20170101	2017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16	-	-	20161228	20171227	-	-	-
117	-	-	20171228	20181227	-	-	-
118	-	-	20161101	20171031	-	-	-
119	-	-	20171101	20181031	-	-	-
120	-	-	20170101	20171231	-	-	-
121	-	-	20180101	20181231	-	-	-
122	-	-	20160301	20170531	-	-	-
123	-	-	20170101	20171231	-	-	-
124	-	-	20180101	20181231	-	-	-
125	-	-	20190101	20191231	-	-	-
126	-	-	20161101	20171031	-	-	-
127	-	-	20171101	20181031	-	-	-
128	-	-	20160401	20170331	-	-	-
129	-	-	20170401	20180331	-	-	-
130	-	-	20180401	20190331	-	-	-
131	-	-	20160401	20170131	-	-	-
132	-	-	20170408	20180407	-	-	-
133	-	-	20170401	20180331	-	-	-
134	-	-	20160301	20170228	-	-	-
135	-	-	20160501	20170430	-	-	-
136	-	-	20170101	20171231	-	-	-
137	-	-	20160501	20170430	-	-	-
138	-	-	20170501	20180430	-	-	-
139	-	-	20170101	20171231	-	-	-
140	-	-	20180101	2018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41	-	-	20160501	20170430	-	-	-
142	-	-	20170501	20180430	-	-	-
143	-	-	20160501	20170430	-	-	-
144	-	-	20160501	20170430	-	-	-
145	-	-	20160501	20170430	-	-	-
146	-	-	20170501	20180430	-	-	-
147	-	-	20180501	20190430	-	-	-
148	-	-	20160501	20170430	-	-	-
149	-	-	20160501	20170430	-	-	-
150	-	-	20160501	20170430	-	-	-
151	-	-	20160501	20170430	-	-	-
152	-	-	20160501	20170430	-	-	-
153	-	-	20170501	20180430	-	-	-
154	-	-	20180501	20190430	-	-	-
155	-	-	20170101	20171231	-	-	-
156	-	-	20170101	20171231	-	-	-
157	-	-	20160601	20170531	-	-	-
158	-	-	20170601	20180228	-	-	-
159	-	-	20180301	20190228	-	-	-
160	-	-	20190301	20200229	-	-	-
161	-	-	20160601	20170531	-	-	-
162	-	-	20170601	20180228	-	-	-
163	-	-	20180301	20190228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64	-	-	20190301	20200229	-	-	-
165	-	-	20160601	20170531	-	-	-
166	-	-	20160601	20170531	-	-	-
167	-	-	20170601	20180531	-	-	-
168	-	-	20160601	20170531	-	-	-
169	-	-	20170601	20180331	-	-	-
170	-	-	20180401	20190228	-	-	-
171	-	-	20190301	20190531	-	-	-
172	-	-	20160601	20170531	-	-	-
173	-	-	20170601	20180331	-	-	-
174	-	-	20180401	20190228	-	-	-
175	-	-	20190301	20190531	-	-	-
176	-	-	20160601	20170531	-	-	-
177	-	-	20170601	20180331	-	-	-
178	-	-	20180401	20190228	-	-	-
179	-	-	20190301	20190531	-	-	-
180	-	-	20180401	20190228	-	-	-
181	-	-	20190301	20190531	-	-	-
182	-	-	20160601	20170531	-	-	-
183	-	-	20170601	20180331	-	-	-
184	-	-	20180401	20190228	-	-	-
185	-	-	20190301	201905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86	-	-	20160601	20170531	-	-	-
187	-	-	20170601	20180331	-	-	-
188	-	-	20180401	20190228	-	-	-
189	-	-	20190301	20190531	-	-	-
190	-	-	20160601	20170531	-	-	-
191	-	-	20170601	20180331	-	-	-
192	-	-	20180401	20190228	-	-	-
193	-	-	20190301	20190531	-	-	-
194	-	-	20160601	20170531	-	-	-
195	-	-	20170601	20180331	-	-	-
196	-	-	20180401	20190228	-	-	-
197	-	-	20190301	20190531	-	-	-
198	-	-	20160601	20170531	-	-	-
199	-	-	20170601	20180331	-	-	-
200	-	-	20180401	20190228	-	-	-
201	-	-	20190301	20190531	-	-	-
202	-	-	20160601	20170531	-	-	-
203	-	-	20170601	20180331	-	-	-
204	-	-	20180401	20190228	-	-	-
205	-	-	20190301	201905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206	-	-	20160601	20170531	-	-	-
207	-	-	20170601	20180331	-	-	-
208	-	-	20180401	20190228	-	-	-
209	-	-	20190301	20190531	-	-	-
210	-	-	20160601	20170531	-	-	-
211	-	-	20170601	20180331	-	-	-
212	-	-	20160622	20170621	-	-	-
213	-	-	20160622	20170621	-	-	-
214	-	-	20160701	20170630	-	-	-
215	-	-	20160701	20170630	-	-	-
216	-	-	20160701	20170630	-	-	-
217	-	-	20170701	20180630	-	-	-
218	-	-	20180701	20190630	-	-	-
219	-	-	20160601	20170531	-	-	-
220	-	-	20170601	20180331	-	-	-
221	-	-	20180401	20190228	-	-	-
222	-	-	20190301	20190531	-	-	-
223	-	-	20160601	20170531	-	-	-
224	-	-	20170601	20180331	-	-	-
225	-	-	20180401	20190228	-	-	-
226	-	-	20190301	20190531	-	-	-
227	-	-	20160601	20170531	-	-	-
228	-	-	20170601	20180331	-	-	-
229	-	-	20180401	20190228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230	-	-	20190301	20200229	-	-	-
231	-	-	20170101	20171231	-	-	-
232	-	-	20180101	20181231	-	-	-
233	-	-	20170101	20171231	-	-	-
234	-	-	20160501	20170430	-	-	-
235	-	-	20170501	20180228	-	-	-
236	-	-	20180301	20181231	-	-	-
237	-	-	20170622	20180621	-	-	-
238	-	-	20171001	20180930	-	-	-
239	-	-	20160624	20170623	-	-	-
240	-	-	20170624	20180623	-	-	-
241	-	-	20170101	20171231	-	-	-
242	-	-	20180101	20181231	-	-	-
243	-	-	20190101	20191231	-	-	-
244	-	-	20190101	20191231	-	-	-
245	-	-	20160901	20170831	-	-	-
246	-	-	20170901	20180831	-	-	-
247	-	-	20160901	20170831	-	-	-
248	-	-	20160901	20170831	-	-	-
249	-	-	20170901	20180831	-	-	-
250	-	-	20160823	20170822	-	-	-
251	-	-	20170823	20180822	-	-	-
252	-	-	20160901	20170831	-	-	-
253	-	-	20160901	201708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254	-	-	20160901	20170831	-	-	-
255	-	-	20160901	20170831	-	-	-
256	-	-	20170822	20180821	-	-	-
257	-	-	20161001	20170930	-	-	-
258	-	-	20171001	20180930	-	-	-
259	-	-	20161101	20170430	-	-	-
260	-	-	20170501	20180228	-	-	-
261	-	-	20180301	20181231	-	-	-
262	-	-	20161030	20171029	-	-	-
263	-	-	20161001	20170228	-	-	-
264	-	-	20170301	20171231	-	-	-
265	-	-	20180101	20181231	-	-	-
266	-	-	20190101	20190930	-	-	-
267	-	-	20161019	20171018	-	-	-
268	-	-	20171101	20180831	-	-	-
269	-	-	20180901	20190630	-	-	-
270	-	-	20190701	20200430	-	-	-
271	-	-	20161101	20171031	-	-	-
272	-	-	20171101	20180831	-	-	-
273	-	-	20180901	20190630	-	-	-
274	-	-	20190701	20191031	-	-	-
275	-	-	20171101	20180831	-	-	-
276	-	-	20180901	201906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277	-	-	20190701	20191031	-	-	-
278	-	-	20161101	20171031	-	-	-
279	-	-	20171101	20180831	-	-	-
280	-	-	20180901	20190630	-	-	-
281	-	-	20190701	20191031	-	-	-
282	-	-	20161101	20171031	-	-	-
283	-	-	20171101	20180831	-	-	-
284	-	-	20180901	20190630	-	-	-
285	-	-	20190701	20191031	-	-	-
286	-	-	20161101	20171031	-	-	-
287	-	-	20171101	20180831	-	-	-
288	-	-	20180901	20190630	-	-	-
289	-	-	20190701	20191031	-	-	-
290	-	-	20161101	20171031	-	-	-
291	-	-	20171101	20180831	-	-	-
292	-	-	20180901	20190630	-	-	-
293	-	-	20190701	20191031	-	-	-
294	-	-	20161101	20171031	-	-	-
295	-	-	20171101	20180831	-	-	-
296	-	-	20180901	20190630	-	-	-
297	-	-	20190701	20191031	-	-	-
298	-	-	20161101	20171031	-	-	-
299	-	-	20171101	20180831	-	-	-
300	-	-	20180901	20190630	-	-	-
301	-	-	20190701	20191031	-	-	-
302	-	-	20161101	201710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303	-	-	20171101	20180831	-	-	-
304	-	-	20180901	20190630	-	-	-
305	-	-	20190701	20191031	-	-	-
306	-	-	20161101	20171031	-	-	-
307	-	-	20171101	20180831	-	-	-
308	-	-	20180901	20190630	-	-	-
309	-	-	20190701	20191031	-	-	-
310	-	-	20161101	20171031	-	-	-
311	-	-	20171101	20180831	-	-	-
312	-	-	20180901	20190630	-	-	-
313	-	-	20190701	20191031	-	-	-
314	-	-	20161101	20171031	-	-	-
315	-	-	20171101	20180831	-	-	-
316	-	-	20180901	20190630	-	-	-
317	-	-	20190701	20191031	-	-	-
318	-	-	20161101	20171031	-	-	-
319	-	-	20171101	20180831	-	-	-
320	-	-	20180901	20190630	-	-	-
321	-	-	20190701	20191031	-	-	-
322	-	-	20171101	20180831	-	-	-
323	-	-	20180901	20190630	-	-	-
324	-	-	20190701	201910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325	-	-	20161101	20171031	-	-	-
326	-	-	20171101	20180831	-	-	-
327	-	-	20180901	20190630	-	-	-
328	-	-	20190701	20191031	-	-	-
329	-	-	20161101	20171031	-	-	-
330	-	-	20161101	20171031	-	-	-
331	-	-	20161101	20171031	-	-	-
332	-	-	20171101	20181031	-	-	-
333	-	-	20161101	20171031	-	-	-
334	-	-	20171101	20180831	-	-	-
335	-	-	20180901	20190630	-	-	-
336	-	-	20190701	20191031	-	-	-
337	-	-	20161101	20171031	-	-	-
338	-	-	20171101	20180831	-	-	-
339	-	-	20180901	20190630	-	-	-
340	-	-	20190701	20191031	-	-	-
341	-	-	20161101	20171031	-	-	-
342	-	-	20171101	20180831	-	-	-
343	-	-	20180901	20190630	-	-	-
344	-	-	20190701	20191031	-	-	-
345	-	-	20161101	20171031	-	-	-
346	-	-	20171101	201810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347	-	-	20161101	20171031	-	-	-
348	-	-	20171101	20180831	-	-	-
349	-	-	20180901	20190630	-	-	-
350	-	-	20190701	20191031	-	-	-
351	-	-	20161101	20171031	-	-	-
352	-	-	20171101	20180831	-	-	-
353	-	-	20180901	20190630	-	-	-
354	-	-	20190701	20191031	-	-	-
355	-	-	20161101	20171031	-	-	-
356	-	-	20171101	20180831	-	-	-
357	-	-	20180901	20190630	-	-	-
358	-	-	20190701	20191031	-	-	-
359	-	-	20161101	20171031	-	-	-
360	-	-	20160901	20170430	-	-	-
361	-	-	20170501	20180228	-	-	-
362	-	-	20180301	20181231	-	-	-
363	-	-	20190101	20191231	-	-	-
364	-	-	20161023	20171022	-	-	-
365	-	-	20161011	20171010	-	-	-
366	-	-	20171011	20181010	-	-	-
367	-	-	20171001	201809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368	-	-	20161001	20170930	-	-	-
369	-	-	20161117	20180516	-	-	-
370	-	-	20161101	20170831	-	-	-
371	-	-	20170901	20180630	-	-	-
372	-	-	20180701	20190430	-	-	-
373	-	-	20161226	20171225	-	-	-
374	-	-	20161016	20171015	-	-	-
375	-	-	20171016	20181015	-	-	-
376	-	-	20161201	20171130	-	-	-
377	-	-	20171201	20181130	-	-	-
378	-	-	20181201	20191130	-	-	-
379	-	-	20161118	20171117	-	-	-
380	-	-	20161130	20171031	-	-	-
381	-	-	20161130	20171031	-	-	-
382	-	-	20170101	20171231	-	-	-
383	-	-	20180101	20181231	-	-	-
384	-	-	20190101	20191231	-	-	-
385	-	-	20161101	20171031	-	-	-
386	-	-	20170101	20170430	-	-	-
387	-	-	20170101	20171231	-	-	-
388	-	-	20180101	20181231	-	-	-
389	-	-	20190101	201905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390	-	-	20170101	20171231	-	-	-
391	-	-	20170301	20180228	-	-	-
392	-	-	20180301	20190228	-	-	-
393	-	-	20190301	20200229	-	-	-
394	-	-	20170315	20171214	-	-	-
395	-	-	20170201	20171130	-	-	-
396	-	-	20170101	20171231	-	-	-
397	-	-	20170220	20170627	-	-	-
398	-	-	20170628	20180331	-	-	-
399	-	-	20180401	20190131	-	-	-
400	-	-	20190201	20200131	-	-	-
401	-	-	20170331	20171231	-	-	-
402	-	-	20180101	20181231	-	-	-
403	-	-	20190101	20191231	-	-	-
404	-	-	20170320	20171231	-	-	-
405	-	-	20180101	20181231	-	-	-
406	-	-	20190101	20191231	-	-	-
407	-	-	20170101	20171031	-	-	-
408	-	-	20180101	20181031	-	-	-
409	-	-	20170301	20180228	-	-	-
410	-	-	20180301	20190228	-	-	-
411	-	-	20190301	20200229	-	-	-
412	-	-	20170101	20171231	-	-	-
413	-	-	20180101	20181231	-	-	-
414	-	-	20190101	20191231	-	-	-
415	-	-	20170301	20180228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416	-	-	20180301	20190228	-	-	-
417	-	-	20190301	20200229	-	-	-
418	-	-	20170301	20180228	-	-	-
419	-	-	20180301	20190228	-	-	-
420	-	-	20190301	20200229	-	-	-
421	-	-	20170301	20180228	-	-	-
422	-	-	20180301	20190228	-	-	-
423	-	-	20170301	20180228	-	-	-
424	-	-	20180301	20190228	-	-	-
425	-	-	20190301	20200229	-	-	-
426	-	-	20170301	20180228	-	-	-
427	-	-	20180301	20190228	-	-	-
428	-	-	20190301	20200229	-	-	-
429	-	-	20170301	20180228	-	-	-
430	-	-	20180301	20190228	-	-	-
431	-	-	20170301	20180228	-	-	-
432	-	-	20180301	20190228	-	-	-
433	-	-	20190301	20200229	-	-	-
434	-	-	20170301	20180228	-	-	-
435	-	-	20180301	20190228	-	-	-
436	-	-	201903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437	-	-	20170301	20180228	-	-	-
438	-	-	20180301	20190228	-	-	-
439	-	-	20190301	20200229	-	-	-
440	-	-	20180301	20190228	-	-	-
441	-	-	20190301	20200229	-	-	-
442	-	-	20170301	20180228	-	-	-
443	-	-	20180301	20190228	-	-	-
444	-	-	20170301	20180228	-	-	-
445	-	-	20180301	20190228	-	-	-
446	-	-	20170301	20180228	-	-	-
447	-	-	20180301	20190228	-	-	-
448	-	-	20190301	20200229	-	-	-
449	-	-	20170301	20180228	-	-	-
450	-	-	20180301	20190228	-	-	-
451	-	-	20190301	20200229	-	-	-
452	-	-	20170301	20180228	-	-	-
453	-	-	20180301	20190228	-	-	-
454	-	-	20190301	20200229	-	-	-
455	-	-	20170401	20171231	-	-	-
456	-	-	20180101	20181231	-	-	-
457	-	-	20170301	20171231	-	-	-
458	-	-	20180205	2018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459	-	-	20190101	20191231	-	-	-
460	-	-	20170401	20171231	-	-	-
461	-	-	20170401	20171031	-	-	-
462	-	-	20170401	20171031	-	-	-
463	-	-	20170401	20171231	-	-	-
464	-	-	20180101	20181231	-	-	-
465	-	-	20170414	20170529	-	-	-
466	-	-	20170530	20180228	-	-	-
467	-	-	20180301	20181231	-	-	-
468	-	-	20190101	20191231	-	-	-
469	-	-	20200101	20200529	-	-	-
470	-	-	20170410	20171231	-	-	-
471	-	-	20180101	20181231	-	-	-
472	-	-	20190101	20191231	-	-	-
473	-	-	20170301	20171231	-	-	-
474	-	-	20180101	20181231	-	-	-
475	-	-	20170401	20171231	-	-	-
476	-	-	20170410	20171231	-	-	-
477	-	-	20180110	20181231	-	-	-
478	-	-	20190101	20191231	-	-	-
479	-	-	20170401	20171031	-	-	-
480	-	-	20170401	20171231	-	-	-
481	-	-	20180101	20181231	-	-	-
482	-	-	20190101	2019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483	-	-	20170301	20171031	-	-	-
484	-	-	20170301	20171231	-	-	-
485	-	-	20170425	20171231	-	-	-
486	-	-	20180101	20181231	-	-	-
487	-	-	20190101	20191231	-	-	-
488	-	-	20200101	20200331	-	-	-
489	-	-	20170501	20180430	-	-	-
490	-	-	20180501	20190430	-	-	-
491	-	-	20170501	20180430	-	-	-
492	-	-	20180501	20190430	-	-	-
493	-	-	20170501	20180430	-	-	-
494	-	-	20180501	20190430	-	-	-
495	-	-	20170515	20171214	-	-	-
496	-	-	20170401	20171231	-	-	-
497	-	-	20180101	20181231	-	-	-
498	-	-	20190101	20191231	-	-	-
499	-	-	20170501	20180430	-	-	-
500	-	-	20180501	20190430	-	-	-
501	-	-	20170501	20180430	-	-	-
502	-	-	20170501	20180430	-	-	-
503	-	-	20180501	20190430	-	-	-
504	-	-	20190501	20200430	-	-	-
505	-	-	20170501	20180430	-	-	-
506	-	-	20170101	20171231	-	-	-
507	-	-	20170501	20171231	-	-	-
508	-	-	20170501	201801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509	-	-	20170501	20180131	-	-	-
510	-	-	20170501	20180331	-	-	-
511	-	-	20180401	20190228	-	-	-
512	-	-	20190301	20191231	-	-	-
513	-	-	20170501	20171231	-	-	-
514	-	-	20180101	20181231	-	-	-
515	-	-	20190101	20191231	-	-	-
516	-	-	20200101	20200430	-	-	-
517	-	-	20170515	20180214	-	-	-
518	-	-	20170515	20171114	-	-	-
519	-	-	20170515	20180214	-	-	-
520	-	-	20170515	20180214	-	-	-
521	-	-	20170515	20180214	-	-	-
522	-	-	20170515	20180214	-	-	-
523	-	-	20170515	20180214	-	-	-
524	-	-	20170515	20180214	-	-	-
525	-	-	20170515	20180214	-	-	-
526	-	-	20170515	20180214	-	-	-
527	-	-	20170515	20180214	-	-	-
528	-	-	20170515	20180214	-	-	-
529	-	-	20170501	20180430	-	-	-
530	-	-	20180501	20190430	-	-	-
531	-	-	20190501	20200131	-	-	-
532	-	-	20170401	20171231	-	-	-
533	-	-	20170501	2017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534	-	-	20180101	20181231	-	-	-
535	-	-	20190101	20191231	-	-	-
536	-	-	20170601	20171130	-	-	-
537	-	-	20170401	20171231	-	-	-
538	-	-	20180101	20181231	-	-	-
539	-	-	20170601	20180228	-	-	-
540	-	-	20180301	20190228	-	-	-
541	-	-	20190301	20200229	-	-	-
542	-	-	20200301	20200531	-	-	-
543	-	-	20170601	20180228	-	-	-
544	-	-	20180301	20190228	-	-	-
545	-	-	20190301	20200229	-	-	-
546	-	-	20200301	20200531	-	-	-
547	-	-	20170601	20180228	-	-	-
548	-	-	20180301	20190228	-	-	-
549	-	-	20190301	20200229	-	-	-
550	-	-	20200301	20200531	-	-	-
551	-	-	20180301	20190228	-	-	-
552	-	-	20190301	20200229	-	-	-
553	-	-	20200301	202005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554	-	-	20170601	20180228	-	-	-
555	-	-	20180301	20190228	-	-	-
556	-	-	20190301	20200229	-	-	-
557	-	-	20170601	20180228	-	-	-
558	-	-	20180301	20190228	-	-	-
559	-	-	20190301	20190531	-	-	-
560	-	-	20170601	20180228	-	-	-
561	-	-	20180301	20190228	-	-	-
562	-	-	20190301	20200229	-	-	-
563	-	-	20200301	20200831	-	-	-
564	-	-	20170601	20180228	-	-	-
565	-	-	20180301	20190228	-	-	-
566	-	-	20190301	20200229	-	-	-
567	-	-	20170601	20180228	-	-	-
568	-	-	20180301	20190228	-	-	-
569	-	-	20190301	20200229	-	-	-
570	-	-	20200301	20200531	-	-	-
571	-	-	20170601	20180228	-	-	-
572	-	-	20180301	20190228	-	-	-
573	-	-	20190301	20200229	-	-	-
574	-	-	20200301	20200531	-	-	-
575	-	-	20170601	20180228	-	-	-
576	-	-	20180301	20190228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577	-	-	20190301	20200229	-	-	-
578	-	-	20200301	20200531	-	-	-
579	-	-	20170601	20180228	-	-	-
580	-	-	20180301	20190228	-	-	-
581	-	-	20190301	20200229	-	-	-
582	-	-	20200301	20200531	-	-	-
583	-	-	20170501	20180430	-	-	-
584	-	-	20170601	20180531	-	-	-
585	-	-	20170501	20180228	-	-	-
586	-	-	20180301	20190228	-	-	-
587	-	-	20190301	20200229	-	-	-
588	-	-	20170601	20180228	-	-	-
589	-	-	20180301	20190228	-	-	-
590	-	-	20190301	20200229	-	-	-
591	-	-	20170701	20180630	-	-	-
592	-	-	20180701	20190630	-	-	-
593	-	-	20170501	20180430	-	-	-
594	-	-	20180501	20190430	-	-	-
595	-	-	20170701	20180630	-	-	-
596	-	-	20170701	20180630	-	-	-
597	-	-	20170701	20180630	-	-	-
598	-	-	20170701	20180630	-	-	-
599	-	-	20180701	20181209	-	-	-
600	-	-	20170701	201806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601	-	-	20180701	20180831	-	-	-
602	-	-	20170610	20180228	-	-	-
603	-	-	20180301	20181231	-	-	-
604	-	-	20190101	20191231	-	-	-
605	-	-	20200101	20200531	-	-	-
606	-	-	20170601	20180228	-	-	-
607	-	-	20180301	20190228	-	-	-
608	-	-	20190301	20200229	-	-	-
609	-	-	20170601	20171130	-	-	-
610	-	-	20180515	20190514	-	-	-
611	-	-	20170601	20180531	-	-	-
612	-	-	20170601	20180531	-	-	-
613	-	-	20170601	20180531	-	-	-
614	-	-	20170601	20180531	-	-	-
615	-	-	20170601	20180531	-	-	-
616	-	-	20170601	20180831	-	-	-
617	-	-	20170601	20180531	-	-	-
618	-	-	20170601	20180531	-	-	-
619	-	-	20161101	20171031	-	-	-
620	-	-	20171101	20180831	-	-	-
621	-	-	20180901	20190630	-	-	-
622	-	-	20190701	201910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623	-	-	20170301	20180228	-	-	-
624	-	-	20180301	20190222	-	-	-
625	-	-	20170720	20180419	-	-	-
626	-	-	20170720	20180419	-	-	-
627	-	-	20170720	20180419	-	-	-
628	-	-	20170720	20180419	-	-	-
629	-	-	20170720	20180419	-	-	-
630	-	-	20170720	20180419	-	-	-
631	-	-	20170720	20180419	-	-	-
632	-	-	20170720	20180419	-	-	-
633	-	-	20170720	20180419	-	-	-
634	-	-	20170720	20180419	-	-	-
635	-	-	20170720	20180419	-	-	-
636	-	-	20170720	20180119	-	-	-
637	-	-	20170720	20180119	-	-	-
638	-	-	20170720	20180419	-	-	-
639	-	-	20170720	20180419	-	-	-
640	-	-	20170720	20180119	-	-	-
641	-	-	20170720	20180419	-	-	-
642	-	-	20170720	20180419	-	-	-
643	-	-	20170601	20180531	-	-	-
644	-	-	20180601	20190531	-	-	-
645	-	-	20170801	201804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646	-	-	20180501	20190228	-	-	-
647	-	-	20190301	20191231	-	-	-
648	-	-	20170630	20180329	-	-	-
649	-	-	20180330	20190129	-	-	-
650	-	-	20190130	20191231	-	-	-
651	-	-	20170801	20180516	-	-	-
652	-	-	20170901	20180831	-	-	-
653	-	-	20161101	20171031	-	-	-
654	-	-	20170610	20180228	-	-	-
655	-	-	20170601	20180228	-	-	-
656	-	-	20180301	20190228	-	-	-
657	-	-	20170901	20180831	-	-	-
658	-	-	20170901	20181130	-	-	-
659	-	-	20170901	20180831	-	-	-
660	-	-	20170901	20180831	-	-	-
661	-	-	20170901	20180831	-	-	-
662	-	-	20180401	20181231	-	-	-
663	-	-	20190101	20191231	-	-	-
664	-	-	20170701	20180331	-	-	-
665	-	-	20180401	20181231	-	-	-
666	-	-	20190101	20191231	-	-	-
667	-	-	20170901	20180831	-	-	-
668	-	-	20180901	201908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669	-	-	20190901	20200831	-	-	-
670	-	-	20170920	20180619	-	-	-
671	-	-	20170920	20180619	-	-	-
672	-	-	20170920	20180619	-	-	-
673	-	-	20170920	20180619	-	-	-
674	-	-	20170920	20180619	-	-	-
675	-	-	20170920	20180319	-	-	-
676	-	-	20170920	20180619	-	-	-
677	-	-	20170920	20180219	-	-	-
678	-	-	20170920	20180519	-	-	-
679	-	-	20170920	20180619	-	-	-
680	-	-	20170920	20180619	-	-	-
681	-	-	20170920	20180619	-	-	-
682	-	-	20170920	20180319	-	-	-
683	-	-	20170920	20180619	-	-	-
684	-	-	20170920	20180619	-	-	-
685	-	-	20170920	20180619	-	-	-
686	-	-	20170920	20180619	-	-	-
687	-	-	20170920	20180619	-	-	-
688	-	-	20170920	20180319	-	-	-
689	-	-	20171020	20180719	-	-	-
690	-	-	20171020	20180719	-	-	-
691	-	-	20171020	20180719	-	-	-
692	-	-	20171020	2018071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693	-	-	20171020	20180719	-	-	-
694	-	-	20171020	20180719	-	-	-
695	-	-	20171020	20180419	-	-	-
696	-	-	20171020	20180719	-	-	-
697	-	-	20171020	20180719	-	-	-
698	-	-	20171020	20180719	-	-	-
699	-	-	20171020	20180719	-	-	-
700	-	-	20171020	20180419	-	-	-
701	-	-	20171020	20180719	-	-	-
702	-	-	20171020	20180419	-	-	-
703	-	-	20171020	20180719	-	-	-
704	-	-	20171020	20180719	-	-	-
705	-	-	20170901	20180228	-	-	-
706	-	-	20180301	20190228	-	-	-
707	-	-	20190301	20200229	-	-	-
708	-	-	20170901	20180228	-	-	-
709	-	-	20180301	20190228	-	-	-
710	-	-	20190301	20190831	-	-	-
711	-	-	20170901	20180228	-	-	-
712	-	-	20180301	20190228	-	-	-
713	-	-	20190301	20200229	-	-	-
714	-	-	20200301	202008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715	-	-	20170901	20180228	-	-	-
716	-	-	20180301	20190228	-	-	-
717	-	-	20190301	20200229	-	-	-
718	-	-	20200301	20200831	-	-	-
719	-	-	20170901	20180228	-	-	-
720	-	-	20180301	20190228	-	-	-
721	-	-	20190301	20200229	-	-	-
722	-	-	20200301	20200831	-	-	-
723	-	-	20170901	20180228	-	-	-
724	-	-	20180301	20190228	-	-	-
725	-	-	20190301	20200229	-	-	-
726	-	-	20200301	20200831	-	-	-
727	-	-	20170901	20180228	-	-	-
728	-	-	20180301	20190228	-	-	-
729	-	-	20190301	20190831	-	-	-
730	-	-	20170920	20180531	-	-	-
731	-	-	20180601	20190331	-	-	-
732	-	-	20190401	20200131	-	-	-
733	-	-	20171001	20180930	-	-	-
734	-	-	20170915	20180614	-	-	-
735	-	-	20180615	20190414	-	-	-
736	-	-	20190415	20200214	-	-	-
737	-	-	20171019	20181018	-	-	-
738	-	-	20171101	20181031	-	-	-
739	-	-	20180401	20181231	-	-	-
740	-	-	20190101	20191231	-	-	-
741	-	-	20170701	20180331	-	-	-
742	-	-	20180401	2018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743	-	-	20190101	20191231	-	-	-
744	-	-	20171011	20171231	-	-	-
745	-	-	20171115	20181114	-	-	-
746	-	-	20171101	20181031	-	-	-
747	-	-	20171101	20180228	-	-	-
748	-	-	20180301	20190228	-	-	-
749	-	-	20190301	20200229	-	-	-
750	-	-	20171019	20180818	-	-	-
751	-	-	20180819	20190618	-	-	-
752	-	-	20190619	20200418	-	-	-
753	-	-	20171215	20180914	-	-	-
754	-	-	20171215	20180914	-	-	-
755	-	-	20171215	20180914	-	-	-
756	-	-	20171215	20180914	-	-	-
757	-	-	20171215	20180914	-	-	-
758	-	-	20171215	20180614	-	-	-
759	-	-	20171215	20180914	-	-	-
760	-	-	20171215	20180914	-	-	-
761	-	-	20171215	20180914	-	-	-
762	-	-	20171215	20180914	-	-	-
763	-	-	20171215	20180914	-	-	-
764	-	-	20171215	20180614	-	-	-
765	-	-	20171215	20180914	-	-	-
766	-	-	20171215	20180914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767	-	-	20171215	20180914	-	-	-
768	-	-	20171215	20180914	-	-	-
769	-	-	20171215	20180914	-	-	-
770	-	-	20171215	20180914	-	-	-
771	-	-	20171215	20181014	-	-	-
772	-	-	20171215	20180914	-	-	-
773	-	-	20171215	20180914	-	-	-
774	-	-	20171101	20181031	-	-	-
775	-	-	20171220	20181219	-	-	-
776	-	-	20171101	20181031	-	-	-
777	-	-	20181101	20191031	-	-	-
778	-	-	20171209	20181208	-	-	-
779	-	-	20171201	20181130	-	-	-
780	-	-	20171201	20181130	-	-	-
781	-	-	20171201	20180630	-	-	-
782	-	-	20180701	20190430	-	-	-
783	-	-	20190501	20200831	-	-	-
784	-	-	20171201	20180630	-	-	-
785	-	-	20180701	20190430	-	-	-
786	-	-	20190501	20200229	-	-	-
787	-	-	20171201	20180630	-	-	-
788	-	-	20180701	201904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789	-	-	20190501	20200229	-	-	-
790	-	-	20190101	20191130	-	-	-
791	-	-	20180101	20181231	-	-	-
792	-	-	20190101	20191231	-	-	-
793	-	-	20180101	20181231	-	-	-
794	-	-	20190101	20191231	-	-	-
795	-	-	20180101	20181231	-	-	-
796	-	-	20180101	20181231	-	-	-
797	-	-	20180101	20181231	-	-	-
798	-	-	20190101	20191231	-	-	-
799	-	-	20180101	20181231	-	-	-
800	-	-	20190101	20191231	-	-	-
801	-	-	20180301	20190228	-	-	-
802	-	-	20190301	20200229	-	-	-
803	-	-	20190301	20200229	-	-	-
804	-	-	20180301	20190228	-	-	-
805	-	-	20190301	20200229	-	-	-
806	-	-	20180301	20190228	-	-	-
807	-	-	20190301	20200229	-	-	-
808	-	-	20180301	20190228	-	-	-
809	-	-	20190301	20200229	-	-	-
810	-	-	20180301	20190228	-	-	-
811	-	-	20190301	20200229	-	-	-
812	-	-	20180201	201812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813	-	-	20190101	20191231	-	-	-
814	-	-	20190101	20191130	-	-	-
815	-	-	20170501	20180430	-	-	-
816	-	-	20180501	20190430	-	-	-
817	-	-	20180301	20190228	-	-	-
818	-	-	20190301	20200229	-	-	-
819	-	-	20180301	20190228	-	-	-
820	-	-	20180301	20190228	-	-	-
821	-	-	20190301	20200229	-	-	-
822	-	-	20180401	20181031	-	-	-
823	-	-	20180301	20190228	-	-	-
824	-	-	20190301	20200229	-	-	-
825	-	-	20170701	20180630	-	-	-
826	-	-	20180101	20181231	-	-	-
827	-	-	20190101	20191231	-	-	-
828	-	-	20180401	20181130	-	-	-
829	-	-	20180401	20181231	-	-	-
830	-	-	20180301	20181031	-	-	-
831	-	-	20181101	20191031	-	-	-
832	-	-	20180401	20181231	-	-	-
833	-	-	20190101	20191231	-	-	-
834	-	-	20180401	20181231	-	-	-
835	-	-	20190101	20191231	-	-	-
836	-	-	20180401	20181130	-	-	-
837	-	-	20180501	201904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838	-	-	20180501	20190430	-	-	-
839	-	-	20180501	20190430	-	-	-
840	-	-	20180501	20190430	-	-	-
841	-	-	20190501	20200430	-	-	-
842	-	-	20180401	20181031	-	-	-
843	-	-	20180401	20181031	-	-	-
844	-	-	20180401	20181031	-	-	-
845	-	-	20180401	20181031	-	-	-
846	-	-	20180401	20181031	-	-	-
847	-	-	20180601	20190228	-	-	-
848	-	-	20190301	20200229	-	-	-
849	-	-	20180601	20190228	-	-	-
850	-	-	20190301	20200229	-	-	-
851	-	-	20180601	20190228	-	-	-
852	-	-	20190301	20200229	-	-	-
853	-	-	20180601	20190228	-	-	-
854	-	-	201903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855	-	-	20180601	20190228	-	-	-
856	-	-	20190301	20200229	-	-	-
857	-	-	20180601	20190228	-	-	-
858	-	-	20190301	20200229	-	-	-
859	-	-	20180601	20190228	-	-	-
860	-	-	20190301	20200229	-	-	-
861	-	-	20180601	20190228	-	-	-
862	-	-	20190301	20200229	-	-	-
863	-	-	20200301	20200531	-	-	-
864	-	-	20180601	20190228	-	-	-
865	-	-	20190301	20200229	-	-	-
866	-	-	20180601	20190228	-	-	-
867	-	-	20190301	20200229	-	-	-
868	-	-	20180601	20190228	-	-	-
869	-	-	20190301	20200229	-	-	-
870	-	-	20180601	20190228	-	-	-
871	-	-	20190301	20200229	-	-	-
872	-	-	20180601	20190228	-	-	-
873	-	-	201903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874	-	-	20180601	20190228	-	-	-
875	-	-	20190501	20200430	-	-	-
876	-	-	20180601	20190228	-	-	-
877	-	-	20190301	20200229	-	-	-
878	-	-	20180601	20190228	-	-	-
879	-	-	20190301	20200229	-	-	-
880	-	-	20180601	20190228	-	-	-
881	-	-	20190301	20200229	-	-	-
882	-	-	20180601	20190228	-	-	-
883	-	-	20190301	20200229	-	-	-
884	-	-	20180601	20190531	-	-	-
885	-	-	20180601	20190228	-	-	-
886	-	-	20190301	20200229	-	-	-
887	-	-	20180601	20190228	-	-	-
888	-	-	20190301	20200229	-	-	-
889	-	-	20180601	20190228	-	-	-
890	-	-	20190301	20200229	-	-	-
891	-	-	20180612	20180915	-	-	-
892	-	-	20180701	20190630	-	-	-
893	-	-	20180701	20190630	-	-	-
894	-	-	20180701	20190630	-	-	-
895	-	-	20180701	20190630	-	-	-
896	-	-	20180430	201904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897	-	-	20180701	20190630	-	-	-
898	-	-	20190701	20200630	-	-	-
899	-	-	20180701	20190630	-	-	-
900	-	-	20180601	20181231	-	-	-
901	-	-	20190301	20191031	-	-	-
902	-	-	20180601	20190531	-	-	-
903	-	-	20180601	20181231	-	-	-
904	-	-	20190101	20191231	-	-	-
905	-	-	20180601	20190228	-	-	-
906	-	-	20190301	20191231	-	-	-
907	-	-	20180501	20180731	-	-	-
908	-	-	20180701	20190630	-	-	-
909	-	-	20190701	20200630	-	-	-
910	-	-	20180618	20190617	-	-	-
911	-	-	20171101	20181031	-	-	-
912	-	-	20180701	20190630	-	-	-
913	-	-	20190701	20200630	-	-	-
914	-	-	20180629	20181231	-	-	-
915	-	-	20190101	20191231	-	-	-
916	-	-	20180629	20181231	-	-	-
917	-	-	20190101	20191231	-	-	-
918	-	-	20180605	20190604	-	-	-
919	-	-	20180801	20190131	-	-	-
920	-	-	20190201	202001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921	-	-	20180718	20181231	-	-	-
922	-	-	20180718	20181231	-	-	-
923	-	-	20180801	20190430	-	-	-
924	-	-	20180801	20190430	-	-	-
925	-	-	20180801	20190430	-	-	-
926	-	-	20180801	20190531	-	-	-
927	-	-	20180801	20190430	-	-	-
928	-	-	20180801	20190531	-	-	-
929	-	-	20180801	20190430	-	-	-
930	-	-	20180801	20190430	-	-	-
931	-	-	20180801	20190430	-	-	-
932	-	-	20180801	20190331	-	-	-
933	-	-	20180801	20190430	-	-	-
934	-	-	20180801	20190430	-	-	-
935	-	-	20180601	20181231	-	-	-
936	-	-	20190101	20191231	-	-	-
937	-	-	20180801	20190531	-	-	-
938	-	-	20180801	20190430	-	-	-
939	-	-	20180801	20190228	-	-	-
940	-	-	20180801	20190131	-	-	-
941	-	-	20180801	20190430	-	-	-
942	-	-	20180801	20190430	-	-	-
943	-	-	20180801	20190430	-	-	-
944	-	-	20180801	20190430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945	-	-	20180801	20190430	-	-	-
946	-	-	20180801	20190430	-	-	-
947	-	-	20180801	20190430	-	-	-
948	-	-	20180801	20190430	-	-	-
949	-	-	20180801	20190531	-	-	-
950	-	-	20180801	20190430	-	-	-
951	-	-	20180801	20190430	-	-	-
952	-	-	20180801	20190430	-	-	-
953	-	-	20180801	20190228	-	-	-
954	-	-	20180629	20190628	-	-	-
955	-	-	20180806	20190331	-	-	-
956	-	-	20190401	20191231	-	-	-
957	-	-	20190801	20200731	-	-	-
958	-	-	20180901	20190831	-	-	-
959	-	-	20180301	20190228	-	-	-
960	-	-	20190301	20200229	-	-	-
961	-	-	20180101	20181231	-	-	-
962	-	-	20190101	20191231	-	-	-
963	-	-	20180901	20190831	-	-	-
964	-	-	20180901	20190831	-	-	-
965	-	-	20180820	20191130	-	-	-
966	-	-	20180901	201908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967	-	-	20180901	20190831	-	-	-
968	-	-	20180901	20190831	-	-	-
969	-	-	20180901	20190831	-	-	-
970	-	-	20180901	20190831	-	-	-
971	-	-	20180901	20190228	-	-	-
972	-	-	20190301	20200229	-	-	-
973	-	-	20180901	20190228	-	-	-
974	-	-	20190301	20200229	-	-	-
975	-	-	20180901	20190228	-	-	-
976	-	-	20190301	20200229	-	-	-
977	-	-	20180901	20190831	-	-	-
978	-	-	20181010	20191009	-	-	-
979	-	-	20181010	20200209	-	-	-
980	-	-	20181101	20190731	-	-	-
981	-	-	20181101	20190731	-	-	-
982	-	-	20181101	20190831	-	-	-
983	-	-	20181101	20190731	-	-	-
984	-	-	20181101	20190731	-	-	-
985	-	-	20181101	20190531	-	-	-
986	-	-	20181101	201907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987	-	-	20181101	20190831	-	-	-
988	-	-	20181101	20190731	-	-	-
989	-	-	20181101	20190731	-	-	-
990	-	-	20181101	20190531	-	-	-
991	-	-	20181101	20190531	-	-	-
992	-	-	20181101	20190731	-	-	-
993	-	-	20181101	20190731	-	-	-
994	-	-	20181101	20190731	-	-	-
995	-	-	20181101	20190831	-	-	-
996	-	-	20180901	20190831	-	-	-
997	-	-	20180901	20190831	-	-	-
998	-	-	20181101	20191031	-	-	-
999	-	-	20181101	20191031	-	-	-
1000	-	-	20181101	20191031	-	-	-
1001	-	-	20181101	20191031	-	-	-
1002	-	-	20190401	20191231	-	-	-
1003	-	-	20190301	20191231	-	-	-
1004	-	-	20181201	20191130	-	-	-
1005	-	-	20181201	20191130	-	-	-
1006	-	-	20190101	20191231	-	-	-
1007	-	-	201903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008	-	-	20190301	20200229	-	-	-
1009	-	-	20190301	20200229	-	-	-
1010	-	-	20190301	20200229	-	-	-
1011	-	-	20190301	20200229	-	-	-
1012	-	-	20190301	20200229	-	-	-
1013	-	-	20190301	20200229	-	-	-
1014	-	-	20190301	20200229	-	-	-
1015	-	-	20190301	20200229	-	-	-
1016	-	-	20190301	20200229	-	-	-
1017	-	-	20190301	20200229	-	-	-
1018	-	-	20190301	20200229	-	-	-
1019	-	-	20190301	20200229	-	-	-
1020	-	-	20190301	20200229	-	-	-
1021	-	-	20190301	20200229	-	-	-
1022	-	-	20190301	20200229	-	-	-
1023	-	-	20190301	20200229	-	-	-
1024	-	-	20190301	20191130	-	-	-
1025	-	-	20180601	20190531	-	-	-
1026	-	-	20190301	20191231	-	-	-
1027	-	-	20190401	202003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028	-	-	20190101	20191231	-	-	-
1029	-	-	20190101	20191231	-	-	-
1030	-	-	20190419	20191231	-	-	-
1031	-	-	20190401	20191231	-	-	-
1032	-	-	20190501	20191130	-	-	-
1033	-	-	20180901	20190831	-	-	-
1034	-	-	20190419	20191231	-	-	-
1035	-	-	20190419	20191231	-	-	-
1036	-	-	20190515	20191130	-	-	-
1037	-	-	20190501	20191130	-	-	-
1038	-	-	20190501	20200430	-	-	-
1039	-	-	20190501	20200430	-	-	-
1040	-	-	20190501	20200430	-	-	-
1041	-	-	20190401	20191031	-	-	-
1042	-	-	20190401	20191031	-	-	-
1043	-	-	20190401	20191031	-	-	-
1044	-	-	20190419	20191231	-	-	-
1045	-	-	20190501	20191130	-	-	-
1046	-	-	20190601	20200229	-	-	-
1047	-	-	20190601	20200229	-	-	-
1048	-	-	201906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049	-	-	20190601	20200229	-	-	-
1050	-	-	20190601	20200229	-	-	-
1051	-	-	20190601	20200229	-	-	-
1052	-	-	20190401	20191231	-	-	-
1053	-	-	20190524	20190823	-	-	-
1054	-	-	20190601	20200531	-	-	-
1055	-	-	20190601	20200531	-	-	-
1056	-	-	20190601	20200229	-	-	-
1057	-	-	20190601	20200229	-	-	-
1058	-	-	20190601	20200229	-	-	-
1059	-	-	20190601	20200229	-	-	-
1060	-	-	20190601	20200229	-	-	-
1061	-	-	20190601	20200229	-	-	-
1062	-	-	20190601	20200229	-	-	-
1063	-	-	20190601	20200229	-	-	-
1064	-	-	20190601	20200229	-	-	-
1065	-	-	20190601	20200229	-	-	-
1066	-	-	20190601	20200229	-	-	-
1067	-	-	20190601	20200229	-	-	-
1068	-	-	20190601	20200229	-	-	-
1069	-	-	20190601	20200229	-	-	-
1070	-	-	201906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071	-	-	20190601	20200229	-	-	-
1072	-	-	20190601	20200229	-	-	-
1073	-	-	20190601	20200229	-	-	-
1074	-	-	20190601	20200229	-	-	-
1075	-	-	20190601	20200229	-	-	-
1076	-	-	20190601	20200229	-	-	-
1077	-	-	20190601	20200229	-	-	-
1078	-	-	20190601	20200229	-	-	-
1079	-	-	20190601	20200229	-	-	-
1080	-	-	20190601	20200229	-	-	-
1081	-	-	20190601	20200229	-	-	-
1082	-	-	20190601	20200229	-	-	-
1083	-	-	20190601	20200229	-	-	-
1084	-	-	20190601	20200229	-	-	-
1085	-	-	20190624	20200323	-	-	-
1086	-	-	20190624	20200323	-	-	-
1087	-	-	20190624	20200323	-	-	-
1088	-	-	20190624	20200423	-	-	-
1089	-	-	20190624	20200323	-	-	-
1090	-	-	20190624	20200323	-	-	-
1091	-	-	20190624	20200323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092	-	-	20190624	20200323	-	-	-
1093	-	-	20190624	20200323	-	-	-
1094	-	-	20190701	20200630	-	-	-
1095	-	-	20190701	20200630	-	-	-
1096	-	-	20190624	20200323	-	-	-
1097	-	-	20190701	20200630	-	-	-
1098	-	-	20190601	20200229	-	-	-
1099	-	-	20190620	20200229	-	-	-
1100	-	-	20190501	20200229	-	-	-
1101	-	-	20190617	20200216	-	-	-
1102	-	-	20190620	20200229	-	-	-
1103	-	-	20190603	20200402	-	-	-
1104	-	-	20180901	20190831	-	-	-
1105	-	-	20190701	20191231	-	-	-
1106	-	-	20190701	20191231	-	-	-
1107	-	-	20190701	20191231	-	-	-
1108	-	-	20190701	20191231	-	-	-
1109	-	-	20190701	20200630	-	-	-
1110	-	-	20190701	20191231	-	-	-
1111	-	-	20190717	20191217	-	-	-
1112	-	-	20190701	20191231	-	-	-
1113	-	-	20190601	20200229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114	-	-	20190626	20200625	-	-	-
1115	-	-	20190901	20200229	-	-	-
1116	-	-	20190901	20200229	-	-	-
1117	-	-	20190901	20200229	-	-	-
1118	-	-	20190901	20200229	-	-	-
1119	-	-	20190901	20200831	-	-	-
1120	-	-	20190901	20200831	-	-	-
1121	-	-	20190901	20200831	-	-	-
1122	-	-	20190901	20200831	-	-	-
1123	-	-	20190901	20200229	-	-	-
1124	-	-	20190901	20200831	-	-	-
1125	-	-	20190901	20200831	-	-	-
1126	-	-	20190901	20200831	-	-	-
1127	-	-	20190901	20200229	-	-	-
1128	-	-	20190801	20200131	-	-	-
1129	-	-	20180701	20191231	-	-	-
1130	-	-	20190901	20200831	-	-	-
1131	-	-	20190901	20200831	-	-	-
1132	-	-	20190627	20200626	-	-	-
1133	-	-	20190901	20200831	-	-	-
1134	-	-	20190901	20200831	-	-	-
1135	-	-	20190901	20200831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136	-	-	20190901	20200831	-	-	-
1137	-	-	20190901	20200831	-	-	-
1138	-	-	20190901	20200831	-	-	-
1139	-	-	20190901	20200831	-	-	-
1140	-	-	20190901	20200831	-	-	-
1141	-	-	20190901	20191231	-	-	-
1142	-	-	20190901	20191231	-	-	-
1143	-	-	20190628	20200327	-	-	-
1144	-	-	20190901	20200831	-	-	-
1145	-	-	20190301	20200229	-	-	-
1146	-	-	20190301	20200229	-	-	-
1147	-	-	20200301	20200531	-	-	-
1148	-	-	20190301	20200229	-	-	-
1149	-	-	20200301	20200531	-	-	-
1150	-	-	20190901	20200531	-	-	-
1151	-	-	20191015	20200714	-	-	-
1152	-	-	20191015	20200714	-	-	-
1153	-	-	20190301	20200229	-	-	-
1154	-	-	20191015	20200714	-	-	-
1155	-	-	20191015	20200714	-	-	-
1156	-	-	20191015	20200714	-	-	-
1157	-	-	20191015	20200714	-	-	-
1158	-	-	20191015	20200714	-	-	-

연번	연구과제명	발주기관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1159	-	-	20191015	20200714	-	-	-
1160	-	-	20191010	20200331	-	-	-
1161	-	-	20191001	20200331	-	-	-
1162	-	-	20190927	20200229	-	-	-
1163	-	-	20190501	20200430	-	-	-
1164	-	-	20190728	20200727	-	-	-
1165	-	-	20190301	20200229	-	-	-
1166	-	-	20190501	20200430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p>교내연구 연구결과물 미제출</p> <p>○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자체연구비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연구실적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내공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국제과제의 경우 SCI급 학술지 게재 시 2년 이내에 제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미술 : 1년 이내 전문미술관에서 작품 발표 공연예술분야 : 1년 이내 전문 공연장에서 안무 등 프로그램 발표</p> <p>- 인천대학교 AO은 교내 연구과제인 '1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과 같이 위 AO 등 교원 39명은 2017. 1.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비 합계 674,709천원을 지급받고 연구과제 73건을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39명)</p> <p>○ 통보</p> <p>- 연구결과물 미제출 자로부터 연구결과물을 제출받거나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붙임】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

연 번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결과물 제출기한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	-	AO	○○	2016.5.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5.05.01	2016.04.30	15,000	2018.04.30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	2017.10.01	2018.04.30	10,000	2020.04.30	
				-	2016.05.16	2017.02.28	23,790	2019.02.28	
2	-	-	-	-	2017.05.01	2018.04.30	10,000	2019.08.31	퇴직
				-	2017.10.01	2018.04.30	10,000	2019.08.31	
				-	2018.05.01	2019.04.30	10,000	2019.08.31	
				-	2018.10.01	2019.04.30	10,000	2019.08.31	
				-	2019.05.01	2020.04.30	10,000	2019.08.31	
				-	2018.03.01	2019.02.28	30,000	2019.08.31	
				-	2019.03.01	2019.08.31	15,000	2019.08.31	
3	-	-	-	-	2016.05.01	2017.04.30	12,000	2019.04.30	
				-	2016.05.01	2017.04.30	8,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	2017.10.01	2018.04.30	10,000	2020.04.30	

연 번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결과물 제출기한	비고
					시작일	종료일			
4	-	-	-	-	2015.05.01	2016.04.30	10,000	2018.04.30	직위 해제
				-	2015.05.01	2016.04.30	10,000	2018.04.30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	2016.03.01	2017.02.28	30,000	2019.02.28	
5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20.04.30	
6	-	-	-	-	2017.05.01	2018.04.30	15,000	2020.04.30	
7	-	-	-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8	-	-	-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9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20.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10	-	-	-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	2017.10.01	2018.04.30	10,000	2020.04.30	
11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19.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12	-	-	-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13	-	-	-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14	-	-	-	-	2017.05.01	2018.04.30	8,000	2020.04.30	
15	-	-	-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16	-	-	-	-	2017.05.01	2018.04.30	6,500	2019.04.30	
17	-	-	-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18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19.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19	-	-	-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6.05.01	2017.04.30	8,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6,500	2019.04.30	

연 번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결과물 제출기한	비고
					시작일	종료일			
20	-	-	-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21	-	-	-	-	2015.03.02	2016.02.29	29,919	2018.03.01	
22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20.04.30	
23	-	-	-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24	-	-	-	-	2016.05.01	2017.04.30	10,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25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20.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26	-	-	-	-	2017.05.01	2018.04.30	8,000	2020.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27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19.04.30	미제출 퇴직자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28	-	-	-	-	2017.05.01	2018.04.30	15,000	2020.04.30	
				-	2017.10.01	2018.04.30	10,000	2020.04.30	
29	-	-	-	-	2016.05.01	2017.04.30	8,000	2019.04.30	
30	-	-	-	-	2018.05.01	2019.04.30	7,000	2020.04.30	
31	-	-	-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32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19.04.30	
				-	2018.05.01	2019.04.30	5,000	2020.04.30	
33	-	-	-	-	2017.10.01	2018.04.30	7,000	2020.04.30	

연 번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결과물 제출기한	비고
					시작일	종료일			
34	-	-	-	-	2016.05.01	2017.04.30	5,000	2019.04.30	
				-	2017.05.01	2018.04.30	5,000	2020.04.30	
35	-	-	-	-	2017.05.01	2018.04.30	5,000	2019.04.30	
36	-	-	-	-	2017.05.01	2018.04.30	6,500	2020.04.30	
37	-	-	-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38	-	-	-	-	2017.05.01	2018.04.30	10,000	2020.04.30	
39	-	-	-	-	2017.05.01	2018.04.30	6,500	2019.04.30	
				-	2018.05.01	2019.04.30	6,500	2020.04.30	
총 39명, 73건, 합계 674,709,000원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p>● 직원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p> <p>○ 「인천대학교 ●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의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여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1]에 따르면 제1호는 총장, 이사장, 제2호 가목에는 이사, 부총장, 각 부속기관장 등, 제2호 나목에는 교수, 부교수, 2급이상 직원, 제3호에는 조교수, 3급 이하 직원 및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p> <p>※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체재비(원)</th> </tr> <tr> <th>일비</th> <th>숙박비</th> <th>식비</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50,000</td> <td>실비</td> <td>50,000</td> </tr> <tr> <td>제2호</td> <td>40,000</td> <td>실비(100,000)</td> <td>30,000</td> </tr> <tr> <td>제3호</td> <td>30,000 (공용차량이용시 15,000)</td> <td>제주특별자치도(80,000) 특별시 및 광역시(60,000) 그 외 지역(50,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p>※ 숙박비는 상한액의 80% 정액 지급 가능</p> <p>- 인천대학교 AK은 「인천대학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에 해당됨에도, ‘2020년도 국비 관련 설명’을 목적으로 관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제2호를 적용하여 일비 5,000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붙임】 “AK 출장여비 과다수령 현황”과 같이 위 AK는 ‘● 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여비규정 제2호를 적용하여 2019. 3.부터 2020. 8.까지 총 47회, 합계 477,00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p> <p>※ 2020. 9. 21. 477,000원 반납</p>	구분	체재비(원)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100,000)	30,000	제3호	30,000 (공용차량이용시 15,000)	제주특별자치도(80,000) 특별시 및 광역시(60,000) 그 외 지역(50,000)	30,000	○ 주의(1명)
구분	체재비(원)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100,000)	30,000																		
제3호	30,000 (공용차량이용시 15,000)	제주특별자치도(80,000) 특별시 및 광역시(60,000) 그 외 지역(50,000)	30,000																		

【붙임】

AK 출장여비 과다수령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 장				실제 지급액		정상 지급액 (3호 적용)		과다 지급액	비고
	일자	건명	출장지	관내/ 관외	일비	숙박비	일비	숙박비		
1	'19.3.22 (1일)	2020년도 국비 관련 설명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	-	-	-	관외	80,000	0	60,000	0	20,000	
3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5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6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7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8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9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0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1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2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13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4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5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16	-	-	-	관외	40,000	0	30,000	0	10,000	
17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8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19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0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1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2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3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4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5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연번	출 장				실제 지급액		정상 지급액 (3호 적용)		과다 지급액	비고
	일자	건명	출장지	관내/ 관외	일비	숙박비	일비	숙박비		
26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7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8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29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0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1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2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3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4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5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6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7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38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39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40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1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2	-	-	-	관외	40,000	80,000	30,000	48,000	42,000	공용차량 이용
43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4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5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6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47	-	-	-	관외	20,000	0	15,000	0	5,000	공용차량 이용
과다 지급액 총 47건, 합계 477,000원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5	<p>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절차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 및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 외로 임용하고자 할 때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은 AP(채용기간* : 2017. 11. ~ 2019. 8. 31.)를 ‘외부연구과제 유치’를 목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음</p> <p>* 재임용(1년)기간 포함</p>	○주의(2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6	<p>물품관리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분임물품출납원은 손(망)실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비품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하고, 물품관리원은 통보내용을 확인하여 물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유무와 변상 여부를 정하고 관계대장을 정리하며, 물품의 사용자는 그 물품의 행방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 중인 물품을 상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도,</p> <p>【물품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 ①</p> <p>- 인천대학교는 2020. 2. 26. 2019년도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면서 ●가 2014. 5. 27. 취득하여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비품보관장'(취득가액 398천원, 잔존가액 0천원)을 2020. 1.(추정)에 분실하였음에도 물품관리위원회에서 해당물품을 불용물품으로 확정하고 물품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없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종결하는 등</p> <p>【붙임1】 “2019년도 내구연한 미경과 물품 손(망)실 현황”과 같이 2019. 11.부터 2020. 1.까지 위 ● 등 총 3개 학부 및 부서가 손(망)실한 '비품보관장' 등 학교 물품 총 9점(취득가액 합계 7,141천원, 잔존가액 합계 1,702천원)을 잔존가치가 없거나 변상조치 후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물품 사용주체인 ● 등 총 3개 학과 및 부서에 대해 별도의 조치없이 물품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물조사 결과를 종결한 사실이 있으며,</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기관주의</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주의(3명)</p> <p>○ 통보</p> <p>- 분실된 디지털 캠코더 등 10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물품 손(망)실 미보고에 관한 사항】 ----- ②</p> <p>- 인천대학교 ●는 1999. 7. 26. 취득한 '디지털캠코더' (취득가액 3,080천원, 잔존가액 0원)를 2019년도 재물조사 이후 2020. 3.(추정)에 분실하였음에도 물품관리원에게 물품 손(망)실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붙임2】 “2019년 재물조사 이후 물품 손(망)실 현황”과 같이 위 ● 등 총 3개 학과 및 부서는 디지털캠코더 및 노트북 등 물품 총 11점(취득가액 합계 16,100천원, 잔존가액 합계 0원)을 2019년도 재물조사 이후 미상일에 손(망)실 했음에도 물품관리원에게 물품 손(망)실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1】

2019년도 내구연한 미경과 물품 손(망)실 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잔존가액	관리부서	손(망)실 추정월	자산 번호	회계	불용사유
1	비품 보관장	-	2014.05.27	397,980	0	●	2020.01. (추정)	2014070 208	법인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변상 불필요
2	패들(노)	-	2015.12.16	755,000	113,250	-	2020.01. (추정)	2016020 882	법인	개인 맞춤으로 제작 구매하여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한 소모성 물품으로 해당선수들이 졸업 후 해제 되었으므로 변상 불필요
3	패들(노)	-	2015.12.16	755,000	113,250	-	2020.01. (추정)	2016020 883	법인	
4	패들(노)	-	2015.12.16	755,000	113,250	-	2020.01. (추정)	2016020 884	법인	
5	패들(노)	-	2015.12.16	755,000	113,250	-	2020.01. (추정)	2016020 885	법인	
6	전기설비 브래킷	-	2016.09.23	361,000	108,300	-	2019.11. (추정)	2016100 334	법인	
7	전기설비 브래킷	-	2016.09.23	361,000	108,300	-	2019.11. (추정)	2016100 337	법인	(물품 등재대상에서 제외)
8	전기설비 브래킷	-	2016.09.23	361,000	108,300	-	2019.11. (추정)	2016100 340	법인	
9	공기권총	-	2016.12.05	2,640,000	924,000	-	2020.01. (추정)	2016125 002	법인	공문발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납했으므로 변상 불필요
합 계				7,140,980	1,701,900	-	-	-	-	-

【붙임2】

2019년도 재물조사 이후 물품 손(망)실 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잔존 가액	관리부서	관련 직원	손(망)실 추정월	자산 번호	회계
1	디지털 캠코더	-	1999.07.26	3,080,000	0	●	-	2020.03. (추정)	19990711 04	법인
2	디지털 카메라	-	2009.01.16	624,000	0	-	-	2020.04. (추정)	20090110 73	법인
3	디지털 카메라	-	2009.01.16	624,000	0	-	-	2020.04. (추정)	20090110 74	법인
4	디지털 카메라	-	2009.01.16	624,000	0	-	-	2020.04. (추정)	20090110 75	법인
5	디지털 카메라	-	2009.01.16	624,000	0	-	-	2020.04. (추정)	20090110 76	법인
6	디지털 카메라	-	2009.01.16	624,000	0	-	-	2020.04. (추정)	20090110 77	법인
7	노트북 컴퓨터	-	2010.01.06	2,150,000	0	-	-	2020.03. (추정)	20100110 11	법인
8	노트북 컴퓨터	-	2010.01.06	2,150,000	0	-	-	2020.03. (추정)	20100110 12	법인
9	노트북 컴퓨터	-	2010.01.06	2,150,000	0	-	-	2020.03. (추정)	20100110 13	법인
10	노트북 컴퓨터	-	2010.01.06	2,150,000	0	-	-	2020.03. (추정)	20100110 14	법인
11	노트북 컴퓨터	-	2010.11.30	1,300,000	0	-	-	2020.03. (추정)	20101117 89	법인
합계			-	16,100,000	0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7	<p>공간사용료 미납 등</p> <p>○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총장은 사용주체*에게 기준면적을 배정하고,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구조상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총장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용주체에게 초과면적(m²)당 기준단가를 곱한 공간사용료를 부과하되, 한시적 국책·시책사업 용도로 배정된 공간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동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공간사용료는 1년 단위로 적용하고, 초과공간사용자가 “공간사용료 납부확약서”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사용주체 :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p> <p>** 관리주체 : 총장의 위임을 받아 사용주체별 사용면적, 배정면적, 공간사용료의 산출 및 부과관리와 대여 및 환수 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부서</p> <p>- 인천대학교 AQ는 2020. 3. 1.부터 2021. 2. 29.까지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총 공간면적 240.34m² 중 164.81m²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2020. 3. 1.부터 2020. 5. 31.까지** 초과 사용한 공간사용료 2,472천원을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대학에서 AQ에게 제공되는 기준면적 : 75.53m²</p> <p>** '20.6.1.부터 교육부지정 대학중점연구소(국책사업연구소)로 지정</p>	<p>○ 경고(1명)</p> <p>○ 시정(회수)</p> <p>- 미납한 초과공간사용료 2,472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초과공간사용료 면제여부와 관련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또한, 인천대학교가 여러차례 공간사용료 납부를 요청* 했음에도 위 AQ는 2020. 6. 1.부터 초과 사용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국책사업연구소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주체의 검토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과-2029(2020.5.19.) 및 납부요청 메일('20.6.4./'20.6.22./ '20.9.16.) 등</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8	<p>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사용료 미납</p> <p>○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기기원은 기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자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 AR은 2020. 2. 10. 공동기기원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열전개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취득가액 505,000천원) 및 “고분해능 X선 회절장치”(취득가액 472,000천원)를 실험실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과된 장비사용료 141,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0. 9. 18. 감사 종료일이 되어서야 납부하는 등 【붙임】 “공동기기원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사용료 미납 현황”과 같이 2020. 2. 10.부터 2020. 4. 2.까지 공동기기원에 설치된 위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열전개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및 “고분해능 X선 회절장치” 총 2대의 고가 실험실습기자재를 실험실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과된 총 6.5시간 장비사용료 합계 233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0. 9. 18. 감사 종료일이 되어서야 납부한 사실이 있음</p>	○주의(1명)

【붙임】

공동기기원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사용료 미납 현황

(단위 : 천원)

소속	직급	이름	미납액	사용내역				
				장비명	장비 취득가액	모델명	사용시간	최종사용 일자
-	-	AR	142	SEM	505,000	TALOS_F200x	2시간	2020-02-10
				XRD	472,000	Rigaku SmartLab	2시간	
-	-	-	41	XRD	472,000	Rigaku SmartLab	1.5시간	2020-03-23
-	-	-	50	SEM	505,000	TALOS_F200x	1시간	2020-04-02
합계			233	-	-	-	6.5시간	-

※ 상세명칭 : (SEM) 열전개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XRD) 고분해능X선 회절장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9	<p>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 분할 수의계약 체결</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67조에 의해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공사</p> <p>**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p> <p>- 인천대학교 ▷▷는 2017. 12. 13. “ㄱㄱ 공사”를 계약 요청하면서 ▽▽ 이전계획에 따라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에 속하는 “ㄱㄱ 공사”와 분할하여 수의로 공사계약 요청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 분할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같이 2017. 12.부터 2019. 8.까지 예산상 단일공사에 해당하는 위 “ㄱㄱ 공사”와 “ㄱㄱ 공사” 등 시설공사 총 4건(계약금액 합계 66,660천원)을 2건의 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총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로 공사계약 요청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 경고(8명)

【붙임】

일반경쟁입찰 대상공사 분할 수의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 요청 금액	계약일 (계약요청일)	계약 금액	계약 업체	예산 구분	계약 방법	계약 담당자 (과장)	계약요청 담당자 (과장)
1	그즈 공사	-	15,900	2017-12-14 (2017-12-13)	15,600	-	교비	수의	-	-
	그츠 공사	-	21,868	2017-12-14 (2017-12-13)	21,000	-	교비	수의	-	-
2	-	-	16,324	2019-08-13 (2019-08-12)	15,000	-	국고	수의	-	-
	-	-	15,862	2019-08-16 (2019-08-14)	15,060	-	국고	수의	-	-
합 계 (공사 4건)			69,954	-	66,660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0	<p>전문공사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p> <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 4. 24. “ㄱ공사(예정가격 21,230천원)”를 계약하면서 전문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와 계약금액 20,900천원에 수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같이 2017. 4.부터 2019. 5.까지 위 “ㄱ공사” 등 총 7건(계약금액 합계 130,100천원)을 전문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 등 총 7개 업체와 수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9명)</p> <p>○ 주의(9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고발</p>

【붙임】

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금액 (추정가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회사	요구되는 건설업면허	계약 담당자 (과장)	계약요청 담당자 (과장)
1	기타 공사	20,900 (21,230)	2017-04-24	2017-04-26	2017-05-01	◁▷	금속구조물, 장호공사업 등	-	-
2	-	15,500 (15,840)	2017-08-11	2017-08-16	2017-09-04	-	기계(설비) 공사업	-	-
3	-	21,000 (21,593)	2017-08-25	2017-08-28	2017-09-06	-	실내건축 공사업 등	-	-
4	-	20,800 (21,945)	2018-01-04	2018-01-15	2018-02-09	-	기계(설비) 공사업	-	-
5	-	18,800 (19,844)	2018-02-22	2018-02-23	2018-02-28	-	실내건축 공사업 등	-	-
6	-	17,200 (18,106)	2018-05-10	2018-05-15	2018-05-28	-	시설물 유지관리업	-	-
7	-	15,900 (16,401)	2019-05-28	2019-05-28	2019-06-04	-	실내건축 공사업 등	-	-
합 계		130,100	-	-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1	<p>법정보험료 등 법정경비 미정산</p> <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 4. 11. ◇◇와 계약(계약금액 28,041천원, 공사기간 '17.4.14.~'17.6.2.)한 “ΓΤ 공사”를 2017. 6. 2. 준공하면서 법정경비 국민건강보험료 84천원, 국민연금보험료 122천원 등 합계 206천원을 정산하여 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1】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등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7. 6.부터 2020. 3. 까지 위 “ΓΤ 공사” 등 총 7건(계약금액 합계 917,872</p>	<p>○ 경고(8명)</p> <p>○ 주의(4명)</p> <p>○ 시정(회수)</p> <p>- 정산(감액)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5,935천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634천원을 시공업체(총7곳)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고발</p> <p>○ 통보(국세청)</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천원)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경비 합계 5,935천원을 정산하여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p> <p>- 나아가, 2017. 7. 17. ♣♣과 계약(계약금액 62,218천원, 공사기간 '17.7.19.~'17.8.16.)한 “그공 공사”를 2017. 8. 16.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5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붙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7. 8.부터 2018. 4.까지 위 “그공 공사” 등 총 3건(계약금액 합계 184,941천원)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634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등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구분	산업안전 관리비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보험료	건설 기계 보증	미정산액 (환수액*)	공사업체	담당자 (검사자)
1	기트 공사 (17.04.14.~17.06.02)	28,041	준공시 인정금액		84	122			206	◇◇	-
			감사 인정금액		0	0					
			미정산금액		84	122					
2	-	482,898	준공시 인정금액		511	724	37		1,272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511	724	37				
3	-	93,437	준공시 인정금액		594	870	39		1,503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594	870	39				
4	-	76,099	준공시 인정금액	178	254	372	17	80	901	-	-
			감사 인정금액	0	0	0	0	0			
			미정산금액	178	254	372	17	80			
5	-	61,271	준공시 인정금액	961					961	-	-
			감사 인정금액	0							
			미정산금액	961							
6	-	94,580	준공시 인정금액		252	351	21		624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252	351	21				
7	-	81,546	준공시 인정금액	468					468	-	-
			감사 인정금액	0							
			미정산금액	468							
합계 (공사 7건)			준공시 인정금액	1,607	1,695	2,439	114	80	5,935	업체 6곳	-
			감사 인정금액	0	0	0	0				
			미정산금액	1,607	1,695	2,439	114	80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붙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정산금액 (환수액)*	공사업체	담당자
1	그교 공사 (17.07.19.~17.08.16.)	62,218	준공시 인정금액	965	965	순수	-
			감사 인정금액	0 <small>(허위세금계산서)</small>			
			미정산금액	965			
2	-	93,437	준공시 인정금액	2,222	2,222	-	-
			감사 인정금액	0 <small>(허위세금계산서)</small>			
			미정산금액	2,222			
3	-	29,286	준공시 인정금액	447	447	-	-
			감사 인정금액	0 <small>(허위세금계산서)</small>			
			미정산금액	447			
합 계		184,941	준공시 인정금액	3,634	3,634	업체 3곳	-
			감사 인정금액	0			
			미정산금액	3,634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2	<p>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p> <p>○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나 그 밖의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전부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인천대학교는 2017. 12. 18. ☞☞와 계약한 “기공 공사” (계약금액 93,437천원, 공사기간 '17.12.26.~'18.5.8.)를 2018. 5. 8. 준공하면서 22mm 강제전선관 16m 및 28mm 강제전선관 99m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2.부터 2018. 11.까지 위 “기공 공사” 등 공사 총 5건(총 계약금액 763,133천원)을 준공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정 총 9건(합계 약 1,203천원)의 미시공 건에 대하여 정산(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2명)</p> <p>○ 주의(2명)</p> <p>○ 시정(회수)</p> <p>- 미정산된 공사비 합계 1,203천원을 시공업체(5곳)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공종 구분	시공 내역				조치 계획	담당자 (검사자)
	공사기간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역	금액*		
기하 공사	'17.12.18.	93,437	윙윙	<전기> 냉난방 설비공사	강제전선관 (노출) (22mm, 16m)	강제전선관 (노출) (22mm, 0m)	미정산	239	회수	-
	'17.12.26. ~ '18.05.08.				강제전선관 (노출) (28mm, 99m)	강제전선관 (노출) (28mm, 0m)	미정산			
-	'17.12.20.	489,070	-	<기계> 옥외배관 공사	라인마크 (39개소)	라인마크 (30개소)	미정산	225	회수	-
	'17.12.26. ~ '18.04.30.			<기계> 위생기구 설치공사	부동수전 (2SET)	부동수전 (1SET)	미정산			
				<기계> 옥외가스 배관공사	라인마크 (60개소)	라인마크 (48개소)	미정산			
-	'17.12.20.	16,609	-	<기계> 냉난방 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96m)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83m)	미정산	83	회수	-
	'18.02.18. ~ '18.05.10.									
-	'18.02.23.	152,617	-	<전기> 전력간선 설비공사	파이프행거 (42C, 54C, 70C, 104C, 130개소)	파이프행거 (42C, 54C, 70C, 104C, 77개소)	미정산	327	회수	-
				<전기> 전등설비 공사	파이프행거 (16C, 295개소)	파이프행거 (16C, 150개소)	미정산			
	'18.02.23. ~ '18.04.03.			<전기> 동력설비 공사	케이블 트레이 (10m)	케이블트레이 (5m)	미정산			
					파이프행거 (36C, 42C, 54C, 43개소)	파이프행거 (36C, 42C, 54C, 27개소)	미정산			
-	'18.11.02.	11,400	-	<전기> 전력간선 공사	폐기물처리 (1식)	폐기물처리 (0식)	미정산	329	회수	-
	'18.11.02. ~ '18.11.09.						미정산			
합계 (공사 5건)	-	763,133	-	(공정 9건)	-	-	-	1,203	-	-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